

통협 94-10-39

# 동·서독교류협력 관계 법규자료집

1994

통일원



- 통일원에서는 지난 92년 부터 분단국의 교류협력 관련법규를 조사하여 『중·국·대만간 교류 관계자료집』을 발간·배포한 바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이러한 분단국 선례연구라는 차원에서 동·서독간 교류협력관계 법규를 분야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그 동안 동·서독간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동·서독간 협정은 많이 소개되었으나, 이를 위한 서독 정부의 국내법적 조치들은 알려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본 자료집에서는 대동독 교류에 관한 서독정부의 국내법규 자료를 중심으로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 자료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불충분한 기본자료와 번역·편집상의 오류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을 오류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통일원 교류협력국



# 목 차

## 제 1 편 인적교류 분야

1. 통행사증 협정.....	9
가. 1963년 통행사증 협정(1963.12.17) .....	9
나. 1964년 통행사증 협정(1964. 9.24) .....	15
나. 1965년 통행사증 협정(1965.11.25) .....	24
라. 1966년 통행사증 협정(1966. 3. 7) .....	33
2.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 민간인 및 물자의 통행에 관한 동·서독 정부간의 협정, 부속문서 및 의정서 부록 (1971.12.17) .....	42
3. 여행 및 방문교류의 완화와 개선에 관한 동독 정부와 서베를린 당국간 협정(1971.12.20) .....	61
4. 동·서독간 통행에 관한 협정(1972. 5.26) .....	71
5. 동독 주민의 여행에 관한 규정(1972.10.17) .....	82
6. 서독 시민의 동독여행에 관한 규정(1972.10.17) .....	84
7. 지불수단의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 시행에 관한 규정 (1980.10. 9) .....	86
8. 절실한 가족문제로 인한 여행자 왕래에 관한 동독의 규정(1982. 2.15) .....	88
9. 베를린 시가전철에 관한 규정(1983.12.30) .....	91

10. 동독과 동베를린 여행시의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규정 (1985. 5. 6) .....	100
---	-----

## 제 2 편 경제교류 분야

1. 독일마르크사용지역과 독일발권은행의 독일마르크 사용 지역간의 통상에 관한 협정(베를린협정, 1951. 9.20) .....	105
2. 양독간 교역규정(1951. 7.18) .....	111
3. 양독간 교역을 위한 일반허가규정 .....	120
가. 일반허가규정 1호 (1968. 7.22) .....	120
나. 일반허가규정 2호 (1969. 1.21) .....	124
다. 일반허가규정 3호 (1969.12.19) .....	129
4.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	134
가.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I (1970.12.16) .....	134
나.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II (1970.12.16) .....	141
다.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III (1970.12.16) .....	146
라.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IV (1970.12.16) .....	152
마.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V (1970.12.16) .....	156
5.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에 관한 서독경제상 공고 (1970.12.23) .....	158
6. 양독간 교역에 대한 물품세 공고 .....	162
가. 물품세 감면청구에 관한 공고(1967. 9. 1) .....	162
나. 기업체에 대한 물품세 감면에 관한 공고(1968. 1. 8) ...	165

다. 소량반입시 물품세에 관한 공고(1968.10.26) .....	168
라. 삼각무역에 대한 물품세의 면세특례에 관한 공고 (1969. 7.31) .....	169
마. 양독교역상 위탁판매소 설치·운영에 관한 공고 (1969. 9.17) .....	170
7. 양독간 교역에 있어서의 장기거래보증 일반조건 (1969. 4. 2) .....	173
8. 양독간 교역에 있어서의 장기거래 보증에 관한 공지사항(1970.11.24) .....	184
9. 양독간 교역의 반출가격 심사에 관한 행정지침 공시사항(1970. 9.28) .....	198
10. 각지역 경계지 세관을 통해 분할발송하는 동독으로 부터의 반입 감독을 위한 회보(1972.12. 16) .....	203
11. 비상법적인 지불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신용한도 규정에 관한 동독과의 협정(1985. 7. 5) .....	206
12. 통과무역의 개선에 관한 협정(1985. 8.15) .....	212

### 제 3 편 사회·문화·체육·과학교류 분야

1. 보건분야에 대한 동·서독 정부간 협정(1974. 4.25) .....	223
2. 부양비지급의 대체에 관한 동·서독 재무장관간 합의문서(1974. 4.25) .....	231
3. 독일체육연맹(DSB)과 독일체조체육연맹(DTSB)간	

체육관계규정에 관한 의정서(1974. 5. 8) .....	236
4. 문화협정(1986. 5. 6) .....	237
5. 문화협정에 따른 동·서독 공동사업 계획서(1989.12.19) .....	243
6. 서독 Hof시와 동독 Plauen시간 도시자매결연에 관한 합의서(1987. 8. 4) .....	251
7.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동·서독 정부간 협정 (1987. 9. 8) .....	256

#### 제 4 편 우편·통신·방송교류 분야

1. 동·서독간 우편 및 전신교류에서 상호 취급 업무에 대한 결산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문서(1970. 4.29) ...	263
2. 동·서독 체신성 대표간 협상에 관한 의정서(1971. 9.30) ...	266
3. 동·서독간 지향성 「칼라」 방송구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1971. 9.30) .....	270
4. 우편 및 전신제도 분야에 있어서 동·서독 정부간 협정 (1976. 3.30) .....	273
5. 우편교류 개선에 관한 동독과의 협정(1983.11.15) .....	294
6. 서베를린 정부의 새로운 통신망에 대한 협정 (1985. 3.15) .....	302
7. 동·서독간 방송협력에 관한 합의서(1987. 5. 6) .....	315

## 제 5 편 기타 분야

1. 동·서독 기본조약(1972.12.21) ..... 321
2. 독일민주공화국 상주대표부에 대한 완화, 특권 및  
면제부여에 대한 법률(1973.11.16) ..... 327
3.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간 의정서 발표문(1974. 3.14) ..... 329
4. 독일민주공화국 상주대표부에 대한 완화, 특권 및  
면제부여에 관한 규정(1974. 4.24) ..... 334



# **제1편 인적교류 분야**



## 1. 통행사증 협정

가. 1963년 통행사증 협정(1963. 12. 17)

### 의 정 서

「에리히·벤트」 동독 문화부상과 「호르스트·코르버」 서백림 시의회의원은 1963. 12. 12부터 17일까지 모두 7차례의 회의를 갖고 1963. 12. 18부터 1964. 1. 5까지 서백림 시민이 동백림의 친척들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통행증 발급에 관해 논의했다.

쌍방은 정치적, 법적인 입장을 각각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같은 인도적인 요청을 실현시켜야 한다는데 공동의 관심을 기울였다. 쌍방은 서백림과 동백림을 번갈아가며 계속한 회담결과로 아래의 부록에서 정한 바와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쌍방은 쌍방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관청, 관직의 호칭에 대해서는 의견일치에 도달할 수 없었음을 확인한다. 이 의정서와 의정서의 부록은 쌍방이 동일한 내용으로 발표한다.

1963. 12. 17 백림

동독각료회의 의장의 전권위 원의 명에 의거하여	서백림시장의 위임을 받은 관방장관의 명에 의거하여
「에리히·벤트」부상	「호르스트·코르버」시의회의원

## 의정서 부록

### I

- (1) 통행증을 소지한 서백림시민은 1963. 12. 19부터 1964. 1. 5까지 동백림의 친척들을 방문할 수 있다.
- (2) 친척방문에 해당하는 방문은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숙모 및 백모, 숙부 및 백부, 조카, 조카딸 그리고 그들의 남편과 부인 또는 부부끼리의 방문들이다.
- (3) 「벤트」부상은 신청자가 동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방문허가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

### II

- (1) 1963. 12. 18부터 1964. 1. 4까지 여러개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이 사무소에서 신청서 용지를 배부하고 통행증 발급신청을 접수하여 통행증을 발급한다. 각지역별로 사무소를 설치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티르가르텐」 행정구역 :

- 「브라이크사이트」학교 백림 21「투름」가 86(※ 이하 행정구역 별 사무소 설치장소 생략, 모두 12개 행정구역에 12개 사무소) 신청자에 대한 서류 발급은 Ⅱ의 제4항에서 기술하는 동독 임직원들의 재량에 맡긴다.

- (2) 사무소의 집무시간은 평일에는 13 : 00부터 18 : 00까지로 한다. 신청서 용지배부와 통행증 발급신청 접수기간은 1963. 12. 18부터 1964. 1. 4까지로 한다. 통행증발급기간은 1963. 12.

19부터 1964. 1. 4까지이다.

(3) 사무소에는 「주간체재허가신청 및 발급」이라고 쓴 간판을 붙인다. 간판과 사무소 안내서의 준비와 부착은 백림시 의회가 임명한 관리들의 업무소관으로 한다.

(4) 신청서용지의 배부, 기재를 마친 신청서의 접수, 통행증발급에 관한 사무는 동독우정성의 직원들이 담당한다.

이들 직원들은 근무복을 착용한다. Ⅱ의 제1항에서 열거한 각 사무소에서는 보통 6명씩의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한다. 제6항에서 설명하는 수송작업에 종사하는 자들까지 합쳐 모두 100명이내의 직원들을 배치할 수 있다.

(5) 사무소의 적절한 기술과 물품구비(난방장치, 전기, 청소 등)는 서백림 시의회가 임명한 사무소관리들의 업무소관으로 한다. 그들은 위에 열거한 사무소에서 사무소의 관리권을 행사한다.

(6) Ⅱ의 제4항에서 기술한 직원의 통근과 신청서용지, 통행증발급신청서, 통행증 그리고 기타 서류를 서백림 시내에서 수송할 경우에는 서백림시 의회가 지정한 차량을 이용한다. 각 차량에는 수송을 지휘하는 서백림 관리 1명씩이 동승한다. 신청서용지, 통행증발급신청서, 통행증 그리고 기타 서류의 수송시에는 동독우정성 직원이 2명씩 동승한다.

Ⅱ의 제4항에서 기술한 직원의 통행로와 제6항의 첫문장에서 기술한 물품의 수송로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이쾰른」(Neuköln),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슈

테글리츠」(Steglitz), 「체렌도르프」(Zehlendorf), 「템펠호프」(Tempelhof), 「쇤베르크」(Schnöberg)구에 위치한 사무소를 왕래할 때는 「조넨 알레」(Sonnenallee)거리

② 「샤로텐베르크」(Charlottenberg), 「빌미스도르프」(Wilmersdorf), 「티르가르텐」(Tiergarten), 「슈판다우」(Spandau)구에 위치한 사무소를 왕래할 때는 「인발리덴슈트라세」(Invalidenstrasse)거리

③ 「베딩」(Wedding), 「라이니켄도르프」(Reinickendorf)구에 위치한 사무소를 왕래할 때는 「샤우세슈트라세」(Chausseestrasse)거리.

Ⅱ의 제4항에 기술한 직원들의 출근수송은 Ⅱ의 제2항에 기술한 집무시작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퇴근 수송시간은 집무시간이 끝난 직후로 한다.

### III

(1) 이 사무소에서는 신청서용지와 차후에 동독으로 들어갈 때 제시해야 할 통화 및 물품명세서의 용지를 교부한다. 신청자는 이 용지의 해당란을 기재한다. 사무소가 배부한 신청서는 기재를 끝낸 후에 다시 이 사무소에 제출한다. 신청서의 접수시에는 기재사항의 적부를 가리는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만약 I의 제2항에서 열거한 친척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사무소는 신청서를 즉석에서 반환할 수 있다.

16세이하의 어린이에게는 자신이 직접 기재할 신청서 용지는

배부되지 아니한다. 어린이의 인적사항이 그 어린이를 동반하는 성인의 신분증에 표시되어 있는 한 그 성인의 신청서에 어린이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입한다.

(2) 서백림에서는 신청서에 대한 가필과 적부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3) 통행증은 원칙으로 신청서가 제출된 다음날(평일만 계산)에 교부된다.

(4) 남편대신에 부인이, 부인대신에 남편이, 부모를 대신해 16세이상의 자녀가, 16세이상의 자녀 대신에 부모중의 한사람이 출두하여, 출두하지 않은 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통행증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다.

신체장애자의 통행증은 신체장애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제3자가 신체장애자의 신분증과 신체장애에 관한 관청의 증명서를 제시하여 신청 또는 교부받을 수 있다.

#### IV

동독으로 들어갈 때 통과 할 검문소는 다음과 같다.

- |                                |                         |                  |
|--------------------------------|-------------------------|------------------|
| 「샤우세슈트라세」(Chausseestrasse)     | 검문소                     | } (자동차와<br>도보통행) |
| 「인바리덴 슈트라세」(Invalidenstrasse)  | "                       |                  |
| 「조넨 알렌」(Sonnenallee)           | "                       |                  |
| 「오베르 바움」(Oberbaum)             | 다리검문소(도보통행에 제한)         |                  |
| 「프리드리히 슈트라세」(Friedrichstrasse) | 역 검문소(급행열차,<br>지하철 이용시) |                  |

통행자는 항상 통행증에 명기된 검문소를 이용한다.

V

- (1) 모든 통행증은 통행증에 기입된 날짜의 7:00부터 24:00 까지 유효하다.
- (2) 1963. 12. 31에 사용하도록 발급된 통행증은 1964. 1. 1. 15:00까지 유효하다.

VI

쌍방은 본의정서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을 각자가 부담한다.

VII

- (1) 쌍방은 II의 제1항에서 기술한 사무소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방문자의 왕래가 아무런 마찰없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 (2) 서백림 시의회는 II의 제1항에서 기술한 사무소 및 IV에서 기술한 검문소주변의 안전과 질서, II의 제4항에서 기술한 직원들의 지장없는 출퇴근 및 그들의 신변보호 그리고 II의 제6항에서 기술한 수송물품의 지장없는 수송을 보장한다.

이밖에도 서백림 시의회는 II의 제1항에서 기술한 사무소에서 동독직원들이 그들에게 허용된 업무를 수행할 때 서백림측이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 (3) 쌍방은 각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II의 제1항에서 기술한 사무소의 시설과 업무수행 그리고 동

독방문자들의 지장없는 통행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저지시킨다.

VIII

본의정서부록의 해석과 시행에 관한 견해차가 발생할 경우 「벤트」부상과 「코르버」의원이 협의를 통해 그것을 조정한다.

나. 1964년 통행사증 협정(1964. 9. 24)

의 정 서

1963. 12. 17일자의 통행사증 협정의 시행으로 큰 성과를 거둔 이후 「호르스트·코르버」의원과 「에리히·벤트」부상은 1964. 1. 10부터 1964. 9. 23까지 모두 28차례의 회담을 열어 동독의 수도인 동백림의 친척을 방문하려는 서백림 시민들에게 또다시 통행증을 발급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쌍방은 정치적, 법적인 입장을 각각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같은 인도적인 요청을 실현시켜야 한다는데 공동의 관심을 기울였다. 회담을 통해 쌍방은 1963. 12. 17일자 통행사증 협정을 확대시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록으로 첨부한 바와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쌍방은 장소, 관청, 관직의 호칭에 대해서는 의견일치에 도달 할 수 없었음을 확인한다.

본의정서의 유효기간은 12개월로 정한다. 적어도 이 기간이 경과하기 3개월전에 쌍방은 본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문

제를 논의한다.

본의정서와 그 부록은 쌍방이 같은 내용으로 발표한다.

1964. 9. 24 백림

서백림시장의 위임을 받은 관방장관의 명에 의거하여 「호르스트·코르버」의원	동독각료회의 의장의 전권위원 의 명에 의거하여 「에리히·벤트」부상
--	--

### 의정서 부록

#### I

1. ① 통행증을 발급받은 서백림시민은 - 1964. 10. 30부터 1964. 11. 12까지 - 1964. 12. 9부터 1965. 1. 5까지 - 1965년의 부활절과 성신강림제 기간에 각각 14일간 동독의 수도인 동백림의 친척을 방문할 수 있다.

1965년의 부활절과 성신강림제 기간의 방문시기는 「코르버」의원과 「벤트」부상이 1965. 1월에 합의하여 정한다.

② 각각의 방문기간내에서 지정된 하루동안 방문이 허용된다.

1964. 12. 19부터 1965. 1. 3까지의 방문기간 동안에는 1964. 12. 24일과 25일을 포함한 평일에 두번째의 방문을 할 수 있다.

③ 방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숙부 및 배부, 숙모 및 배모, 조카와 조카딸 그리

고 이들의 남편과 부인, 별거생활을 하는 남편과 부인이다.

2. ① 본약정의 유효기간중에 서백림시민은 1964. 10. 1부터 긴급한 가족적인 용무가 있을 경우 동독의 수도 동백림에 사는 그의 가까운 친척을 방문할 수 있다.

긴급한 가족적인 용무란 출생, 결혼, 위독한 병환, 사망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방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속부 및 백부 그리고 이들의 남편과 부인이다.

- ② 동서백림에서 별거생활을 하는 부부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동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남편이나 부인을 동백림에 두고 있는 서백림시민들은 10월 1일부터 가족동거를 위한 통행증을 발급받아 동백림의 남편이나 부인을 방문할 수 있다.

- ③ ①과 ②에 따른 방문은 4기로 된 방문기간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실현될 수 있다.

3.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독을 방문할 때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벤트」부상은 신청자가 동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방문허가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 II

1. I 의 제1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친척방문을 위해 행정구역별로 다음의 장소에 통행증발급 사무소를 설치한다.

「샤르로텐부르그」(Charlottenburg) 구 : 백림 15 「요하킴스타터」  
(Joachimstaler)가 51-32에 있는 학교건물, (※ 이하 생략)

- ② 통행증발급사무소의 개소기간은 다음과 같다.
- 1964. 10월과 11월 그리고 1964년, 65년 「크리스마스」와 신년의 친척방문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해 1964. 10. 1부터 10. 29 까지의 평일에 개소한다.
  - 1965년의 부활절과 성신강림제 기간의 4주간에 실시된 친척방문의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코르버」의원과 「벤트」부상이 합의하여 정한 시간에 개소한다.

사무소의 집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00부터 13:00까지와 14: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09:00부터 14:00까지로 한다.

2. 통행증발급 사무소의 적절한 시설과 비품준비(난방장치, 전기시설, 청소 등)는 서백림 시의회가 임명한 사무소 관리들이 담당한다.

4. 이 사무소에는 「통행증발급사무소」라고 쓴 간판을 붙인다. 간판과 사무소 안내서의 준비와 부착은 서백림 관리들이 담당한다.

### III

II의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술한 통행증발급사무소에서는 통행증발급 신청서용지와 통화 및 물품명세서용지(검문소통과시에 제출함)를 배부하며 신청서를 접수하고 통행증을 발급한다.

2. 신청서는 그 신청서용지를 배부해 준 사무소에 제출한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방문할 부부는 한장의 신청서로 신청을 할 수 있다. 16세이하의 어린이가 동독의 친척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부모 또는 친권자를 동반해야 한다. 16세이하의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 어린이의 인적사항은 그 어린이를 데리고 갈 성인의 신청서에 같이 기재한다. 이때 그 어린이의 인적사항은 성인의 신분에 기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어린이가 자신의 사진증명서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의 증명서와 신분증은 통행증을 신청할 때와 발급받을 때 제시 한다.

3. I 의 제1항에 해당되는 친척방문을 위한 통행증은 신청후 14일만에 발급된다.

I 의 제1항에 해당되는 통행증신청은 단시일내에 완결짓도록 한다.

4. 남편 또는 부인은 부인 또는 남편을 대신하여, 16세이상의 자녀는 부모를 대신하여, 부모중의 한 사람은 16세이상의 자녀를 대신하여 통행증을 신청하고 또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대리자는 출두하지 않은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체장애자 또는 보행이 불가능한 자의 통행증은 전권을 위임받은 제3자가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제3자는 전권을 위임한 자의 신분증, 신체장애의 사실을 증명하는 관청의 증명서 그리고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5. ① 모든 통행증은 그 통행증에 지정된 날의 7:00부터 24:00

까지 유효하다.

② 12월 31일자용으로 발급된 통행증은 1월 1일 15:00까지 유효하다.

③ I의 제2항에 해당되는 친척방문자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으면 당초의 방문허가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 IV

친척방문시에 통과할 검문소는 다음과 같다.

「샤우세 슈트라세」(Chausseestrasse) 검문소  
「인바리덴 슈트라세」(Invalidenstrasse) " } (자동차와 도보  
「조넨 알레」(Sonnenallee " ) " } 로 통행할때)  
「오베르 바움」(Oberbaum)다리 검문소(도보통행시)  
「프리드리히 슈트라세」(Friedrichstrasse)역 검문소(급행열차,  
지하철이용시)

방문자는 항상 통행증에 명시된 검문소를 이용해야 한다.

#### V

1. 통행증발급사무소에는 300명이내의 동독 우정성 직원들과 300명이내의 서백림 관리들이 근무한다.

긴급한 가족적인 용무로 인한 방문을 취급하는 통행증발급사무소에는 꼭 필요한 수의 동독우정성 직원 - 최소한 3명 - 과 그와 동수의 서백림 관리가 근무한다.

이들 직원들은 근무복을 착용한다.

2. 이들 사무소에서는 서백림 관리들이 사무소의 관리권을 행

사한다.

3. 마찰없는 업무처리를 위해 서백림 관리들은 통행증을 신청하거나 발급받기 위해 사무소로 몰려든 서백림시민들의 소동을 진정시키고 사무소출입의 질서를 유지한다.

4. 이 사무소에 배치된 서백림 관리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통행증을 신청하거나 발급받기 위해 사무소에 온 사람들의 사무소입장을 조정한다. 이를 위해 관리들은 통행증 신청과 발급시에 필요한 증빙서류(신분증, 전권위임서, 기타 증명서)와 신청서 접수증(통행증을 발급 받을 때 필요)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안내한다.

③ 통행증발급 신청서용지와 통화 및 물품명세서의 용지를 신청자들에게 배부한다.

④ 신청자의 서류작성을 도와준다.

⑤ 방문자에게 수속절차를 알려주고 안내사항을 전달한다.

⑥ 신청자의 신청서기재가 완벽한가, 신청자가 신청자격자에 해당되는가를 확인하고 또 기타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들 관리들은 신청자가 신청서를 V의 제5항에서 기술한 직원들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통행증발급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들을 검사한다.

5. 동독 우정성 직원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V의 제4항에서 기술한 서백림 관리들이 통행증발급 신

청서용지와 통화 및 물품명세서용지를 신청자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다.

② 방문자들에게 수속절차를 알려주고 안내사항을 전달한다.

③ 통행증발급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것을 검토 대조한 후에 신청서접수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며 증빙서류들을 반환한다.

6. 서백림에서는 신청서에 대한 가필과 적부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7. V의 제5항에 기술한 직원들은 통행증발급시에 신청자에게 지침서(Merkblatt)를 교부한다. 이 지침서에는 동백림으로 들어갈 때 와 거기서 체재하는 동안 준수해야 할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VI

1. 서백림시내에서 V의 제5항에서 기술한 동독직원들을 수송하고 신청서용지, 통행증신청서, 통화 및 물품명세서 그리고 지침서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서백림시 의회가 지정한 차량을 이용한다. 이 차량에는 표지판을 달지 아니한다. 이 차량의 인도는 동승한 서백림 관리가 담당한다.

신청서용지, 통행증신청서, 통행증, 통화 및 물품명세서 그리고 지침서를 수송할 때는 동독 우정성 직원 2명이 수송차에 동승한다.

2. V의 제5항에서 기술한 직원과 제1항에서 기술한 수송물품의 수송차에는 다음의 거리를 이용 한다. (※ 생략, 어느 구역에 있는 사무소를 왕래할 때는 어느 거리를 이용한다는 내용임.)

V의 제5항에서 기술한 직원들의 출근수송은 Ⅱ의 제2항에서

기술한 집무시작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원들의 퇴근 수송은 집무시간이 끝난 직후에 한다.

VII

1. 쌍방은 사무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방문자들의 왕래가 마찰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2. 서백림시 의회는 II의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술한 사무소와 IV에서 기술한 검문소 주변의 안전과 질서, V의 제5항과 VI의 제1항에서 기술한 직원들의 원활한 출퇴근 그리고 그들의 신변보호, VI의 제1항에서 기술한 물품의 지장없는 수송을 보장한다.

3. 쌍방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무소의 시설과 업무수행에 해를 끼치고, 방문 왕래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저지시킨다.

VIII

쌍방은 본의정서 부록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각자가 부담한다.

IX

본의정서부록의 해석 또는 여행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는 「코르버」의원과 「벤트」부상 또는 그들로 부터 위임을 받은 쌍방의 대표들이 조정한다.

다. 1965년 통행사증 협정(1965. 11. 25)

의 정 서

1964. 9.24일자의 제2의 통행사증 협정이 실시된 후 「호르스트·코르버」 서백림 시의회의원과 동독 국무상 「미카엘·콜」박사는 1965. 6. 21부터 1965. 11. 24까지 모두 23차례의 회담을 열고 동독의 수도 동백림의 친척을 방문하는 서백림 시민들에게 통행증을 발급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쌍방은 정치적, 법적인 입장을 각각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같은 인도적인 요청을 실현 시켜야 한다는데 공동의 관심을 기울였다. 회담을 통해 쌍방은 부록으로 첨부한 바와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쌍방은 장소, 관청, 관직의 호칭에 대해서는 의견일치에 도달할 수 있었음을 확인한다.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1965. 11. 25부터 1966. 3. 31까지로 한다.

본 협정서와 그 부록은 쌍방이 같은 내용으로 발표한다.

1965. 11. 25 백림

서백림시장의 위임을 받은  
관방장관의 명에 의거하여  
「호르스트·코르버」의원

동독각료회의의장의 전권  
위원의 명에 의거하여  
「미카엘·콜」국무상

## 의정서 부록

### I

1. ① 통행증을 발급받은 서백림시민은 1965. 12. 18부터 1966. 1. 2까지 동독 수도 동백림에 있는 그의 친척을 방문할 수 있다.  
② 친척방문은 지정된 하루동안 허용된다. 그밖에도 1965. 12. 24과 12. 31을 포함한 평일에 두번째의 방문을 할 수 있다.  
③ 방문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자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숙모 및 백모, 숙부 및 백부, 조카와 조카딸 그리고 이들의 남편과 부인, 별거생활을 하는 부부들이다.
2. ① 본약정의 유효기간중에 서백림시민은 1965. 11. 29부터 긴급한 가족적인 용무가 있을 경우 동독 수도 동백림의 가까운 친척들을 방문할 수 있다. 긴급한 가족적인 용무란 출생, 결혼, 위독한 병환, 사망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방문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자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그리고 이들의 남편과 부인들이다.  
② 동서백림에서 별거생활을 하는 부부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동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남편이나 부인을 동백림에 두고 있는 서백림시민들은 1965. 11. 29부터 본약정의 유효기간이 끝날때까지 가족동거를 위한 통행증을 발급받아 동백림의 남편이나 부인을 방문할

수 있다.

③ ①과 ②에 따른 방문은 제1항의 친척방문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실현될 수 있다.

3.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독을 방문할 때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짐을 과도하게 적재했을 경우에는 자동차 이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4. 「콜」국무상은 신청자가 동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방문허가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 II

1. ① I 의 제1항에서 기술한 친척방문을 위해 행정구역별로 다음의 장소에 통행증발급사무소를 설치한다.

「샤르로텐부르그」(Charlottenburg) 구 : 백림 19, 「슐로스－슈트라세」(Schloss-Strasse) 1 체육관

(※ 이하 생략=행정구역이름과 사무소를 설치하는 장소의 명칭임)

② 통행증발급사무소의 개소기간은 1965. 11. 29부터 12. 18까지이다.

이 사무소의 개소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는 10 : 00부터 13 : 00까지와 14 : 00부터 18 : 00까지이고 토요일에는 9 : 00부터 14 : 00까지이다.

2. I 의 제2항에 해당하는 가족방문을 취급하는 통행증발급 사무소는 「빌메르스도르프」(Wilmersdorf) 「호헨촐레른담」

(Hohenzollerndamm) 196에 설치한다.

본약정의 유효기간동안 이 사무소는 1965. 11. 29부터 평일에는 10:00부터 13:00까지와 14: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며 토요일에는 10:00부터 13:00까지 근무한다.

3. 이 사무소의 적절한 시설과 비품준비는 서백림 시의회가 임명한 사무소 관리들이 담당한다.

4. 사무소에는 「통행증발급사무소」라고 쓴 간판을 붙인다. 이 간판과 기타 사무소안에서의 준비와 부착은 서백림관리들이 담당한다.

### III

1. Ⅱ의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술한 통행증발급사무소에서는 통행발급 신청서용지 그리고 검문소 통과시에 제시하는 통화 및 물품명세서의 용지를 배부하며 통행증발급신청서를 접수하고 통행증을 교부한다.

2. 신청서는 그 신청서용지를 배부해 준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날 같은 시각에 동독을 방문하는 부부들은 한장의 신청서로 같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6세이하의 어린이가 동독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나 친권자를 동반해야 한다. 어린이에 해당하는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어린이의 인적사항은 어린이를 데리고 갈 성인의 신청서에 같이 기재한다. 이 경우 성인의 신분증에는 어린이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어린이가 자신의 사진증

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린이의 통행증을 신청하거나 발급 받을 때는 위의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3. I의 제1항에 해당하는 가족방문을 위한 통행증은 신청서 접수증에 표시된 날짜에 발급한다. I의 제1항에 해당하는 통행증발급신청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결짓도록 한다.

4. 남편 또는 부인대신에 부인 또는 남편이, 부모대신에 16세 이상의 자녀가, 16세이상의 자녀대신에 부모중의 한사람이 사무소에 출두하여 통행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는 출두하지 아니한 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체장애인이나 보행이 불가능한 자의 통행증은 이들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제3자가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제3자는 출두하지 아니한 자의 신체장애증명서, 전권위임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5. ① 모든 통행증은 그 통행증에 표시된 날자의 7:00부터 24:00까지 유효하다.

② 12. 31일자용으로 발급된 통행증은 1. 1일 15:00까지 유효하다.

③ I의 제2항에 해당하는 방문자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으 면 통행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IV

동독방문시에 통과할 검문소는 다음과 같다.

「오베르 바움」(Oberbaum) 다리검문소(도보로 통행시)

「프리드리히 스트라세」(Friedrichstrasse)역 검문소(급행열차와 지하철 이용시)

방문자는 항상 통행증에 표시된 검문소를 이용해야 한다.

V

1. 통행증 발급 사무소에는 300명 이내의 동독 우정성 직원들과 300명이내의 서백림 관리들이 근무한다. 긴급한 가족적인 용무로 인한 방문 절차를 취급하는 사무소에는 꼭 필요한 수의 동독 우정성 직원들(최소한 3명)과 이와같은 수의 서백림 관리들이 근무한다.

이들 직원은 근무복을 착용한다.

2. 이들 사무소에서는 서백림 관리들이 사무소의 관리권을 행사한다.

3. 마찰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서백림 관리들은 통행증을 신청하거나 발급받기 위해 몰려들 서백림 시민들의 소동과 그들의 사무소 출입을 조정한다.

4. 서백림 시의회가 임명한 사무소 관리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통행증을 신청하거나 발급받기 위해 사무소에 온 서백림 시민들의 사무소 입장을 조정한다. 이를 위해 관리들은 통행증의 신청과 발급에 필요한 증빙서류(신분증, 전권위임서, 기타 증명서)와 신청서접수증(통행증을 발급받을 때 필요)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사무소방문자들을 안내한다.
- ③ 통행증발급 신청서 용지와 통화 및 물품명세서용지를 신청자들에게 배부한다.
- ④ 신청자들의 서류작성을 도와준다.
- ⑤ 방문자들에게 수속절차와 안내사항을 알려 준다.
- ⑥ 신청자의 서류기재가 완벽한가, 신청자가 신청자격 범위에 해당되는가를 확인하고 또 기타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들 관리들은 신청자가 신청서를 V의 제5항에서 기술한 직원들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들을 심사한다.

5. 사무소에 배치된 동독 우정성 직원들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V의 제4항에서 언급한 서백림관리들이 신청서용지와 통화 및 물품명세서용지를 신청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 ② 방문자들에게 수속절차와 통지사항을 알려 준다.
- ③ 통행증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서류들을 대조 검토한 후에 신청서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이와 동시에 증빙서류도 반환한다.

④ 신분증과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심사한 후에 신청서 접수증을 받고 통행증을 교부한다.

6. 서백림에서는 신청서에 대한 가필과 적부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7. V의 제5항에서 기술한 직원들은 통행발급시에 지침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지침서에는 동독 수도 동백림을 방문할 때 준수해야 할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VI

1. V의 제5항에서 기술한 동독직원들, 신청서용지, 신청서, 통행증, 통화 및 물품명세서용지 그리고 지침서들을 서백림 시내에서 수송할 때는 서백림 시의회가 지정한 차량을 사용한다. 이 차량에는 표지판을 달지 아니한다. 이 차량의 안내는 서백림 관리가 담당한다. 신청서용지, 통행증발급 신청서, 통행증, 통화 및 물품명세서, 지침서를 수송할 때는 2명의 동독 우정성 직원이 수송차량에 동승한다.

2. V의 제5항에서 기술한 직원과 제1항에서 기술한 물품을 수송할 때는 다음의 거리를 이용한다.

(※ 생략,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사무소를 왕래할 때는 어느 길을 이용한다는 내용의 사무소가 위치한 행정구역 명칭과 거리명칭 열거)

V의 제5항에서 기술한 동독직원의 출근수송은 II의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술한 집무시작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야 한다. 퇴근수송은 집무시간이 끝난 직후에 한다.

VII

1. 쌍방은 통행증발급사무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 고 방문자들이 마찰없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2. 서백립 시의회는 II의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술한 통행증 발급사무소와 검문소 주변의 안전과 질서, V의 제5항 및 VI의 제1항에서 기술한 동독지원들의 지장없는 출퇴근 그리고 그들의 신변보호, VI의 제1항에서 기술한 물품의 지장없는 수송을 보장한다. 이밖에도 서백립 시의회는 동독 우정성 직원들이 수행하는 직책상의 업무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3. 쌍방은 사용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능력이 미치 는 범위내에서 II의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술한 통행증밝브사무 소의 시설과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방문자들의 워활한 왕래에 지장을 주는 모든 행위를 저지시킨다.

VIII

쌍방은 본 의정서 부록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각자가 부담한다.

IX

본 의정서 부록의 해석과 시행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는 「코

르버」의원과 「콜」국무상 또는 그들이 위임한 쌍방의 대표들이 조정한다.

### 라. 1966년 통행사증 협정(1966. 3. 7)

#### 의 정 서

「호르스트·코르버」 서백림 시의회 의원과 「미카엘·콜」 동독 국무상은 1966. 1. 25부터 1966. 3. 3까지 7차례의 회담을 열고 동독 수도 동백림의 친척을 방문하려는 서백림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통행증을 발급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쌍방은 정치적, 법적인 입장을 각각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같은 인도적인 요청을 실현시켜야 한다는데 공동의 관심을 기울였다.

회담을 통해 쌍방은 부록으로 첨부한 바와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쌍방은 장소, 관청, 관직의 호칭에 대해서는 의견일치에 도달할 수 없었음을 확인한다.

본의정서의 유효기간은 1966. 3. 7부터 1966. 6. 30까지이다.

본의정서와 그 부록은 쌍방이 동일한 내용으로 발표한다.

1966. 3. 7 백림

서백림시장의 위임을 받은  
관방장관의 명에 의거하여

「호르스트 코르버」의원

동독각료회의의장의 전권위원  
의 명에 의거하여

「미카엘 콜」국무상

## 의정서 부록

### I

1. ① 통행증을 발급받은 서백림 시민은 1966. 4. 7부터 4. 20 까지와 1966. 5. 23부터 6. 5까지의 기간에 동독 수도 동백림의 친척을 방문할 수 있다.  
② 방문자는 위의 방문기간중 지정된 날짜의 하루동안 동독을 방문할 수 있다.  
③ 방문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동백림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숙모 및 백모, 숙부 및 백부, 조카와 조카딸, 별거하는 남편 또는 부인을 두고 있는 서백림시민들이다.

위에 기술한 자의 남편 또는 부인도 동독방문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2. ① 본약정의 유효기간중에 긴급한 가족적인 용무가 있는 서백림시민은 1966. 4. 1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 동독 수도 동백림의 친척을 방문할 수 있다. 긴급한 가족적인 용무란 출산, 약혼, 위독한 병환, 사망의 경우를 말한다. 긴급 방문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자는 동독 수도 동백림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를 두고 있는 서백림 시민이다.  
② 동·서백림에서 별거생활을 하는 부부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동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남

편이나 부인을 동백림에 두고 있는 서백림 시민들은 1966.

4. 1부터 본협정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족동거를 위한 통행증을 발급받아 동백림의 남편이나 부인을 방문할 수 있다.

③ ①과 ②에 따른 방문은 제1항의 친척방문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실현될 수 있다.

3.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독을 방문할 때는 별도허가를 받아야 한다. 짐을 과도하게 적재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4. 「콜」국무상은 신청자가 동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방문허가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 II

1. ① I 의 제1항에서 기술한 친척방문을 위해 행정구역별로 다음의 장소에 통행증발급사무소를 설치한다.

「샤르로텐부르그」(Charlottenburg)구 : 백림19「솔로스 슈트라세」(Schloss Strasse)1체육관

(※ 이하 생략, 행정구역이름과 사무소를 설치하는 장소의 명칭임)

② I 의 제2항에 해당하는 가족방문을 위한 통행증발급사무소는 「빌메르스도르프」(Wilmersdorf)구 「호헨졸레른담」(Hohenzollerndamm) 196에 설치한다.

본약정의 유효기간동안 이 사무소는 4.1부터 평일에는

10:00부터 13:00까지와 14:00부터 18:00까지 집무하며 토요일에는 10:00부터 13:00까지 집무한다.

3. 이 사무소의 적절한 시설과 비품준비는 서백림시 의회가 임명한 사무소관리들이 담당한다.

4. 사무소에는 「통행증발급사무소」라고 쓴 간판을 붙인다. 이 간판과 기타 사무소 안내서의 준비와 부착은 서백림 관리들이 담당한다.

### III

1. II의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술한 통행증발급사무소에서는 통행증발급 신청서용지 그리고 검문소 통과시에 제시하는 통화 및 물품명세서의 용지를 배포하며 통행증발급신청서를 접수하고 통행증을 교부한다.

2. 신청서는 그 신청서용지를 배부해 준 사무소에 제출한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동독을 방문하는 부부들은 한장의 신청서로 같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6세이하의 어린이가 동독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나 친권자를 동반해야 한다. 어린이에 해당하는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어린이의 인적사항은 어린이를 데리고 갈 성인의 신청서에 같이 기재한다. 이 경우 성인의 신분증에는 어린이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어린이가 사진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린이의 통행증을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때는 위의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3. I 의 제1항에 해당하는 가족방문을 위한 통행증은 신청서 접수증에 표시된 날짜에 발급한다. I 의 제2항에 해당하는 통행증발급신청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결짓도록 한다.

4. 남편 또는 부인대신에 부인 또는 남편이, 부모대신에 16세 이상의 자녀가, 16세이상의 자녀대신에 부모중의 한사람이 사무소에 출두하여 통행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체장애자나 보행불능자의 통행증은 이들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제3자의 신청하에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제3자는 출두하지 아니한 자의 신체장애증명서, 전권위임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5. ① 모든 통행증은 그 통행증에 표시된 날자의 7:00부터  
24:00까지 유효하다.  
② I의 제2항에 해당하는 방문자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으  
면 통행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VI

동록방문시에 통과할 검문소는 다음과 같다.

「샤우세 슈트라세」(Chausseestrasse) 검문소	(자동차와 도보로 통행할때)
「인바리덴 슈트라세」(Invalidenstrasse) "	
「존넨알레」(Sonnenallee) "	
「오베르바움」(Oberbaum) 다리 "	(도보로 통행할때)
「프리드리히 슈트라세」(Friedrichrsrasse) 역 "	(급행열차와 지하철 이용시)

방문자는 항상 통행증에 표시된 검문소를 이용해야 한다.

V

1. 통행증발급사무소에는 300명이내의 동독 우정성 직원들과 300명이내의 서백림 관리들이 근무한다. 긴급한 가족적인 용무로 인한 방문절차를 취급하는 사무소에는 꼭 필요한 수의 동독 우정성 직원들(최소한 3명)과 이와 동일한 수의 서백림관리들이 근무한다. 이들 직원들은 근무복을 착용한다.
2. 이들 사무소에서는 서백림 관리들이 사무소의 관리권을 행사한다.
3. 마찰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서백림 관리들은 통행증을 신청하거나 발급받기 위해 몰려든 서백림 시민들의 소동과 그들의 사무소 출입을 조정한다.
4. 서백림시 의회가 임명한 사무소 관리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통행증을 신청하거나 발급받기 위해 사무소에 온 서백림 시민들의 사무소 입장을 관할한다. 이를 위해 관리들은 통행증의 신청과 발급에 필요한 증빙서류(신분증, 전권위임서, 기타 증명서)와 신청서 접수증(통행증을 발급받을 때 필요)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사무소내의 방문자 출입을 안내한다.
  - ③ 통행증발급 신청서용지와 통화 및 물품명세서용지를 신청자들에게 배부한다.
  - ④ 신청자들의 서류작성을 도와준다.

- ⑤ 방문자들에게 수속절차와 안내사항을 알려준다.
- ⑥ 신청자의 서류기재가 완벽한가, 신청자가 신청자격범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또 기타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들 관리들은 신청자가 신청서를 V의 제5항에서 기술한 직원들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들을 심사한다.

5. 사무소에 배치된 동독 우정성 직원들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V의 제4항에서 언급한 서백림 관리들이 신청서용지와 통화 및 물품명세서용지를 신청자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기한다.
- ② 방문자들에게 수속절차와 통지사항을 알려준다.
- ③ 통행증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서류들을 대조 검토한 후에 신청서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이와 동시에 증빙서류도 반환한다.
- ④ 신분증과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심사한 후에 신청서 접수증을 받고 통행증을 교부한다.

6. 서백림에서는 신청서에 대한 가필이나 적부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7. V의 제5항에서 기술한 직원들은 통행증발급시에 지침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지침서에서는 동독 수도 동백림을 방문할 때 준수해야 할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VII

1. V의 제5항에서 기술한 동독직원들, 신청서 용지, 신청서, 통행증, 통화 및 물품명세서용지 그리고 지침서들을 서백림 시내에서 수송할 때는 서백림 시의회가 지정한 차량을 사용한다. 이 차량에는 표지판을 달지 아니한다. 이 차량의 안내는 서백림 관리가 담당한다.

신청서용지, 통행증발급신청서, 통행증, 통화 및 물품명세서, 지침서를 수송할 때는 2명의 동독 우정성 직원이 수송차량에 동승한다.

2. V의 제5항에서 기술한 직원과 제1항에서 기술한 물품을 수송할 때는 다음의 거리를 이용한다.

(※ 생략,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사무소를 왕래할 때는 어느 길을 이용한다는 내용의 사무소가 위치한 행정구역명칭과 거리 명칭 열거)

V의 제5항에서 기술한 동독직원의 출근수송은 II의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술한 집무시작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야 한다. 퇴근수송은 집무시간이 끝난 직후에 한다.

VIII

1. 쌍방은 통행증발급사무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방문자들이 마찰없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2. 서백림 시의회는 II의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술한 통행증

발급사무소와 VI에서 기술한 검문소주변의 안전과 질서, V의 제5항 및 VI의 제1항에서 기술한 동독직원들의 지장없는 출퇴근 그리고 그들의 신변보호, VI의 제1항에서 기술한 물품의 지장없는 수송을 보장한다. 이밖에도 서백림 시의회는 동독 우정청 직원들이 수행하는 직책상의 업무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3. 쌍방은 사용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능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II의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술한 통행증발급사무소의 시설과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방문자들의 원활한 왕래에 지장을 주는 모든 행위를 저지시킨다.

### VIII

쌍방은 본 의정서 부록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각자가 부담한다.

### IX

본 의정서 부록의 해석과 시행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는 「코르버」의원과 「콜」국무상 또는 그들이 위임한 쌍방의 대표들이 조정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 민간인 및 물자의 통행에 관한 동·서독 정부간의 협정, 부속문서 및 의정서 부록(1971. 12. 17.)

A. 협정문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구주의 긴장 완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1971년 9월 3일자의 협정규정에 따라 본 협정을 체결할 것에 합의한다.

제1조 이 협정의 적용대상은 도로, 철도, 수로를 통한 – 독일 민주공화국의 통치지역을 통과하여 – 베를린의 서방지역(서 베를린)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민간인 및 물자의 통행이다. (이하 통행교통이라 약칭한다.)

제2조 ①통행교통은 완화되며 방해받지 않는다. 이것은 국제관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간편하고 신속하며 편리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이 협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행교통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독일민주공화국의 공공질서에 관한 법규를 적용한다.

제3조 통행교통은 지정된 국경 통과지점과 통행구역을 이용한다.

제4조 통과여행자를 위한 비자는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경통과

지역에서 발급된다.

이 협정 적용상의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급행버스, 급행 열차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통행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신속을 보장한다. 버스업자나 혹은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필요한 단체여행자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급행버스를 이용하는 통과여행자에게 단체용 비자가 발급될 수 있다.

제5조 ① 물자 통행교통의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공식적인 운송서류와 일정한 물품에 대해서 규정된 공식, 증명서,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이 협정 적용상의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은 물품, 통행수단과 그 물품자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③ 운송수단 또는 화물이 지닌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통행 지역내에서 공식적인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독일민주공화국의 공공질서에 관한 법규에 의거하여 운송업체의 경비부담하에 물품운송을 호송할 수 있다.

④ 물품운송시 출발지의 해당세관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독일연방공화국 해당 법규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해당물품이 운송서류의 내용과 부합하는가의 여부를 검사한다. 출발지의 세관은 관계서류에 암인으로 된 관인을 찍어, 위에 설명한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했다는 것을 표시한다.

운송서류가 여러 장일 경우 그중 한 장의 서류에 나머지 서류의 수가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그 한장의 서류에 암인으로 된 관인을 찍은 것으로 충분하다.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물품봉인을 위임받은 업체가 봉인을 했을 경우, 관청에 의해서 그 사용권을 위임한 업체의 암인은 출발지세관의 관인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6조 ①통행교통에서 민간물품의 운송을 위해서는 운송수단(화물자동차, 화물열차, 내육수로용 화물선, 용기)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운송수단은 출발전 세관의 봉인, 철도당국 또는 우편국의 봉인, 또는 해당 관청으로부터 위임된 공식봉인(이하 봉인이라 부른다)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드시 허가를 얻어야 통과할 수 있는 물품과 독일민주공화국이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의 통과시에는 봉인수송이 특히 요청된다. 물품을 전혀 실지 아니한 운송수단 역시 봉인될 수 있다.

통행교통의 절차를 가장 간소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당국은 세관이 봉인하기 좋도록 구조상 필요한 장치 또는 설비를 함으로써 운송수단을 가능한 최대한의 봉인형태로 만들도록 조치한다.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은 이러한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통행수속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②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지정된 모든 부분에 필요한 수의

봉인장치를 하며 동 시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 i ) 출발지 세관
- ii ) 철도교통에 있어서는 독일연방도로국과 독일연방우편국
- iii ) 해당 세관으로부터 봉인업무를 위임받은 일정한 기업체.  
이 협정의 절차와 규정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세관은 위임받은 기업체에게 필요한 책임을 부여하고 업체에게 위임된 봉인이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독일연방철도국, 독일연방우편국 또는 위임기업체가 봉인을 했을 경우에도 해당세관은 세관이 직접 봉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본 협정에 의거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봉인권한을 위임받은 기관(독일연방우편국 이외의)은 운송서류에 봉인한 부분의 수와 봉인표지 일자를 기입 서명하고 압인으로 된 관인 또는 관에서 위임받은 스템프를 찍는다. 운송서류가 여러 장이고, 그 중 한장의 서류에 나머지 서류의 수가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한장의 서류에 위의 사항을 기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④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관행에 따라 세관의 봉인절차를 거쳐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운송수단은 모두 세관봉인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도로차량과 내륙선의 경우에는 관세봉인승인서를 봉인 안전도에 대한 증명으로 인정하며, 용기의 경우 허가서를 봉인 안전도에 대한 증명으로 인정한다. 봉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자신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수송수단이 세관봉인에 적합한지를 검사한다. 이때 그는 유효기간이 지난 세관의 봉인승인서가 사용될 수 없다는 점과 그 수송수단의 봉인 안전도에 관계되는 규정에 수송수단이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⑤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의 검사절차는 봉인과 수송서류의 조사에 국한된다.

⑥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은 봉인을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로 봉인장치를 더할 수 있다. 그로 인해 통행교통이 지연되어서는 아니된다.

⑦설치한 봉인장치가 파손되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봉인의 안전도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운송책임자는 즉각 이 사실을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불의의 사고나 기타 절박한 동기로 물품을 타운송수단으로 옮겨 실어야 할 경우, 수송자는 이 사실을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물품의 전적은 반드시 당국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임박한 위험으로 즉각 물품을 내리거나 적재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 수송자는 긴급히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운송수단을 정지시킨 채, 이 사실을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위의 경우에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은 운송책임자의 인적 사항, 운송수단, 사건개요, 긴급조치내용 그리고 임시로 설치한

봉인장치에 관한 조서를 작성한다. 운송책임자는 그 조서의 1부를 휴대한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를 적용한다.

제7조 ①무개화물차와 같이 제6조 제1항에 따른 봉인장치를 할 수 없는 수송수단에 대해서는 검사절차를 운송서류 조사에만 국한시킨다.

②운송수단이 제1항에 따라 수송도중에 내려 놓을 물자를 실었다거나 혹은 그 안에 도중에서 실은 사람이나 물자가 있다는 혐의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봉인되지 않은 수송수단의 내부를 조사할 수 있다.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공질서에 관한 독일민주공화국 법규에 의거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사한다. 제16조의 관계규정이 적용된다.

제8조 ①통행로를 운송하는 화물차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화물차와 트레일러의 운행 및 운전사의 면허증은 상호 인정된다.

③차량의 형태와 장비가 그 차량의 운행을 허가한 지역의 해당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때, 이것은 타지역에서도 인정된다. 짐을 실었을 때의 화물차와 트레일러가 독일민주공화국의 규정에 명시된 용량 및 중량규격을 벗어나는 경우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의 특별허가를 필요로 한다.

제9조 ①통행교통시 자가용 운송수단도 이용 가능하다.

②이 협정에서 말하는 자가용 수송수단은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은 화물차를 말하며 화물운송 차량이나 급행버스가

아닌 것을 지칭 한다. 도로, 철도, 수로용 수송수단의 여러 부분 중 화물적재용이 아닌 부분과 급행버스의 일정한 부분중 승객용이 아닌 부분은 개인용 수송수단과 같은 계열에 속한다.

③자가용 수송수단을 이용하는 여행자에 대한 수속은 지연되지 아니한다. 단, 본 협정의 시행상의 예외는 별도로 정한다.

④여행자의 수송수단과 개인용 수하물은 수색 및 체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도중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단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특별한 경우는 예외이다. 특별한 경우란 서베를린을 향해 또는 서베를린으로부터 직행하는 여행과 무관하고 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공질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목적을 위해 통행로를 악용할 의도가 있거나, 악용할 가능성을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를 말한다. 이 원칙은 사유별로, 개인별로 적용된다.

⑤화물수송수단의 운전사 및 그의 수화물에 대한 수속은 자가용 수송수단을 이용하는 여행자에 대한 것과 같다.

제10조 ①통행교통시 급행버스의 사용은 가능하다. 이 협정이 뜻하는 버스는 차체의 구조와 설비로 보아 9명이상(운전사 포함)이 승차하기에 적합한 차량을 의미한다. 직행버스는 제4항의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과지역간의 독일민주공화국 영토를 한번도 정지하지 않고 운행하여야 한다.

②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은 신분확인외의 어떤 검문절차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의 여행상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버

스의 탑승자는 차내에 앉은 채로 월경수속을 밟는다.

③통과지역이 장거리일 경우,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은 급행버스 휴게소를 설치하며 독일연방공화국 당국은 휴게소와 휴게소 외부로의 통행금지에 관해 계몽한다.

④불의의 사고, 엔진고장 또는 천재지변등의 비상사태가 돌발하여 버스가 정차했을 경우, 운전사와 여행자는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의 허가나 요구에 의해서만 버스와 지정된 휴게소를 떠날 수 있다. 버스운전사는 비상사태로 인한 운행중지와 그 이유를 독일민주공화국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은 운행중지의 사유와 여행자, 승무원의 신분을 재조사할 수 있다.

⑤제4항에서 기술한 이유 이외의 다른 이유로 급행버스가 정차할 때는 탑승자들과 그들의 수하물과 버스는 이 협정 제16조에 의해 조치된다.

제11조 ①철도교통에 있어서 협정 변방의 중앙관청은 교통량을 감안하여 정기 및 임시열차의 운행 시간표를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교통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할 경우, 철도의 가용한계내에서 열차를 증가하여 운행하는 문제를 협의·해결한다.

③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경계선의 두 역간의 철도운행을 위해서 협정쌍방의 해당 중앙관청은 합의에 의하여 관계규정을 정한다.

④ 협정 쌍방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열차승무원과 기관사의 신분증명서를 서로 인정한다.

제12조 ① 통과교통에는 급행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이 여객열차는(일승용차 적재열차) 통과지역간을 독일민주공화국 영토에서 정차하지 않고 운행한다. 특별히 지정된 역이나 공식적인 운행계획에 명시된 독일민주공화국의 역에서는 통과여행자를 제외한 여행자의 하차가 허용된다. 국경통과시의 정차와 기타 있을 수 있는 정차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된다.

② 독일민주공화국의 검문절차에는 승객의 신분확인 이외 다른 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협정 여행상의 예외를 제외하고 승객에 대한 검문은 열차내에서 실시된다.

③ 통과여행자들은 불의의 사고, 기관고장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하에서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의 요구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급행열차에서 하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은 승객의 신분조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④ 만일 통과여행자가 제3항에서 기술한 이유와 다른 이유로 급행열차로부터 이탈할 때, 이 여행자와 그의 수하물은 이 협정 제16조에 의해 조치된다.

제13조 ① 물품운송을 위해서 내륙수로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 통과운반되는 내륙수로선박은 독일민주공화국의 내륙수로 교통규정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특수 선박, 제반 수영기구, 그리고 신조선박의 이송도 해당된다. 스

포츠용보트, 기타 개인용 선박들은 적재하거나 예인선으로 끌고 갈 수 있다.

② 선박증명서 및 엘베강과 내륙운하에서 운반을 허가받은 운반증, 내륙수로선의 승선인원에 관한 증명서류는 공식적으로 인정 받는다.

③ 제1항에서 기술한 내륙수로선은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이 인정한 휴게소에서 정박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륙수로선의 선원은 특별히 허가된 휴게소에 상륙할 수 있다. 불의의 사고, 기관고장, 질병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와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의 요구나 허가가 있을 경우, 선원들은 운반을 중단하고 다른 적절한 장소에 상륙하도록 허가된다. 이 경우 선장은 비상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게 된 경위와 그 사유를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④ 수문, 선박용 기중기, 선박휴게소를 포함한 수로의 이용에 대해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은 법규에 의거하여 세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4조 ① 독일민주공화국은 그 영토에서 수송수단과 통과여행자들이 불의의 재난, 기관고장과 수상사고를 당할 경우, 고장수리, 예인작업, 의료봉사, 선박소 및 공장서비스 등의 긴급구조를 제공할 것을 보증한다.

②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조사와 필요한 조서를 작성하는 데는 독일민주공화국의 규정을 적용한다. 독일민

주공화국 당국은 피해복구에 필요한 조서를 독일연방공화국 당국에 송부한다.

제15조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은 수로의 상태, 수심, 수위, 수문 개방시간, 선박운반금지구역 등에 관한 관례적인 통지사항과 통행에 필요한 순회로를 포함하여 관련된 기타 정보를 독일 연방공화국 당국에 통지한다.

제16조 ①이 협정의 발효이후 통행로를 이용하는 통행자가 일 반적으로 통용되는 독일민주공화국의 법규에 저촉되는 위법 행위 또는 범법행위를 할 때에는 이 협정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한다.

다음의 각 항목이 그러한 행위에 해당된다.

- i ) 물자를 배포하거나 적재하는 행위
- ii ) 사람을 태우는 행위
- iii ) 불의의 재난이나 질병의 특수상황이 아닌 경우, 독일민주 공화국 당국의 허가없이 지정된 통행로를 이탈하는 행위
- iv ) 기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 v ) 도로통행규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 협정의 발효이후,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위법적으로 범죄행위를 하거나 혹은 통행여행자의 위반행위에 동조자, 선동자, 공범자로 가담한 경우에도 역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②이 협정에서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란 특정한 경우에 어떤 일정한 사실, 또는 구체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볼 때,

위의 제1항의 목적을 위해 통행로를 악용하려 했거나, 악용하고 있거나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통행로 사용위반에 대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공질서에 관한 독일민주공화국 법규에 의거하여 여행자들과 그들이 이용하는 수송수단과 그들의 수하물을 조사하거나 여행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③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은 통행로 사용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공질서에 관한 독일민주공화국 법규에 의거하여,

- i ) 결책 또는 반질서범으로 처벌하거나 경고와 벌금을 과하거나 대상물을 몰수한다.
- ii ) 대상물을 압류하거나 몰수한다.
- iii ) 범법자를 퇴거시키거나 일정기간 통행로의 이용을 불허한다.
- iv ) 범법자를 체포한다.

④ 과거의 통행로 이용시에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제3항에 기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기술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독일민주공화국의 공공질서법규에 의거하여 작성한 조서를 해당자에게 교부한다. 대상물을 몰수하거나, 압류하면 해당자에게 대상물의 명세서를 교부한다.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은 독일연방공화국 당국에게 여행자의 체포, 통행로 이용불허 조치

및 원송조치, 그러한 조치의 근거에 관한 내용을 즉각 통고한다.

⑥통행로를 악용한 자가 독일민주공화국 영토의 통행지를 통과한 뒤 통행로 악용의 사실이 발견되면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은 독일연방공화국 당국에게 악용행위, 증거자료 및 처벌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통보한다. 독일연방공화국 당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공공질서법규에 의거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에 그에 관해 통보한다.

제17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이 협정 제16조에 기술한 통행로의 악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특히 유의한다.

- i )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과 기업체에게 이 협정의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주지시킨다.
- ii ) 독일연방공화국 당국이 통행로의 악용기도를 사전에 인지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공공질서법규에 의거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통행로의 악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iii ) 운송수단이 운행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날 때, 그 수송수단의 국경선 통과는 허가되지 아니한다.

제18조 ①세금, 사용료, 통행료 및 그 시설과 설비의 유지비

등 기타 비용은 1년단위의 총액 청산방식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이 독일민주공화국에 지불한다.

②독일연방공화국이 지불해야 할 총액속에는 다음과 같은 것 이 포함된다.

i ) 도로사용료

ii ) 세금보상료(Steuerausgleichsabgabe)

iii ) 비자발급 수수료

iv ) 버스의 정기운행 허가취소와 내륙수로선박에 대한 운행 허가 발급취소로 인한 독일민주공화국의 재정상의 손해 와 이에 관련되는 기타 재정상 손해에 대한 보상금

1972년부터 1975년까지 연간 지불총액은 2억3,490만마르크로 확정한다.

③독일연방공화국은 매년 3월 31일까지, 첫회는 1972년 3월 31일까지, 독일민주공화국이 지정한 독일연방공화국 은행의 계정을 통해서 베를린소재 독일대외무역은행 앞으로의 지불 총액을 대차한다.

④1976년 이후에 지불할 총액의 규모와 그 총액청산기간은 1975년도 후반기에 그 동안의 통행량을 감안하여 확정한다.

제19조 ①협정 쌍방은 이 협정의 해석이나 시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난점과 견해차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동 위원회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교통상이 전권을 위임한 대표와 독일민주공화국의 교통상이 전권을 위임한 대표로 구성

된다.

③동 위원회는 협정쌍방중 일방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④구체적인 절차내용은 위원회가 확정한다.

⑤위원회가 그들에게 위임된 견해차의 조정을 해결하지 못할 때, 동 문제는 쌍방 정부에게 넘겨지고 양정부는 이를 협상을 통해 조정한다.

제20조 봉인장치를 하기에 적합하고 또 봉인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봉인을 하지 않은 수송수단에 대해서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이 협정은 1971년 9월 3일의 프랑스, 소련, 영국 그리고 미국 정부간의 협정과 함께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그 협정과 함께 계속 유효하다. 1971년 12월 17일 「본」에서 독일어로 된 2통의 원본을 작성하였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곤 바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카엘 콜

## B. 부속문서

1. 독일연방공화국 경제 및 재무상은 독일민주공화국 관세국에 아래사항을 통지한다.

1)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기업체와 그

### 기업체에 하달한 행정지시

- 2)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기술한 봉인장치, 관인, 세관봉인승인서의 견본, 이 견본은 본 협정에 의거한 통행이 시작되기 전의 적절한 시기에 공표되어야 한다. 독일연방공화국의 봉인장치, 관인, 또는 세관봉인승인서를 변경하려고 할 때는 이 사실을 적절한 시기에 독일민주공화국에 통지한다.
2.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경지역 관리사무소는 가능한 한 이미 설치해둔 봉인장치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독일민주공화국 관세국은 독일연방공화국 경제 및 재무상에게 본협정의 발효이후 특정물품 및 살아 있는 동물의 휴대 및 운반에 대해서 적용할 조건들을 통지한다. 독일민주공화국 관세국은 독일 연방공화국 경제 및 재무상에게 장차 필요한 변경사항을 적시에 통지한다. 그러한 변경내용은 운행 협정의 정신과 자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 C. 의정서 부록

####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의 민간화물 통행에 관한 양독간 협정의 첨부물

1. 독일민주공화국측의 위원회대표는 제3조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통행을 위해 지정된 통과지점과 통행구역에 관한 사항을 통지한다. 본 협정의 발효이후에 가능해 질 통행상의 개

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도부분 :

- i ) 교통량으로 보아 필요한 경우, 구텐퓌르스트 국경통행지점으로 정기여객 및 특별여객열차가 왕래하며, 이 지점을 통해 살아 있는 동물을 운송할 수 있고 직행화물열차가 이 지점을 통과한다.
- ii ) 게르스퉁에 국경통과지점을 이용하여 살아 있는 동물을 운송할 수 있다.
- iii ) 마리엔보른 국경통과지점을 왕래하는 열차의 수를 같은 비율로 줄인다는 조건하에서 외비스펠데 국경통과지점으로 열차를 운행한다.
- iv ) 교통량으로 보아 필요한 경우 쉬반하이데 국경통과지점으로 직행화물열차를 운행한다.
- v ) 화물차만을 연결한 급행화물열차에 정기운행객차를 연결한다.

육로부분 : 바르타 국경통과지점으로 영업용 버스와 영업용 화물차의 통행 그리고 동물운송을 할 수 있다.

수로부분 : 전체 길이가 90m 이상인 선단이 하벨 강류를 이용할 때 적용하던 통제조치를 철폐한다.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은 불가피한 변경사항을 적절한 시기에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에게 통지한다.

2. 통행에 사용되는 운송수단, 운송되는 화물, 그리고 통행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통행세 또는 그와 비슷한 성격의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보안조치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3. 협정 쌍방은 제4항에서 언급한 원칙을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한다. 그것에 상응하는 규정은 통행문제에 관한 양독조약에서도 채택될 것이다.
4. 제7조는 통행시 특정물품 및 살아 있는 동물을 운반 또는 휴대할 경우에 수반되는 조건을 기술한 통지사항 제3절 제2~제4항 및 제4절 제2항의 특별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부속문서3)
5. 협정 쌍방은 통행에 이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 반드시 제6조와 제7조를 준수해야 한다는데 합의한다. 제20조의 내용은 여기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6. 협정 쌍방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국제관례상의 형식을 갖춘 책임보험문제에 관한 규정을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 당국의 합의에 의하여 제정하기로 양해한다. 이러한 새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행제도를 계속 적용한다.
7. 독일연방공화국은 독일민주공화국 당국이 발급한 교통수단과 트레일러의 운행증 및 운전사의 운전면허증을 독일연방공화국이 인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호혜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통행문제에 관한 양독간의 조약속에 포함시키기로

양해한다.

8. 조약 쌍방은 화물운송용이 아닌 가옥차(가옥으로 이용되는 차)와 트레일러 그리고 이와 비슷한 성격의 교통수단을 제9조 제2항의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양해한다.
9. 통행 중도에 배포할 것이 아니고 통행자 개인이 사용할 서적, 신문 및 기타 인쇄물의 휴대는 통행로를 악용하는 행위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0. 독일연방공화국은 통행협정의 발효이후부터는 내륙수로선의 허가수속이 독일민주공화국의 소관사항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천명한다.
11. 자가용 교통수단으로 통행하는 제3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는 제18조 제2항에서 기술한 비자발급 수수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개월 이상의 체재허가를 받았고 그 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제3국인의 경우는 여기서 제외된다.
12. 협정 쌍방은 제19조에 의거하여 적당한 시기에 구성될 위원회문제와 통행계획 및 그 실천에 관한 문제를 서로 협의하기로 양해한다.

### 3. 여행 및 방문교류의 완화와 개선에 관한 동독 정부와 서베를린 당국간 협정(1971. 12. 20)

#### A. 협정문

1971년 9월 3일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정부간의 서베를린 협정에 따라, 그리고 긴장완화에 기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와 서베를린 시민의 여행 및 방문교류를 다음과 같이 완화하고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①서베를린에 상주하는 시민은 1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30일이내의 한도내에서 방문을 목적으로 서베를린에 인접한 지역과 인접지역이 아닌 동독내의 지역을 여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여행은 그 사유가 인도적, 가족적, 문화적, 관광적 인 동기일 때 허가된다.

제2조 ①서베를린에 상주하는 자가 동독에 입국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증명서와 통행증이 필요하며 출국시에는 동독의 출국 허가가 요구된다. 필요한 증명서는 동독의 해당관청에서 발급한다.

②어린이를 동반할 경우, 그 보호자의 신분증명서에 그 어린이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혹은 어린이 자신의 증명서나 사진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예외의 경우(가족적 이유, 휴가중의 체재)에 16세까지의 어린이는 보호자의 동반없이도

입국이 허가된다.

③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서베를린에 상주하는 자는 입국시 서베를린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류를 휴대해야 한다. 여행자의 신분이 확실할 때에는 동독 당국도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신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발급할 수 있다.

제3조 ① 서베를린 상주자가 동독에 입국할 경우에는 지정된 국경통과 지점을 통과해야 한다.

② 여행허가서나 동독 당국이 확인한 전보를 근거로, 서베를린 상주자는 국경통과지역에서 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4조 ① 긴급한 가족적 사유나 인도적 문제가 발생하면, 서베를린 상주자는 제1조에서 방문허용 기간이 이미 끝났을 경우라도 입국할 수 있다. 입국에 필요한 허가는 해당관청에서 확인한 전보를 근거로 하여 국경통과지점에서 발급될 수 있다.

② 제1조에서 언급한 경우 이외에 사회적, 학술적, 경제적, 상업적, 문화적 용무가 있을 경우에도 입국은 허가된다.

③ 제1항에서 기술한 여행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인 신청이 가능하다. 3개월 이내에 완전히 끝날 수 있는 여행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에 나누어 실시할 여행을 1회에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① 서베를린 상주자는 동독 여행사와 독일여행사(서독) 간에 맺은 합의에 근거하여 관광객의 자격으로 개별적으로

혹은 단체로 여행할 수 있다. 그들은 수일간의 일주여행, 당일여행, 주말여행을 할 수 있다. 휴양여행, 온천요양, 특별행사 참관도 할 수 있다.

②서베를린 상주자가 관광객으로서 여행사의 관광계획과 관계없이 당일관광만 하고 되돌아 오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베를린에 있는 방문 및 여행사무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여행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여행사는 여행허가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또는 직접 전달한다.

③서베를린 상주자는 순회여행용으로 허가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서베를린의 버스회사는 이를 실시하기 위해 국경통과를 허가받을 수 있다.

제6조 이 협정을 시행함으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왕래의 사정을 더욱 호전시키기 위해 쌍방은 이 협정을 토대로 하여 보다 전진적 여행완화조치에 합의할 수 있다.

제7조 쌍방은 본 협정과 본 협정의 여행세칙을 각자의 주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주지시키며, 협정과 여행세칙이 합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제8조 ①쌍방은 각기 대표를 임명하고 동 대표들에게 본 협정의 적용과 여행과정에서 그때 그때 일어나는 견해차와 난점을 해결하도록 위임한다.

②동 대표회의의 소집은 일방의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쌍방대

표들은 보좌관을 동반할 수 있고 또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

③ 쌍방대표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동독 정부와 서베를린 당국에 넘겨지며 이때 양측은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제9조 본 협정은 1971년 9월 3일자의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  
국정부간의 베를린협정과 동시에 발효하며 그와 동일한 유효  
기간을 가진다.

1971년 12월 20일 베를린에서 독일어로 된 2통의 원본이 작성되었다.

## B. 여행 및 방문교류의 완화 및 개선에 관한 동독 정부와 서베를린시 당국간의 협정을 위한 의정서 부록

- 1년에 30일의 총체재기간의 범위내에서(합의서 제1조 제1항) 서베를린 상주자는 제한없이 동독에 입국할 수 있다.
  - 1년에 30일의 총방문기간이 이미 소진되었을 경우에도 긴급한 가족적 용무가 있을 때에는 입국이 허가된다.
  -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동독 당국은 동독 정부와 서베를린 당국간의 여행 및 방문교류의 완화 및 개선에 관한 협정(제1조 제1항)에 정해진 체재기간을 초과하여 체재를 연장시킬

수 있다.

4. 서베를린 상주자가 동독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 절차를 밟는다.
  - i ) 인도적, 가족적, 종교적 혹은 문화적 용무로 여행하는 경우, 방문하려는 자는 시, 군의 당국이나 동독의 통행증발급 및 신청사무소에 각각 신청한다.
  - ii ) 집회, 학술, 경제 및 상업 또는 문화적인 용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동독내의 초청기관이 해당 통행증발급 및 신청사무소에 신청한다.
  - iii ) 서베를린 상주자가 관광여행을 할 경우에는
    - 서베를린의 독일여행사(DER)를 통해 동독 여행사에 신청한다.
    - 당일로 돌아오는 관광여행으로서 여행사의 수속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서베를린의 방문 및 여행사무소에 신청한다. 신청은 우편으로, 혹은 본인이 직접할 수 있다. 허가수속은 지체되지 아니한다. 발급된 여행허가서는 신청자에게 직접 교부되거나 우편으로 송부된다.
  - iv ) 체재기간이 2일 이내의 여행인 경우, 출국허가증은 입국 시 국경통과지역에서 발급된다.
5. 여행이 3개월 이내에 끝나는 경우에는 수회에 걸쳐 실시할 여행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독의 여러 지역에 체재하려는 여행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6. 허가 신청에는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 2통이 필요하다. 신청은 여행예정시기 2개월전부터 할 수 있다. 신청 사무절차는 일반적으로 6일이 소요된다.
7. 2일 이상의 체재여행시, 입국과 출국때는 상이한 통과지역을 이용할 수 있다.
8. 입국시 맹인을 인도하는 개를 데리고 갈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9. 다음과 같은 절박한 경우에는 자가용차를 타고 입국할 수 있다.
  - 여행자가 신체장애로 인해 자동차를 이용해야 할 경우
  - 긴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와 대중교통수단으로 여행목적을 시일내에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3세이하의 어린이를 동반하는 경우
  - 목적지의 교통이 불편하거나 서베를린에서 100km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이외에도 동독과 서베를린시 당국간에 체결된 여행 및 방문교류의 완화 및 개선에 관한 합의(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가용승용차의 이용이 허가된다.  
오토바이, 소형 오토바이, 자전차를 사용하는 여행은 허가되지 아니 한다.
10. 환자수송은 종전과 같이 쌍방의 적십자사에 의해 실시된다.

11. 쌍방은 예상되는 방문자의 수를 산출할 만한 실적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통행증 발급수수료의 청산총액을 아직 결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쌍방은 단기여행(1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의한다.

### C. 의정서 부록

쌍방은 방문 및 여행사무소가 수행할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본 협정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서베를린시 당국은 5개의 방문 및 여행사무소를 설치한다.  
이 사무소의 관리권은 서베를린시 당국이 지정한 관리들이 행사한다.
2. i ) 서베를린시 당국은 본 협정 조인후 8주이내에 사무소의 예상 규모를 동독정부에 통보한다.  
ii ) 사무소를 개설하기 전에, 쌍방의 위임 대표단은 사무소를 시찰하며, 문제점은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iii ) 사무소의 장소 선정, 설비 및 그 변경사항에는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다.
3. 당국은 이 사무소의 현관에 『방문 및 여행사무소』 (『Buero fuer Besuchs-und Reisen-gelegenheiten』)라고 쓴 간판을 붙인다.

사무소의 우편표지도 『방문 및 여행사무소』로 하며, 그때 그

때 해당되는 우체국의 주소를 기입한다.

4. i ) 동독의 직원수는 각 사무소에 6인으로 한다. 직원의 수는 필요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중의 대표자는 서베를린시 당국이 지정한 해당 관리에게 적시에 이 사실을 통지한다.  
ii ) 동 직원 및 필수품의 수송에는 동독측의 민간용 자동차를 사용한다.
5. 이 사무소의 업무시간(공휴일은 제외)은 월, 화, 수, 금요일에는 9시부터 13시까지, 14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수요일에는 10시부터 13시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적어도 2개의 사무소가 3시간 집무한다.
6. 사무소에서의 허가신청은 신청자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베를린에서 할 수 있다.  
남편은 부인과 16세이하의 자녀의 여행허가를 대리 신청하여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그는 부인과 자녀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대리신청권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시하는 제3자도 본인을 대리해 여행허가를 신청하여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7. 사무소에 배치된 동독의 직원은 동독 당국이 위임한 업무를 취급한다. 그들은 업무시간에 방문 및 여행사무소의 직원임을 표시하는 제복을 일률적으로 착용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입국에 필요한 신청서 및 기타 서식을 제공하여 서베를린 시 당국이 지정한 관리로 하여금 그 서식을 신청자에게 배부하도록 한다.
  - 방문 및 여행교류와 관련된 안내사항을 방문자에게 통지한다.
  - 입국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한 신청서와 신분증의 기재사항을 대조한다.
  - 여행허가서를 발급한다.(날인과 서명포함)
  - 신청서와 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여행허가서와 기타 여행에 필요한 서류 및 여행지침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한다.
8. 서베를린시 당국이 임명한 사무소 관리의 직무
- 사무소 출입의 질서를 규제한다.
  - 방문자를 안내한다.
  - 신청서와 기타 서식용지를 배부할 수 있다.
  - 신청자의 서식기입을 도와줄 수 있다.
  - 필요한 안내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9.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쌍방의 직원은 서로 상대방의 업무를 간섭할 수 없다.
10. 서베를린시 당국은 사무소에서의 마찰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사무소와 사무소 주위의 안전과 질서유지, 서베를린시 당국은 이 사무소의 시설과 업무수행에 유해로운 모든 행위

를 금지시킨다.

- 사무소의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시설·물품 구비(예 : 난방장치, 전기시설, 청소)
  - 쌍방을 연결하는 전화가설
11. 쌍방은 각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 4. 동·서독간 통행에 관한 협정(1972. 5. 26)

### 전 문

양국은 유럽의 긴장완화를 위해 기여하고, 상호 독립된 국가로서 양국의 돈독한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의도 아래 국경을 넘어 양국의 통치영역내로 또는 통과하는 인적 통행 및 물적 통행문제를 규율하는데 합의하여 이 조약을 체결한다.

### 제1장 일 반 조 항

제1조 ①조약의 대상은 이 조약이 미치는 영역에서 허가 또는 등록된 운송수단으로 도로, 철도, 운하에서 이루어지는 양국 간의 교환통행 및 통과통행이다.(이하에서는 통행(Verkehr)이라 약칭한다.)

특정한 운송수단의 사용에 관한 국내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체약국은 상호주의(Gegenseitigkeit)와 불간섭주의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습에 맞게 각국의 통치영역내로 또는 통과하는 통행을 가능한한 넓은 범위에서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가능한 유효한 상태가 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제2조 통행은 이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 체약국의 법

에 의거하고, 그 범위에서 시행된다.

제3조 ①통행자는 타방 체약국에서 공공통행을 위해서 허가된 통행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체약당사국은 자신의 영역을 지나는 통과통행을 위해서 일정한 통행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통과통행이 가능한 유효상태가 되도록 출발지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통행은 미리 준비된 국경통과지점에서 이루어진다. 변경 사항에 관해서는 양국의 통행관장 장관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5조 각 체약국에서 허가되거나 등록된 운송수단에 관한 행정증서 및 운송수단의 운전자격에 관한 행정증서는 조약 제20조에서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상호 인정한다. 통행자는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관청이 교부한 국경출입에 관한 행정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①일정한 통행관련 세금과 수수료는 총액청산(Pauschalabgeltung)으로 한다.

②통행자가 휴대한 여행자용 및 소비물품에 대해서는 출입세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운송수단에 있는 일반휴대 예비연료 및 예비윤활유, 장비품, 보충품, 부속품에 대해서는 출입세 및 기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제7조 ①각 체약당사국은 그의 영역에서 발생한 재난과 해난 시 고장서어비스, 운반서어비스, 위생보호, 부두보조, 작업장

보조 등 필수적인 보조를 제공하도록 배려한다.

②해난과 재난시 필요한 조사 및 기록문서 작성은 사고발생 지법에 의한다. 손해청산을 위해 필요한 기록문서는 상호 송달한다.

제8조 도로상태, 대규모 자동차정류장의 우회로, 중요한 장거리도로, 수심, 수위상태, 수문작동시간, 하역봉쇄 및 통행과정에 관련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제9조 각 체약당사국은 최대한 간단하고 유효한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국경통행을 주효하게 하는 전략계획과 실행에 관한 정보를 타방 체약국에게 제공하고 필요시 의견을 교환한다.

## 제2장 철도통행(Eisenbahnverkehr)

제10조 ①철도통행시 정규운행과 임시운행의 기차시간표와 여행운행을 위한 배차의 순서는 통행량을 고려하여 기차시간표에 관한 국제회의나 체약국의 권한 있는 상위기관간에 합의한다.

②갑자기 통행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가로 열차를 배치할 것을 합의한다.

제11조 ①승객과 수하물의 운송에 관해서는 철도승객 및 수하물 통행에 관한 국제협정(CIV)과 그 부속협정을 적용한다.

②화물운송에 관해서는 철도화물통행에 관한 국제협정(CIM)

과 그 부속협정이 적용된다.

- 제12조 ①이 조약에서 국경선로구간(Grenzstrecke)이란 각 체약국의 국경철도역간 통과철도구간(부차적으로 소재 영업사무소를 포함한) 영역을 말한다. 국경선로구간에서 각 체약당사국의 영역은 각 체약국의 법규정이 적용된다. 철도영업규정도 마찬가지다. 예외는 합의할 수 있다.
- ②각 철도행정관청은 그의 국경선로구간에 있는 철도설비 및 시설을 유지, 감시, 보수한다. 이 조약에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한 이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 ③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상위기관은 통행이 주효하도록 설비계획 변경과 국경선로구간 및 국경철도역에 관한 기술을 상호 알려준다.
- ④각 철도행정관청은 통행이 이루어질 때 국경선로구간을 유지, 감시, 보수할 시기를 조정한다.
- ⑤각 철도행정관청은 타방국내에 있는 안전설비와 장거리통신설비를 유지, 감시, 보수한다.
- ⑥양 체약당사국의 철도영업기관간에 설치된 장거리통신송전은 철도업무상 통보시에만 사용한다. 이 송전은 기차간이나 공적 통신망과 연결하지 않는다.
- ⑦국경선로구간에서의 철도통행실시에 관한 개별문제는 별도로 합의한다.

- 제13조 ①체약당사국은 운전자와 운행호송인에 관한 각 체약

국이 발행한 증명을 상호 인정한다.

② 일방국에서 임명한 철도행정고용인은 당해국의 직무복장을 착용한다. 일방국의 철도고용인은 타방국의 철도행정직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철도고용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휴대사용 및 소비물품은 세금과 수수료가 면제된다. 국경철도역에서 철도고용인은 휴식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필요한 경우 철도고용인에게 위생보조를 제공한다.

제14조 ① 동독은 서독기차가 서독의 헤링엔/베라를 경유하여 출발하거나 게르스통엔과 단크마르샤우젠간 동독철도구간을 통과하는 화물통행시 그 지역의 칼리생산물과 관계되는 한 통행을 인정한다. 이 통행에 관한 상업적 또는 영업적 조건은 별도로 합의한다.

② 헤링엔/베라에서 동독으로 가거나 또는 제3국에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칼리 수송은 직접적으로 국경철도역인 게르스통엔으로 인도된다. 게르스통엔에서의 국경수하물 발송은 서독의 베라/동독의 게르스통엔간 국경통과 발송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제15조 ① 동독은 서독기차가 서독철도역 오버술을 통과하거나 경유하여 국경선로구간을 넘어 동독을 통과하는 철도운행을 승인한다. 이에는 선로구간, 지상건축물 및 부속시설에 필요한 지대(Gelandes)의 무료를 포함한다. 동독의 국경선로구간은 서독이 그의 비용으로 감시, 유지한다. 이로 인해 베라/게르

스퉁엔간의 국경통행은 침해되지 않는다.

② 동독은 서독기차가 서독철도 역 슈베데와 동독철도역 헬라간 국경선로구간을 넘어 동독의 영역을 통과하는 철도운행을 본 조 제1항에서 합의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승인한다.

제16조 서독은 동독기차가 바르타/베라-게르스퉁엔 복선국경선로구간을 넘어 서독영역을 통과하는 철도운행을 승인한다. 이 구간은 동독에서 그의 비용과 고용인으로 유지, 감시, 보수한다. 이에는 선로구간, 지상건축물 및 부속시설에 필요한 지대의무료도 포함된다.

### 제3장 내륙선박통행(*innenschiffsverkehr*)

제17조 ① 체약당사국은 그의 영역에서 신속하고 경제적인 선박운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운하항해를 위한 허가는 요구하지 않는다.

제18조 ① 타방국의 항구간의 연안항해는 타방국의 권한있는 관청의 특별한 인가를 요한다.

② 타방국에서 통과운행의 귀향으로서 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제19조 ① 선착장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이 조약 제17조 제1항에 의한다. 이 밖에 특별히 허가된 선착장은 내륙선박의 승무

원 상록을 허락한다.

② 선착장이 지정되어 있는 한, 재난, 운항중지, 질병,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사태시 관련 체약국의 권한있는 관청의 요구나 동의에 의해 항해중지 또는 다른 적합한 선착장에의 상록이 허가된다. 선장은 비상사태시 항해중지 및 그 결정적인 원인을 권한있는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③ 홍수, 저수위, 결빙, 해난에 의해 계속운행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화물의 옮겨싣기나 내륙선박의 집부리기를 보장한다. 예상되는 옮겨싣기나 집부리기는 권한있는 관청에 통보해야 하고, 당해 관청이 현장을 확인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 ①이 조약 제5조에 의한 증서의 상호승인은 내륙선박 항해의 경우 엘베강과 미텔랜드카널 운하에 관해서 교부하는 자격증명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동독의 선박증명서는 서독의 내륙항해망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운하에 대해서 승인된다.  
② 일방국의 통상의 항해범위를 초과한 개별항해증명이나 운하항해협회를 통한 타방국으로의 내륙운하항해는 당해 타방국의 권한있는 관청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② 일방국의 통상의 항해범위를 초과한 개별항해증명이나 운하항해협회를 통한 타방국으로의 내륙운하항해는 당해 타방국의 권한있는 관청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각 체약국의 수로사용에 관한 법에 규정된 기준을 초과한 개

별항해 증명이나 상기협회를 통한 항해는 통상의 항해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③ 수영기구나 물건은 수송할 수 있고, 신조선박은 인도된다. 운동용보트, 경주용보트 및 기타 개인적인 선박들은 갑판선적 물이나 예인선으로 운송된다.

④ 정규항로가 정하여진 경우, 이를 이탈하려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내륙선박이 보세입고화물무역(Transport von Gütern unter Zollverschluß)에 관한 국제관례상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보세입고로 인정된다. 보세입고시설의 통보로서 보세입고승인이 인정된다.

제22조 수문, 선박기증기, 선박선착장 등 운하사용에 관련한 세금 및 수수료는 그 법규정에 의한다.

제23조 체약국은 엘베강 472.6km부터 566.3km 부분에 대해서는 내륙선박통행을 완전히 보장한다.

#### 제4장 자동차통행(Kraftverkehr)

제24조 ① 이 조약에서 영업목적의 여객수송(Gewerbliche Personenbeförderung)이란 자동차 및 그 부속물로서 유료 또는 상업적으로 여객을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약에서 자동차 화물수송이란 자동차 및 그 부속물로

하는 영업적인 화물 및 원료통행을 말한다.

제25조 ①각 체약국은 임시여객 통행을 위한 영업목적의 수송과 자동차화물수송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그의 영역에 들어오거나 통과할 때는 허가절차에 관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일방국의 기업이 노선버스 통행에 의한 영업목적의 여객수송을 위해 타방국에 들어가거나 통과할 때에는 당해 타방국의 수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각 체약국은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영업목적의 여객수송 및 화물수송이 단순히 영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허가에 관한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26조 운행기관 전물 및 장비는 허가영역에서 적용되는 규정에 상응하는 한 상호 충분한 것으로 본다. 타방국에서 규정한 양과 무게를 초과한 적재물을 포함한 자동차 및 부속물의 운행은 당해 타방국에 들어가거나 통과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권한있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통행이 허가된 자동차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협상은 특별규정의 대상이다.

제28조 도로화물 수송에 관해서는 다음의 협정들이 적용된다.

- 국제상품운송에 관한 1959년 1월 29일 관세협정(Canets TIR)
- 위험한 화물의 국제도로운송에 관한 1957년 9월 30일 유럽협정(ADR)

## 제5장 해로통행(Seeverkehr)

제29조 ① 각 체약국은 화물의 운송 및 하역을 위해 항구 및 해로통행시설을 상호 사용하도록 한다. 양 체약국은 자기측 항구에 있는 타방국의 선박을 타국의 선박과 동일하게 취급 할 것을 보장한다.

특히, 수속절차 수수료 및 항만사용료 징수, 항구의 자유출입 및 이용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② 일방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타방국으로 들어가거나 통과하는 선박의 화물운송은 가능하다. 타방국의 항구와 적재장간의 연안항해는 동 국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① 일방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당해국의 법에 의한 국정증명서를 가지고 항해하는 때에는 그 체약국의 선박으로 본다.

② 합법적으로 발급된 선박측정서류를 보유한 선박에 대해서는 재측정이나 사후측정을 하지 않는다.

③ 항구수수료는 선박측정서류에 기재된 용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1조 일방 체약국의 선박이 타방국에서 폭풍을 만나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효력있는 승무원(Besatzung), 장비(Austrustung), 시설(Einrichtungen), 선박안전장치(Schiffssicherheitsmittel), 측정(Vermessung), 내항능력(Seetuech-

tigkeit)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그 국가아래 항해할 수 있다.

## 제6장 종 결 조 항

제32조 ①이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은 양 체약국의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한다.

②대표단은 동·서독의 통행에 관한 장관의 전권대리인을 통해서 관장된다.

③위원회는 일방 체약국의 요청에 의해서 열린다.

④개별적인 절차문제는 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⑤처리하기 위해 제출된 의견들이 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간 교섭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출하여 조정한다.

제33조 이 조약은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이 조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전에 이 조약의 계속을 통고할 수 있다.

이 조약은 각 정부가 조약시행을 위한 국내법적인 전제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통고하는 외교공한 일자에 발효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72년 5월 26일 베를린에서 독일어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

서독 대표

에곤 바

동독 대표

미카엘 콜

## 5. 동독 주민의 여행에 관한 규정(1972. 10. 17)

비사회주의 국가 및 서베를린을 여행하는 독일민주공화국 주민은 내각이 결의한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는다.

**제1조** ①독일민주공화국 주민들이 친척들의 초청을 받고 긴급한 가족문제 때문에 독일민주공화국의 여행증명서를 인정하는 비사회주의국가 또는 서베를린을 여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한다.

②본 규정 제1항에서 말하는 긴급한 가족문제란 출산, 결혼, 중병, 사망 등의 경우를 말한다. 이상의 사유는 관계 증명서에 공공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입증해야 한다.

③긴급한 가족문제로 여행이 허가되는 대상은 독일민주공화국에 거주하는 조부모, 부모, 자녀, 자매들이다.

**제2조** ①연금생활노인 및 신체장애자들은 상기 제1조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종전과 같이 비사회주의국가 또는 서베를린의 친척을 방문하는 여행이 허가된다.

②여행허가 기간은 연간 30일 한도내에서 일시 또는 수차에 나누어 허가된다. 유럽이외의 여행대상국일 경우에는 3개월까지 허가된다.

**제3조** ①직장을 가진 자가 비사회주의국가 또는 서베를린을 여행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제출할 경우에는 기관장의 동의

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긴급한 용무로 비사회주의국가 또는 서베를린을 여행할 경우에는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이 허가된다.

제4조 본 규정은 1972년 10월 17일부터 발효된다.

1972년 10월 17일, 베를린  
내무상 겸 독일인민경찰총장

덕 켈

## 6. 서독 시민의 동독여행에 관한 규정(1972. 10. 17)

독일민주공화국을 여행하는 독일연방공화국 시민들은 독일민주공화국 내각이 결의한 여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는다.

제1조 ①독일연방공화국 시민들은 독일민주공화국에 거주하는 그들의 친척과 친지의 초청을 받아 개인용무로 또는 독일민주공화국 관계기관의 초청을 받아 상업, 문호, 스포츠, 종교적 용무로 독일민주공화국을 여행할 수 있다.

②친척과 친지 방문을 위한 동 여행기간은 연간 30일 한도내에서 일시 또는 수회에 나누어서 허가된다.

③체류는 일반적으로 독일민주공화국 전지역에 걸쳐서 허가된다.

제2조 독일연방공화국 시민들은 독일연방공화국 여행사와 독일민주공화국 여행사간의 관계협정에 따라 관광객자격으로 독일민주공화국을 여행할 수 있다.

제3조 다음의 경우엔 개인승용차로 여행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또는 공공교통수단편으로는 목적지에 적시에 도착할 수 없거나 목적지까지의 교통사정이 불편한 경우
2. 3세 이하의 어린이를 동반할 경우
3. 여행자가 신체적 불편으로 개인승용차의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4. 상업, 문화, 스포츠, 종교적 자유로 필요할 경우

제4조 독일연방공화국 시민이 여행허가를 얻기 위한 자격증명서를 교부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신청한다.

1. 독일민주공화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초청기관은 관계 국가기관(통행증 및 여행신고사무소 또는 각 시청 및 군청)에 신청
2. 독일연방공화국의 시민이 관광여행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는 독일연방공화국 여행사를 경유하여 독일민주공화국 여행사에 신청

제5조 본 규정은 1972년 10월 17일부터 발효한다.

1972년 10월 17일, 베를린  
내무상 겸 독일인민경찰총장

디 켈

## 7. 지불수단의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 시행에 관한 규정(1980. 10. 9)

제1조 본 규정은 비사회주의국가와 서베를린에 영구적 거주지를 갖고 있으며 방문상 체류를 위해 동독으로 여행 입국하는 사람에게 통용된다.

제2조 ① 1항에 따른 사람은 동독의 수도를 포함하여 동독에서 체류시 1일당 동독화폐 25마르크를 동독에서 통용되는 환전비의 등가로 해서 외국통화 지불수단의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을 실시해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의무교환액은 교환할 수 있는 통화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3조 ①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액에 대한 재환전은 허용하지 않는다.

② 사용하지 않는 동독마르크는 동독 국립은행 모든 지점에 기탁내지 계좌에 불입될 수 있다. 이 금액은 동독으로 다시 여행입국시 언제나 동독마르크의 완전한 금액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4조 여행입국 당시 아직 만 6세가 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어린이에게는 2항에 따른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액이 면제되어 있다. 6세에서 만 15세까지의 사람은 동독의 7.50 마르크를

동독에서 통용되는 환전비의 등가로 해서 외국통화 지불수단의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 1항에 따른 사람은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 지불수단의 구속력 있는 의무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통화의 지불수단을 동독에서 통용되는 환전비로 해서 동독마르크로 바꿀 수 있다.

제6조 본 규정은 통과교통에서 동독영토를 계속해서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조 ①본 규정은 1980년 10월 30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동시에 지불수단의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액 시행에 관한 1974년 11월 5일자 규정(법령집 I 제54호 497면)과 지불수단의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액 시행에 관한 1974년 12월 10일자 규정 Nr. 2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980년 10월 9일, 베를린

재무상

슈미트박사

## 8. 절실한 가족문제로 인한 여행자 왕래에 관한 동독의 규정(1982. 2. 15)

1982년 2월 15일부터 동독시민의 여행자 왕래 법률조항에 관한 규정

비사회주의국가와 서베를린으로 가는 동독시민들의 여행자 왕래에 대한 동독 시의회 결정의 실행에 다음과 같은 것이 규정되어 있다.

제1조 ①동독 시민들은 친척의 초대 등의 꼭 필요한 가족문제로 인한 동독에서 비사회주의국가와 서베를린으로 가는 출국이 허가되었다.

②제1항에서 꼭 필요한 가족문제란 출산, 성년식, 결신성사, 첫영성체, 결혼, 25, 50, 60, 65 주년 결혼 기념일, 생일(60, 65, 70, 75세 등 생일), 생명이 위독한 병환과 사망 등이다.

③제2항 기본의 테두리 안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출산의 경우>

a) 거의 확실하게 예측되는 출산날짜 전의 한달 또는 출산 후 3개월까지

b) 유아세례

〈결혼식의 경우〉

- a) 호적사무소에 의한 결혼식
- b) 교회의 결혼

〈25, 50, 60, 65, 70주년 결혼기념일의 경우〉

- a) 호적사무소에 의한 결혼식의 그때 그때의 결혼기념일
- b) 교회결혼식의 그때 그때의 결혼기념일

〈사망의 경우〉

- a) 사망 이후 3개월까지
- b) 장례로서 3개월 이내

④앞의 사실들은 증거, 관청의 기록 내지는 관할 의사의 증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⑤꼭 필요한 가족문제에는 비사회주의국가와 살고 있는 조부모, 부모, 자녀들, 형제자매(이복형제도 포함)도 포함된다.

제2조 ①법적으로 연금을 받는 연령이나 또는 생활보호대상자인 동독시민들은 동독에서 비사회주의국가와 서베를린으로 그의 친척들의 방문을 위한 출국이 제1조의 경우에 허가된다.  
②출국은 수차에 걸쳐 매년 30일까지 – 유럽 이외의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는 3개월까지 – 허가된다.

제3조 ①동독에서 비사회주의국가와 서베를린으로 가기 위한 출국신청의 경우 직업이 있는 자는 그의 직장의 문서상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동독에서 비사회주의국가와 서베를린으로 가기 위한 출국  
은 꼭 필요한 경우 승용차로써 허가된다.

제4조 이 규정은 1982년 2월 15일에 효력을 갖는다.

1982년 2월 15일, 베를린  
내무상 겸 독일인민경찰총장  
딕켈(Dickel)

## 9. 베를린 시가전철에 관한 규정(1983. 12. 30)

의장에 의해 위임된 평의회 힌케푸스와 최고분과의장이며 국유 철도국장인 마이스터 박사는 서베를린 내에서 시가전철교통의 향후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합의하였다.

**제1조** 독일국유철도 – 국유철도관리국 베를린 – 는 1984년 1월 9일 3시를 기해 서베를린에서 시가전철의 운행을 개시한다. 시가전철에 관계된 시설과 운행방법 그리고 모든 시가전철 선로의 보존과 교통안전 또는 이용을 포함한 시가전철의 운행실시는 평의회에 의해 결정된 장소인 서베를린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시가전철의 운행구역은 이 협정의 구성부분인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다.

독일국유철도의 열차승무원이 승차한 시가전철은 레르트지역과 프리드리히(Fredrich) 거리 사이의 선로구역을 운행한다. 그 상황의 문제들은 이 협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제2조** ① 평의회에 의해 결정된 장소인 서베를린은 독일 국유 철도의 운행실시의 변경 때 시가전철에 종사하고 서베를린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시가전철 노동력을 책임지게 된다.  
② 여타의 시가전철의 운행을 위해 필요한 시가전철의 운행구간의 시설들은 다른 시가전철의 필요에 상응하게 유지되거나

작동된다.

이 시설들은 제1조에서 명시된 계획들이다.

변경과 보충은 위임자에 의해 제5조에 맞게 협정된다.

③이 시설의 유지와 수리를 포함한 상호간의 작업은 의정서 IV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제3조 평의회에 의해 결정된 장소 서베를린은 1984년 1,100,000 마르크의 금액으로 레르트지역과 프리드리히 거리 간의 시가 전철 교통의 독일국유철도에서 지불하는 비용에 참여한다. 이 금액은 전년 비교하여 서베를린에서 공적으로 공개된 “모든 개인의 가계의 생활기준에 맞는 물가지수”의 변화에 상응하여 매년 지불될 수 있다.

제4조 제2조 제3항의 작업에 대한 독일국유철도의 지불은 서 베를린내의 독일국유철도의 마르크 구좌를 통해 행해진다.

제3조에 맞는 독일국유철도의 지불은 베를린협정의 틀안에서 행해진다.

지불은 매년 4월 15일까지 하며, 첫지불은 1984년 4월 15일 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서독과 동독은 위임자들을 정하게 된다. 위임자들의 임무는 이 협정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일치시키고 상호 간에 분명한 의견의 상이성과 어려움을 해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가전철과 독일국유철도 간의 공동작업을 확실히 보증하며 동시에 제1조에 맞는 계획들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위임자들은 한 측의 청원에 의해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그들은 기술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자를 지정할 수 있다. 협력자들은 서베를린 내의 서독과 동독의 근무처의 정규 협정에 따른다. 정보와 자료의 교환은 협정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제6조 이 협정은 1984년 1월 9일 3시를 기해 효력을 발한다.

#### 의정서 I

- 독일국유철도에 의해 프리드리히거리역에서 판매된 시가전철 표는 서베를린의 전체 시가전철망에서 유효하다.  
소기의 수입은 제3조에 의한 사용료의 계산시 참작된다.  
서베를린의 시가전철기관사의 승차증은 프리드리히거리역에 서의 첫운행 때 인정된다.

#### 의정서 II

- 상대방의 운행권내에 있는 시설은 그것을 치워버릴 때까지 무료로 허용되며 추가시설을 보충받는다. 교통보험 의무유지비(수선과 가격유지)와 그 시설의 수선이나 제거는 사용자에게 일임한다.
- 쌍방은 1항에서 빠뜨린 시설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비용 부담은 의정서 7항에 따른다.

3. 쌍방은 상대측에게 — 합의에 따라 — 교통시설 건축계획의 실현을 위해 또 교차점이나 기존의 교차로를 위해 플랫폼의 사용을 무료로 그리고 보상금 없이 가능하게 해주며 교차로의 연결로에도 적용한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시한부인 조처에도 적용된다.
4. 상대측의 운행권에 영향을 끼치는 건축규정은 서면으로 통고되며 설명과 설계도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그 규정은 합의에 부쳐진다.
5. 쌍방은 그들이 야기한 건축상의 규정을 그것이 무효화되지 않는 한 상대측의 운행권에도 관철시킨다. 설치될 조립품목은 운전자의 철도기술 상의 확신이 그때그때마다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이 요구가 모순없이 들어맞는다는 고려하에 이행된다면 제품선택은 자유롭다. 쌍방은 상대측에 접한 영역간의 경계에서 건축규정을 세울 때 만일 이것이 — 합의에 따라 — 기술적인 진보를 통해 확증되고 기술적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현상태를 능가하는 요구를 제시할 수 있다.
6. 독일국유철도에서 건립되거나 수선된 시설은 작업내에 끝났다는 통지에 따라 인수된다. 인수인계시 철도의 최종기술검사에 따라 본질적이고 확충된 결함이 있을 때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보증기한은 서면으로 전달된다. 보증요청의 이유가 되는 결

함통고는 기한만료 한달전에 서면으로 상대측에 제출해야만 한다.

7. 건축상의 조처에 든 비용은 그 제기자가 지불한다. 오른 유지비에 대한 상호간의 배상은 있을 수 없다. 사용이 가능하지 않거나 가동될 수 없는 시설이 철거되어야 할 경우 비용 지불은 철거비만 포함한다.
8. 상대측의 시설이 바뀔 경우 합의에 따라 해체된 시설물에서 적당한 재료를 골라내어 더 사용할 수 있다. 사용불가능한 재료는 규정의 비용지불자의 권한에 달려있다. 다른 기술적인 가공이라는 조처에 동조함으로써 그리고 건축보험과 운전보험에 대한 조처와 방지책에서 발생하는 비용배상을 유효화시키는 것을 쌍방은 포기한다.  
운전장애는 쌍방에 의해 될 수 있는 한 피해져야 한다. 불가피한 운전장애에 드는 비용은 야기자가 지불한다.
9. 쌍방은 그들 각자의 소속인 중 한사람이 고의적이거나 부주의로 인해 일으킨 손해에 보증을 선다. 그것은 다른 측이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함이 분명한 손해의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을 일방이 게을리했을 경우 또는 일방이 손해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을 게을리했을 경우와 그 과실이 한정된 때도 역시 적용된다.
10. 1항에서 9항에 이른 조항들은 단지 협정대상에 대해서만 관계가 있다.

11. 종착역의 플랫폼을 위한 유지와 교통보험을 관할하는 해당 위원회를 둔다.

### 의정서 III

1. 프리드리히거리 역을 포함한 0.9+61km와 4.0+24km간의 북남철도터널 및 2.7km간의 북쪽열차지역은 서베를린의 시가전철기관사가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블란크 거리역을 포함하여 2.9+3km에서 3.2+4.6km까지 그리고 1.6+39.9km에서 3.1+95km까지 사이에 있는 북쪽열차의 시가전철플랫폼도 마찬가지다.
2. 서베를린의 시가전철기관사의 요청에 따라 수입자들간의 협상에 의해 여전히 운전이 가능하도록 보존된 철도를 운행할 수 있다.

보존된 선로를 운행이 가능하도록 고치는데 드는 비용은 서베를린의 시가전철기관회사가 지불한다.

그외에 사용 또는 운행이 가능한 부분의 보존은 전체적으로 무효화되거나 부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다. 그 무효화는 6월 30일까지 공표되어야만 한다.

3. 1984년 1월 1일의 상황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했던 모든 지역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일년에 4,700,000 DM이라는 금액이, 운전가능한 보존을 위해선 연간 2,000,000 DM이, 보존을 위해선 연간 1,100,000 DM가 지급되어야 한다. 위에 언

금했던 지역을 부분적으로 이용하거나 운행가능하게 보존하거나 보존할 경우 독일국유철도에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은 지불비용에 따라 계산된다. 1에 따른 금액은 연간 1,800,000 DM에 달한다. 계산방법으로 협정의 3과 4가 유효하다.

#### 의정서 IV

##### 1. 구역에 있는 독일국유철도의 전철장치를 시가전철차량과 함께 사용

시가전철 차량을 위해 독일국유철도의 전철이 수행한 작업의 성과는 이 의정서에 따른 배당금과 산출시간 원칙에 의해 첨부된 시설에서 공제된다. 똑같은 배당금과 똑같은 산출시간 원칙에 따라 위에 언급한 전철의 유지와 수선조치에 드는 비용도 배상된다. 수선조치는 그 전에 협의에 붙여질 수 있다. 시가전철차량에 사용하는 전철장치의 정비시 고장 난 물품을 철거할 경우 그 계산은 시설이 요구하는 작업시간에 따라 특별계산을 원칙으로 하여 사용된 값을 가산하여 산출된다.

##### 2. 선로의 공동사용

선로공동사용에 대한 계산은 – 일정한 시간내의 주파거리를 0.4DM로 할 때 – 주파거리로 산출된다.

## 의정서 V

1. 구역간의 경계는 지점들에 의해 결정되는 차선으로 정한다. 지점은 공간적으로 표시된다. 이것은 대략 바닥에서 10cm정도 뚫고 나와 밝은 청색으로 표시된 기둥을 이용한다.
2. 장소표시의 확정은 합의된 계획안을 토대로 한 공동의 행위에서 일치하여 생긴다. 그 장소로 옮길 때 생길 수 있는 이상은 장소표시와 관련된 공동행위에서 해결된다. 건축터와 집터에 대한 위원회는 그에 따라 기둥관을 조달하고 배치하고 번호를 붙이고 치수를 재고 측량기술적으로 독일국유철도의 위치설정지점에서 그리고 서베를린의 위치설정지점에서 셈하여 일반계획에 집어넣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 독일국유철도는 계산원칙, 구역설계도 등과 같은 그들의 측량기술적인 원칙을 임의로 한다.  
독일국유철도는 측량기술상의 기입과 협동명세서를 지닌 일반계획을 가공발전에 상응하여 수입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3. 부호표시의 변화 및 부가적인 중간지점 배정은 일방이 이것을 원하는 한 행하여진다. 2도 마찬가지이다.
4. 재수선을 포함해 부호표시의 유지는 건축지와 집터에 대한 위원회에 일임한다.
5. 쌍방은 1~4의 비용보상을 포기한다. 여기에 개인적 현물급여 및 건축보험과 운전보험을 위한 방지책이 속해 있다.  
교통박물관과 건축박물관에 관한 의정서 심리의 목표는 이

하와 같다.

- ① 교통박물관과 건축박물관은 1984년 12월 1일부터 서베를린의 한 관직에서 관리한다.
- ② 교통박물관과 건축박물관의 정선된 진열품은 프레스텐에 있는 동독의 교통박물관에 장기 대출품으로 양도된다.
- ③ 위원회는 3,000,000마르크에 달하는 총액을 갖고 박물관의 유지를 위해 독일국유철도의 비용에 협력한다. 그 총액은 서베를린에 있는 독일국유철도의 자유구좌에 불입되어 있다.
- ④ 규약문제는 이런 규칙에 의해 변동없이 남아 있다.

## 10. 동독과 동베를린 여행시의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규정(1985. 5. 6)

외환관리법규에 대한 일반 재가와 1985년 5월 6일자, 1950년 7월 15일자 베를린의 미국, 영국, 프랑스지역의 지휘관들의 500 번 법규(외환관리와 화물운송의 검열)에 대한 일반허가

### I

미국 국제화물회사, 프랑스지사, 미국은행 NT & SA., 프랑스지사, 비자카드서비스, 다이너스클럽 독일 GmbH는 독일민주공화국과 동베를린을 여행할 때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다룬, 독일민주공화국 및 동베를린체류협정을 체결한 외환법을 재가 받았다. 상술한 법규에 근거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은행은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위에 언급된 회사의 신용카드 소유자에게 독일민주공화국과 동베를린의 여행시 다음의 사항 내에서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1. 독일민주공화국 동베를린 내에서의 여행비용과 체류비용의 지불을 위하여, 개인적 필요에 따른 이용품목과 소비품목의 구입을 위하여
2. 총액 2,000마르크까지의 상품구입을 위하여(이것 대신에 현금이 사용되지 않는 한에서 독일민주공화국과 동베를린에 이 금액은 제공된다.)

3. 상업상의 향응과 접대를 위하여

II

이런 일반 허가는 공포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1985년 5월 6일 독일연방은행

박사 켈레교수

프라쓰만박사



## **제 2 편 경제교류분야**



## 1. 독일마르크 사용지역과 독일발권은행의 독일마르크 사용지역간의 통상에 관한 협정(베를린협정, 1951. 9. 20)

독일마르크 사용지역과 독일발권은행의 독일마르크 사용지역  
간의 통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협정이 체결되었다.

### A. 물품거래

제 1 조 ① 서독과 동독의 주무관청은 그들의 영역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별첨 1, 2, 3, 4에 표시된 상품협정가격이 합의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가격한도까지의 구입과 판매에  
대하여 지급인가 또는 매입인가와 송하장을 부여함으로써 구  
입과 판매를 승인한다.

양지역의 주무관청은 합의된 협정가격이 완전히 준수되도록  
노력한다. 주무관청은 인가된 가공, 수선 및 임대계약을 근거  
로 하여 상품을 운송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별첨 1, 2, 3, 4에 따른 상품목록은 쌍방의 합의로 이를 변  
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③ 구입과 판매의 일정부분을 베를린의 경제를 위하여 할당하  
는 것에 합의한다.

제 2 조 ① 판매는 거래당사자가 주무관청의 규정에 따라 합의한 계약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상호거래와 교환거래는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는 쌍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거래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가격합의가 그들 지역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그 구입이나 판매의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

### B. 용역거래

제 3 조 용역거래는 허용된다. 자세한 것은 1951년 2월 3일에 체결된 용역거래의 계산에 관한 협정에 따른다. (별첨 6)

### C. 대금의 지급

제 4 조 이 협정의 실시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서독과 동독간의 대금의 지급은 오로지 독일연방은행과 독일발권은행 사이에서 결제된다.

제 5 조 ① 서독에서 동독으로 지급하는 모든 급부의 계산은 제4 조에 따라 독일발권은행에 지급된다. 상당하는 금액이 독일발권은행에 의하여 독일연방은행의 이름으로 개설된 구좌의 청산계정에 기입된다.

② 동독에서 서독으로 지급하는 모든 급부의 계산은 제4조에

따라 독일연방은행에 지급된다. 상당하는 금액이 독일연방은행에 의하여 독일발권은행의 이름으로 개설된 구좌의 청산계정에 기입된다.

③별첨 5(독일연방은행에 독일발권은행의 특별구좌의 개설에 관한 1951. 9.20의 베를린협정에 관한 협의)에 따른 지급에 대하여는 별첨의 특수한 합의가 적용된다.

제 6 조 ①독일발권은행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동 은행에 개설된 독일연방은행의 구좌에 기입하였음을 통지하는 즉시, 독일연방은행이 독일발권은행의 청산계정에 부채를 부담함으로써 제4조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진다.

②독일연방은행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동 은행에 개설된 독일발권은행의 구좌에 기입하였음을 통지하는 즉시, 독일발권은행의 청산계정에 부채를 부담함으로써 제4조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진다.

제 7 조 ①제5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6조에서 언급된 구좌에는 각각 부계정 “1/2”과 부계정 “3”을 둔다.

②부계정 “1/2”을 통하여 이 협정에 따른 별첨 1내지 4의 급부를 위한 제4조에 따른 모든 지급이 이루어진다.

③부계정 “3”을 통하여 이 협정에 따른 별첨 6의 급부를 위한 제4조에 따른 모든 지급이 이루어진다.

제 8 조 ①독일발권은행에 개설된 독일연방은행의 부계정 “1/2”과 부계정 “3”에 계상된 부채총액이 2억 결재단위(VE)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독일발권은행은 이를 부계정에 더이상 기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②독일연방은행에 개설된 독일발권은행의 부계정 “1/2”과 부계정 “3”에 계상된 부채총액이 2억 결재단위(VE)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독일연방은행은 이를 부계정에 더이상 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제 9 조 ①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독일연방은행은 그의 은행에 개설된 당해 부계정에 상당한 금액을 특별구좌에 지불한다. 독일발권은행은 독일연방은행의 당해 부계정의 사정을 인식하고 그 부계정의 부담으로 지급을 실시한다.

②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사례가 발생된 경우에는, 독일발권은행은 독일연방은행의 당해 부계정에 상당한 금액을 특별구좌의 대변에 기입한다. 독일연방은행은 그 부계정을 인식하고 그 부계정의 부담으로 지급을 실시한다.

제10조 구좌의 관리와 지급의 청산에 관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이 협정의 별첨 7에 따라 독일연방은행과 독일발권은행 사이의 합의에 따른다.

#### D. 기타의 규정

제11조 에너지(가스, 수도, 전기)의 구입과 판매는 허용된다.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에너지의 공급과 그에 따른 급부에 대

한 청산에 관한 합의 (별첨 8)가 적용된다.

제12조 서독과 동독의 주무관청은 양 지역간의 협정의 규정에 위반하는 거래를 방지한다.

제13조 이 협정의 집행을 위임받은 관청은 정기적으로 이 규정의 준수사항을 보고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협약을 체결한다.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절차에 관한 합의 (별첨 9)가 적용된다.

#### E. 부 칙

제14조 이 협정은 1951년 7월 3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 (삭 제)

제16조 이 협정은 매년 말 3개월 전에 폐기를 통고할 수 있다.

제17조 ①인가되었으나, 이 협정의 유효기간 중에 실행되지 않은 거래는 이 협정에 따라 청산된다.

②전 제1항의 거래를 청산한 뒤에 부계정에 남아 있는 금액을 확정한다. 이 금액은 그 후 3개월 이내에 각 계정에 상응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른 급부를 통하여 청산된다.

제18조 이 협정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독일연방은행에 독일발권은행의 특별구좌의 개설에 관한 1951년 9월 20일의 베를린협정에 관한 합의 (별첨 5)
2. 용역거래의 청산을 위한 1951년 2월 3일의 합의 (별첨 6)
3. 독일연방은행과 독일은행간의 합의 (별첨 7)

4. 에너지공급과 그에 따른 금부의 청산에 관한 합의 (별첨 8)
  5. 절차문제에 관한 합의 (별첨 9)
  6. 1960년 8월 16일의 인도합의 (별첨 10)
  7. 1960년 9월 16일의 의정서 (별첨 11)
- \* 별첨자료는 지면관계로 미수록.

## 2. 양독간 교역규정\*(1951. 7. 18)

### 제 1 조 허가서의 발급

① 1949. 9. 18 미·영군정법(1949년도 연방고시 2호) No. 53의 제1조 제2항과 1949. 9. 18 「프랑스」 관리위원회 규정 No. 235가 규정한 허가는,

1. 동독으로부터 연방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입허가서의 발급에 의하여야 하며,

2. 연방지역으로 부터 동독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송하장의 발급에 의하여야 하고 허가서는 일반서식으로 교부된다.

② 이 규정에서 말하는 물품은 모든 동산을 의미하며 통화, 유가증권, 전기는 여기서 제외된다.

③ 제1항의 허가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조건부, 기한부로 내려지며 의무사항이 함께 부과된다.

④ 대금을 받아야 할 타인의 물품을 신청서가 자신의 명의로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을 경우, 그 타인이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만 신청서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타인은 거소, 주소, 주택, 또는 주택이 없을 경우 상주

---

\*주) 1949.9.18 미·영군정법 No. 53에 부속된 시행규정 1의 제2조제1항(1949년도 연방고시 2호)과 외환관리 및 물품거래제한에 관한 1949.9.18 「프랑스」 관리위원회의 규정 No. 140을 근거로 하여 서독 정부가 제정.

지를 동독내에 두고 있어야 한다.

2. 그 타인은 거소, 주소, 주택, 또는 주택이 없을 경우 상주지를 연방지역내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 타인도 똑같은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⑤수탁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연방지역으로의 물품반입과 연방지역으로부터의 물품반출은 위탁자 또는 대리권 위임자가 받은 허가를 근거로 할 때만 가능하다. 제4항의 규정은 본항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⑥광선에 노출된 「필름」이나 광선에 노출된 전판을 연방지역으로 반입하거나 연방지역으로부터 반출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또는 이 규정을 근거로 허용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좋다는 예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 2 조 신 청

①반입허가서나 송하장의 발급신청서는 신청자의 거소, 주소, 주택, 또는 주택이 없는 경우 신청자의 상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청 제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방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신청서는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업무대리인과 교역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역보조자에 의한 신청서 제출은 예외로 한다.

③신청자는 연방지역으로 반입하거나 반입을 위탁하는, 또는 연방지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반출을 위탁하는, 물품에 대한 대금청산을 자신이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타인이 할 것인가

의 여부를 신청시에 밝혀야 한다.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연방지역으로 반입하거나 연방지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청산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신청시에 밝혀야 한다.

### 제 3 조 신청서식과 허가서식

연방경제성은,

1. 신청서식
2. 신청자가 명시해야 하는 사항
3. 신청서에 첨부되는 증거서류
4. 반입허가서와 송하장의 서식 및 서류의 매수와 사용방법에 관한 내규를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 제 4 조 허가의 조건

①연방경제상은, 연방지역 통합경제의 이익확보를 위해 위의 사항에 관한 기한부 내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되는 시기와 반출 허가서와 송하장 발급의 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특히 다음 결정권을 갖는다.

1. 어떤 물품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연방지역으로의 물품반입 또는 연방지역으로부터의 물품반출을 허가하는 반입 허가서 또는 송하장을 발급할 것인가.
2. 연방지역으로의 물품반입 또는 연방지역으로 부터의 물품반출의 근거가 되는 계약들을, 가격형식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어떤 규정속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3. 연방지역으로의 물품반입 또는 연방지역으로 부터의 물품반출을 위해서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해야 하는가.
4.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과 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이 연방지역내의 제3자를 통해서 동독으로 반출되거나 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이 동독내의 제3자를 통해서 연방지역으로 반입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

②이 규정에서 말하는 교역물품이란 그 물품종류의 성격으로 보아 공업상의 이용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그 양이 너무 적거나 그 가치가 너무 적어 대금을 받고 팔거나 공업에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제 5 조 허가서의 유효기간, 보존 및 회수

연방경제상은 다음의 내규를 제정할 권한을 지닌다.

1. 반입허가서와 송하장의 유효기간
2. 반입허가서와 송하장의 보존
3. 사용되지 않거나, 규정된 유효기간을 경과한 반입허가서와 송하장의 회수

#### 제 6 조 허가범위 초과

반입허가에 따라 연방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반입허가서에 명기된 물품에 한하며,

1. 허가량의 한계를 넘지 않고,

2. 허가액수를 초과하지 않으며,
3. 허가량과 허가액수의 비례관계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지켜야 하고,
4. 반출자와 반입자는 반입허가서에 명기된 본인이어야 하고 청산도 그들 당사자가 해야 한다.

#### 제 7 조 관 할 권

- ① 제1조 제1항에 의거한 허가서는 연방경제상이 발급한다.
- ② 연방경제상은,
  1. 이 규정의 집행과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 내규들의 집행을 하급관청에 위임할 수 있으며,
  2. 반입허가서와 송하장의 발급사무를 한 지방의 전역을 관할하는 경제담당 최고 지방관청이나 경제담당 지방관청 또는 식량담당 최고 지방관청이나 식량담당 지방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 제 8 조 물품 통과지점

연방경제상은 포괄적 또는 개별적으로 연방지역으로 또는 연방지역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반출될 수 있는 물품 통과지점을 지정할 수 있다.

#### 제 9 조 허가서의 제시

- ① 반입허가서 또는 송하장은 접경 검문소, 접경지역 세관 또는 연방지역내에 있는 세관에서 물품을 통과시키기 전에 제시해야 한다.
- ② 연방경제상이 정한 반입허가서와 송하장은 늦어도 물품통

과시에 제출하거나 또는 전항의 장소에 맡겨둘 수도 있다.

#### 제10조 지 불

①지불이행과 대금영수는 연방지역의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근거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지불과 영수금액은

1. 반입허가서와 송하장에 의거하여 허가된 한도액수를 넘지 못하며,
2. 일반허가의 경우에는 해당관청에 신고된 한도액수를 넘지 못한다.

②연방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의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반입허가서 1부 또는 일반허가규정에서 정한 신고서 1부(일반허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출해야 한다.

③연방지역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의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송하장 1부 또는 일반허가규정에서 정한 신고서 1부(일반허가에 해당하는 경우)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이밖에 연방지역으로의 물품반입 또는 연방지역으로부터의 물품반출에 수반되는 의무사항의 요구 또는 그 이행은, 연방경제상이 독일연방은행의 보고를 듣고 정한 절차와 조건에 따라야 한다.

⑤연방경제상은 제2항과 제3항의 반입허가서 또는 송하장 서식들 중 어느것을 제출해야 하는가를 정할 수 있다.

### 제11조 통 계

연방경제상은 다음 사항의 통계업무에 관한 내규를 정할 권한을 가진다.

1. 발급된 반입허가서와 송하장
2. 연방지역으로 반입되거나 연방지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물품
3. 2호에 따른 협정가격
4. 의무사항의 요구 또는 이행에 따른 지불과 조치 내용
5. 반입허가서 또는 송하장의 발급 요구시 신청서류

### 제12조 우편 또는 철도를 이용한 발송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우편 또는 철도를 통해 연방지역으로 반입하거나 연방지역으로부터 반출할 때는 그 속에 교역물품이 들어있지 않는 이상 반입허가서나 송하장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편 지
2. 소 포
3. 7kg이하의 일반소화물과 특급열차 소화물
4. 500마르크이하의 가격표시가 있는 7kg이하의 우편물

### 제13조 기타예외

연방경제상은 제12조에서 규정된 예외사항 이외에도 이 규정을 근거로 한 내규에 의하여 일반적 또는 개별적 예외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 별 칙

본 규정과 그 부속규약을 위반할 때는 다음의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1. 1949. 9. 18 미·영군정법 No. 53의 제8조(1949년도 연방고시 2호).
2. 외환관리 및 물품거래 제한에 관한 1949. 9. 18 「프랑스」 관리위원회 규정 No. 235
3. 외환관리에 관한 1950. 8. 2 연합국관리위원회법 제5조

## 제15조 최종조항

다음의 법규들은 본 규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과 소련점령지역 및 베를린의 동부지구 사이의 재산거래 감시에 관한 규정(1951. 7. 9 양독간 감시규정)
2. 연방지역으로의 물품반입과 연방지역으로 부터의 물품반출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그밖의 규약들, 특히,
  - 가. 연방지역으로의 특정 물품반입에 관하여 특별허가를 규정한 1950. 8. 31. 연방경제성공시(1950년도 연방고시 173호)
  - 나. 연방지역으로 부터 특정 물품반출에 관한 특별승인을 규정한 연방경제성의 1950. 5.2일, 24일, 6.15일, 8.9일, 10.23일, 12.14일, 1951.1.19일, 3.1일, 9일, 14일, 4.13일, 6.6일, 29일자 공시(연방고시 1950년도 87, 102, 116, 173, 217, 223, 244, 1951년도 18, 49, 52, 54, 71, 106, 127호).

## 제16조 베를린시에서의 적용

① 제15조를 제외한 본 규정의 내용과 본 규정을 근거로하여  
제정된 내규 및 지침은, 베를린 상원이 외환관리 및 물품거래  
제한에 관한 1950. 7.15. 사령부규정 시행세칙 No. 1에 의거  
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 날부터 베를린시에 대해서도 적용되  
고 있다. 따라서 본 규정에서 말하는 「연방지역」이란 용어는 베  
를린시(미영불점령지역)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② 본 규정과 본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내규를 위반할 경우 베를린시에 있어서의 처벌근거법규는 다음과 같다.

1. 1950. 7.15 외환관리 및 물품거래제한에 관한 사령부규정  
제8조
  2. 1950.12.19. 외환관리 및 물품거래제한규정의 보완을 위한  
사령부규정 No. 503의 제5조

### 제17조 유효기간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이 규정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우편 또는 철도에 의한 동독 지역과의 물품거래에 관한 1950.12. 12일자 규정(1950년도 연방고시 251호)은 폐기된다.

1951. 7. 18 「본」에서  
서독경제상을 대리하여  
서독식량 농림상

### 3. 양독간 교역을 위한 일반허가규정

#### 가. 일반허가규정 1호(1968. 7. 22)

1951. 7.18 양독간 교역규정 중 제1조의 제1항 제2호, 제4항, 제5항, 제7조의 제1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일반허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 제 1 조 허가의 범위

①동독지역에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일반적으로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는 신문과 잡지들은 제2항의 조건에 따라 독자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백립시를 포함한 지역으로 반입될 수 있다. 이 허가의 범위 안에는 근거가 되는 계약의 체결과 변경, 1951. 9. 20 백립협정의 계정에 의거하여 양독간 교역규정 제10조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는 것, 그리고 위탁계약을 근거로 한 반입일 경우 반입한 물품을 백립시를 포함한 지역내의 구매자에게 대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②제1항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행위 등이 포함된다.

1. 반출자는 거소, 주소, 주택 또는 주택이 없을 경우 상주지를 동독지역에 두고 있어야 한다.
2. 반입자는 거소, 주소, 주택 또는 주택이 없을 경우 상주지를 베를린을 포함한 연방지역내에 두고 있어야 한다.

3. 반입의 근거가 되는 계약은 문서상으로 체결된 것이라야 하며, 그 계약속에는 쌍방의 전 합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계약쌍방은 신문과 잡지의 반출에 대한 대금지불을 합의해야 한다.
5. 계약 속에는 백림약정의 세부계정 2에 의거하여 대금을 지불한다는 약관이 있어야 한다.
6. 계약내용에 따라 그 지불이 반출자의 임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
7. 물품반입은 물품반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지닐 수 없다.

## 제 2 조 의무사항

①허가시 다음의 의무사항을 부과한다.

1. 반입자는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과 반입하여 판매할 신문 및 잡지의 수량 그리고 이미 지불한 대금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제3조의 제1항, 제2항에 의거한 신고서식 3과 제3조의 제3항에 의거한 신고서의 사본을 1972. 12. 31까지 보관해야 한다.

②위의 의무사항을 정해진 기간내에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1. 1949.9.18 미국 및 영국 군정법 제8조(1949. 9. 27 고시 2호)

2. 외환관리와 물품거래제한에 관한 1949. 9. 18 「프랑스」관리위원회 규정 No. 235
3. 외환관리에 관한 1950. 8. 2 연합국관리위원회법 No. 33의 제5조

백령시에 있어서의 처벌근거 법규는 다음과 같다.

1. 1952. 2. 20 연합군사령부의 개정규정에 의거하여 개정된 1950. 7. 15 미·영·불 점령지구 사령부규정 No. 500의 제8조 - 외환관리 및 물품거래제한
2. 1950. 12. 19 연합군사령부의 외환관리 및 물품거래 제한 규정의 보완규정 No. 503의 제5조

### 제3조 신 고

- ①반입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부록 1의 서류를 사용하여 연방공업국에 제1조에서 규정한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의 신고서류에는 완전한 근거서류들의 사본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서 또는 청약서 그리고 승락서)
- ②계약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신문이나 잡지를 반입하게 되거나 계약상대방이 반출하는 신문, 잡지에 대한 대금지불 또는 그 대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반입자는 변경된 계약을 체결한지 14일 이내에 부록 2의 서식을 사용하여 변경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때의 신고에는 변경된 계약서의 사본 1부를 첨부해야 한다.
- ③반입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에 반입한 신문 및 잡지의 수

량, 그 중 매각된 수량, 세부계정 2에 의거하여 대금지불을 끝낸 항목들을 연방공업국에 계속 신고해야 한다.(최초의 신고는 1968. 9. 10일까지) 이 때의 신고는 신고된 모든 계약별로 따로따로 해야 한다. 전월에 반입한 또는 판매한 신문 및 잡지가 전혀 없거나 지불실적이 전혀 없을 경우에도 역시 신고를 해야 한다. 세부계정에 의거한 지불을 포함하여 계약내용의 전부가 이행된 후에는 「종결신고」로써 마지막 신고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제 4 조 기타 제한사항

기타의 제한사항으로는 백립시 미·영·불 점령지구사령부의 외환관리법과 외환관리 및 물품거래제한에 관한 규정 No. 500 (1950. 7. 15)에 의거한 제한이 있다. 그밖의 모든 금지 및 제한은 이 규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한다.

#### 제 5 조 유효기간

이 일반허가규정은 1972. 12. 31까지의 반입에 적용한다. 양독간 교역규정 제1조의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이미 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68. 7. 22 「본」

연방경제상

## 나. 일반허가규정 2호(1969. 1. 21)

1951. 7. 18 양독간 교역규정 제1조의 제1항의 제2호와 제4항, 제7조의 제1항에 의하여 다음의 일반허가규정을 제정한다.

### 제 1 조 허가의 범위

①제2항의 기준에 따라 부록 1과 2에 명시된 물품을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베를린시를 포함한 연방지역으로부터 동독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가한다. 이 허가의 범위에는 구매계약의 체결 및 변경 그리고 1951. 9. 20 「베를린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독간 교역규정 제10조에 따라 대금을 영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②제1항은 다음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 판매자는 거소, 주소, 주택 또는 주택이 없을 경우 상주지를 베를린시를 포함한 지역내에 두고 있어야 한다.
- 구매자는 거소, 주소, 주택 또는 주택이 없을 경우 상주지를 동독지역내에 두고 있어야 한다.
- 반출의 근거가 되는 구매계약은 구매자에 의하여 구매자 자신의 명의로 문서상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청산을 하는 것으로 계약 쌍방간에 합의한 것이어야 한다.
- 계약쌍방은 대금지불 기한을 물품인도 후 1년 이상 연기한다는 합의를 해서는 안된다.

5. 판매자의 의무이행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계약 속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6. 구매자는 동독지역내의 관청에서 발급된 유효한 지불승인서를 제시받아야 하며, 그 지불승인서에는 부록 1의 물품에 대한 대금은 세부계정 「1」 또는 계정 「S」에 의거하여 지불하고 부록 2의 물품에 대해서는 베를린협정의 세부계정 「2」 또는 계정 「S」에 의거하여 지불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어야 한다.
7.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반출되는 물품은 베를린시를 포함한 지역내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며 이 지역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이어야 한다.
8. 이 때의 반출은 물품반입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지닐수 없다.
9. 판매되는 물품에는 부록 5와 같은 일반허가반출을 위한 송하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 제 2 조 의무사항

①이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의 의무사항이 부과된다.

판매자는

1. 제3조에 의거하여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2. 소지하고 있는 일반허가반출을 위한 송하장과 신고서를 물품이 인도된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분할발송을 할 때는 최종회의 분할발송시를 기점으로 계산한다.

②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1. 베를린시를 제외한 연방지역

1949. 9. 18 미국 및 영국군정법 No. 53의 제8조(1949. 9. 27 연방고시 2호)

외환관리 및 물품거래제한에 관한 1949. 9. 18 「프랑스」관리위원회규정 No. 235.

외환관리에 관한 1950. 8. 2 연합국관리위원회법 No. 33의 제5조

### 2. 베를린시 :

1952. 2. 20 개정된 1950. 7. 15 미·영·불 군점령지역사령부 규정 No. 500의 제8조-외환관리 및 물품거래제한 사령부규정 No. 500을 보완한 1950. 12. 19 사령부규정 No. 503의 제5조-외환관리 및 물품거래제한

## 제 3 조 신 고

①판매자는 동독지역내의 해당관청에서 발급한 지불승인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16일 이내에 부록 3의 양식을 사용하여 연방공업국에 제1조에서 규정한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서에는 완전한 계약 근거서류(계약서 또는 청구서와 승락서, 동독지역의 해당관청이 발급한 지불승인서의 사본 1부)를 첨부해야 한다.

②만약 계약의 변경으로 인해 판매물품의 수량과 종류, 최초

의 신고번호 또는 대금액수가 변동됨으로써 당초의 신고내용이 추후에 사실과 다르게 되는 경우에 판매자는 동독지역의 해당관청에서 변경 발급한 지불승인서를 입수한지 16일 이내에 부록 4의 양식을 사용하여 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서에는 변경된 지불승인서와 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해야 한다.

③지불승인의 번호와 세부계정이 추후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제2항을 적용한다.

④신고서와 함께 다음 사항을 명시한 서류를 제출한다.

1. 계약이 교역대리인 또는 교역중개인의 개입으로 체결되었는가의 여부와 계약에 개입한 교역대리인 또는 교역중개인의 성명과 주소.
2. 이미 제출한 계약 근거서류들이 완벽하다는 것.
3. 부수적인 합의사항이 없다는 것

### 제 3 조 기타 제한사항

기타의 제한사항으로는 베를린시 미·영·불 점령지구사령부의 외환관리법과 규정 No. 500-외환관리 및 물품거래제한(1950. 7. 15)이 있다. 그밖의 금지와 제한은 이 규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한다.

### 제 4 조 유효기간

①이 일반허가규정은 1969. 2. 20부터 1970. 12. 31까지의 판매에 적용한다. 양독간 교역규정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하여 이미 송하장이 발급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1969. 2. 20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지불승인서의 입수시기와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다.

1969. 1. 21 「본」

연방경제상

## 다. 일반허가규정 3호(1969. 12. 19)

1951. 7. 18 양독간 교역규정 제1조의 제1항 제2호와 제4항, 제7조의 제1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일반허가규정을 제정한다.

### 제 1 조 허가의 범위

①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부록1과 부록2에 지정된 물품을 구매 계약에 의거하여 동독지역으로부터 백림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으로 반입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가한다. 이 허가의 범위 안에는 구매계약의 체결과 변경, 그리고 1951. 9. 20 백림약정의 계정에 관한 양독간 교역규정 제10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② 제1항의 적용은 다음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가능하다.

- 판매자는 거소, 주소, 주택 또는 주택이 없을 경우 상주지를 동독지역내에 두고 있어야 한다.
- 구매자는 거소, 주소, 주택 또는 주택이 없을 경우 상주지를 백림시를 포함한 연방지역내에 두고 있어야 한다.
- 반입의 근거가 되는 구매계약은 구매자가 자신의 명의로 자신이 청산한다는 내용이 문서로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쌍방의 합의사항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는 청산년도가 명기되어야 하며, 부록 1의 물품대금은 백림약정에 의한 세부계정 「1」에 의하여 청산하고, 부록 2의 물품대금은 백림약정에 의한 세부계정 「2」에 의거

하여 청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5.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행하는 지불은 구매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물품반입은 물품반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지닐수 없다.
7. 계약이행을 위해 반입되는 물품은 동독지역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것이라야 한다. 물품을 통과시키는 세관은 원산지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2 조 의무사항

①허가에는 다음의 의무사항이 부과된다.

1. 제3조에 따라 계약을 신고할 것
2. 늦어도 물품이 세관의 검사를 받을 때까지는 일반허가물품 반입명세서와 특별한 경우에는 명세의 변경명세서를 물품이 통과하는 세관에 제출할 것
3. 백림시로 물품을 반입할 때는 제2호와는 달리 일반허가물품 반입명세서, 특별한 경우에는 명세의 보증명세서를 물품 반입 이전에 백림시의 「한자」(Hansa)중앙세관에 제출할 것
4. 물품을 백림시로 반입할 때는 이 밖에도 평일로 계산하여 물품반입 3일째까지 백림시의 「한자」중앙세관에다 적당한 운송 근거서류의 제시를 통해 물품반입을 신고할 것
5. 소지하고 있는 신고서 양식3을 물품을 반입한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관할 것. 분할발송의 경우에는 최종 회의 분할발송시를 기점으로 계산한다.

② 위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백령시를 제외한 지역 :

1949. 9. 18 미국 및 영국 군정법 No. 53의 제8조(1949. 9. 27 연방고시 2호)

외환관리 및 물품거래제한에 관한 1949. 9. 18 「프랑스」 관리 위원회규정 No. 235

외환관리에 관한 1950. 8. 2 연합국관리위원회법 No. 33의 제5조

2. 백령시 :

1952. 2. 20로 개정된 1950. 7.15 미·영·불 점령지구사령부 규정 No. 500—외환관리 및 물품거래제한—의 제8조

1950. 12. 19 연합군사령부규정의 외환관리 및 물품거래제한의 보완규정 No 503의 제5조.

제 3 조 신 고

① 구매자는 계약 근거서류를 획득한지 16일 이내에 부록3의 양식을 사용하여 연방공업국에 제1조에서 규정한 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완전한 계약근거서류(계약서 또는 청약서와 승락서) 사본 1부를 첨부해야 한다.

② 계약속에 포함된 물품가격에 관한 합의사항이 변경되거나 계약의 변경으로 인해 구매물품의 수량과 종류, 신고번호 또는 지불액수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구매자는 변경합의에

관한 근거서류를 입수한지 16일 이내에 부록4의 양식을 사용하여 이 변경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서에서 변경합의서의 사본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무상의 보상물품이 제공될 경우 구매자는 늦어도 물품이 백림시를 포함한 연방지역으로 반입되는 날까지 부록4의 양식을 사용하여 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신고서와 함께 다음 사항을 명기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계약이 교역대리인 또는 교역중개인의 개입하에 체결되었는지의 여부와 교역대리인 또는 교역중개인의 주소와 성명.
2. 제출된 계약 근거서류가 완벽하다는 것
3. 부수적인 합의사항이 없다는 것

#### 제 4 조 기타 제한사항

기타 제한사항으로는 미·영·불 점령지구 사령부의 외환관리법과 규정 No.500-외환관리 및 물품거래제한(1950. 7. 15)이 있다. 그밖의 금지 및 제한은 이 규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한다.

#### 제 5 조 유효기간

①이 일반허가규정은 1970. 2. 1부터 1972. 12. 31까지의 반입에 적용한다. 양독간 교역규정 제1조의 제1항의 제1호에 따라 이미 반입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계약이 1970. 2. 1 이전에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제3조의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1970. 3. 1까지  
그 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1969. 12. 19 「본」

연방경제상

#### 4.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sup>주)</sup>

##### 가.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I (1970.12.16)

###### 제 1 조 물품반입허가서와 송하장의 면제

① 양독간 교역규정 제12조에 규정한 우편 및 철도를 통한 발송 이외에도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베를린시를 포함한 독일연방공화국 마르크 사용지역 (이하 서독이라 함)으로 반입하거나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으로 부터 반출할 경우 반입허가서나 송하장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수입 또는 수출서류의 제출을 요건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 가. 물품수입 결정에 따라 외국으로 부터 독일민주공화국 마르크 사용지역 (이하 동독이라 함)을 경유하여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으로 수입하는 경우.
  - 나. 수출규정에 따라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으로부터 동독을 경유 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2.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을 경유하는 물품으로서,
  - 가. 외국으로부터 동독으로 수입되는 경우
  - 나. 동독으로부터 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그러나 서독은행과 동독은행간의 청산을 통하여 대금이 결

---

주) 부록과 양식은 지면관계로 신지 않음

제되는 물품은 예외로 한다.

3. 교역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일정한 기간후에 본질적인 변화없이 되돌아오는 운송수단(붉은 표식이 붙은 차량은 제외하며, 그 운송수단에는 부속품과 작업도구 및 연료가 포함된다. 이 종류에 속하는 것은 통상의 부착물이며, 수량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우 필요에 상응하는 양으로 한다.)
4. 사료를 필요로 하는 운송수단과 이에 부수되는 식량 및 기호품(그 수량과 종류는 통상의 필요에 상응하는 정도로 한다.)
5. 살아 있는 가축에게 줄 사료(그 수량과 종류는 운송기간 동안 필요한 정도로 한다.)
6. 물품과 같이 또는 그 안에 운반되는 포장수단(교역관례상의 포장, 또는 보호장치와 장비등)
7. 양독간 교역범위 내의 포장수단(교역관례상의 포장, 또는 보호장치와 장비등)으로서,
  - 가. 물품을 포장한 뒤 반송할 목적으로 보내는 빈 용기일 경우
  - 나. 또는 물품을 꺼낸 뒤에 반송하는 용기일 경우
8. 스포츠나 문화행사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후에 반송되는 물건(살아 있는 동물포함)
9. 진열, 선전, 출품의 목적으로 전시회와 전람회에 제공되는 물건

10. 물품의 성질판단 또는 검사용으로 보내는 무상의 견본과 표본

10-1. 조립, 설비, 정비, 수선등의 작업수행에 응당 수반되는 물품(이 물품의 가격은 5,000마르크를 넘지 못한다.)

11. 한 지역의 자연인이 다른 지역의 자연인에게 주는 선물과 기념품(가격은 5,000마르크를 넘지 못한다.)

12. 이사물자, 유산, 혼수

13. 시체가 든 관, 유골이 든 골병, 묘의 전립, 개수, 보존, 장식에 소요되는 물품, 반송되는 빈 관과 골병, 시체 또는 유골을 넣어 반송할 빈 관과 골병.

14. 대학, 아카데미 기타 학술 연구기관들 간의 교환 또는 대여조건으로 우편 또는 철도편으로 송부되는 학술서적, 학술상의 정기간행물 또는 기타 학술적인 인쇄물

15. 「라이프치히」(동독)에 있는 독일도서관(Deutsche Bücherei)과 「프랑크푸르트」(서독)에 있는 독일도서관에 송부되는 초판과 최신판의 무료서적

16. 가.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내에 상주지, 거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 동독지역내에 상주지, 거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간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거래되는 우표와 우표가 인쇄된 엽서

나.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내에 상주지, 거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 및 동

독지역 이외의 지역에 상주지, 거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거래되는 우표와 우표가 인쇄된 서적  
②제1항의 11~12에 열거된 물품을 동독으로 출반할 때는  
부록 1의 물품 목록에 열거한 품목에 한하여 송하장발급면  
허를 받을 수 있다.

## 제 2 조 물품반입허가서의 면제

①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으로  
반입할 때는 반입허가절차를 면제한다.

1. 천재지변시의 긴급구호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2. 공업 및 농업전시회 또는 견본전시회에 출품할 물품과  
출품후 반송되는 물품
3. 반송을 조건으로 공업 또는 농업전시회에 출품 예정인  
물품
4. 교역 또는 공업상의 용도가 아닌 것으로서 여행자가 타  
지역으로 시행할 때 휴대하는 물품

이때의 물품은 1인당 1회 여행에 100마르크를 넘지 못한다.

②개인의 생활필수품을 베를린시로 가지고 들어갈 경우, 그  
물품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운반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그 휴대자와 휴대자의 주택 또는 상주지가 베를린시에  
소속하고 있을 때는, 반입허가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1. 위에 해당하는 자가 동독「마르크」로 가지고 들어가는 봉  
급, 적금 또는 생계에 필수적인 보조금

2. 동독에서의 영업으로 수익한 것이나 또는 동독에서의 자유직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전액 또는 대부분의 금액

### 제3조 송하장의 면제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으로부터 반출할 때는 송하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공업 또는 농업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과 출품후 반송되는 물품

2. 교역 또는 산업상 용도에 이용될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여행자가 휴대하는 부록 1에 열거된 물품. 1인당 1회 여행에 5,000마르크를 넘지 못한다.

### 제4조 면제요건 구비증명

면제요건 구비의 사실은 늦어도 세관통과시에 세관에 증명해야 한다. 만약 물품이 화물편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발송인은 화물운송장에 면제요건 구비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 제5조 반입허가서의 사후발급

다음에 열거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허가서를 사후에 발급할 수 있다.

①양독간교역규정 제12조에 명시된 종류의 물품발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매계약서의 제시만으로 반입하는 교역 물품

②송하장과 함께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으로부터 반출되었으나 동독지역의 인수자가 이를 인수하지 않은 물품

또는 물품이 불합격품이기 때문이거나 계약상 유보된 권한을 근거로 반송되는 물품(반품)

③「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에서 무료로 개조 또는 수리된 후에 동독지역으로 반송될 예정인 물품

④동독지역에서 거행된 체육행사에서 상품으로 수여되는 물품

⑤반입자 자신이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1조의 제11호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적인 필수품의 종류와 수량에는 적절한 한계를 둔다.

⑥제1조의 제11호에 규정된 선물과 기념품으로서 5,000마르크상당을 초과하는 것.

## 제 6 조 송하장의 사후발급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으로는 필요하지 아니하나 동독지역에서는 필요한 송하장을 사후에 발급할 수 있다.

## 제 7 조 관 할 권

①양독간 교역규정을 근거로하여 제정된 내규에 따라 물품 반입허가서와 송하장을 발급하는 권한을 부록 2에 지정된 지방장관의 소관사항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위임은 다시 환원될 수 있다.

②서독공업국과 농림국은 다음 사항을 그들의 소관사무로 위임받는다.

1. 물품반입허가서의 발급에 대한 협조
2. 송하장의 발급에 대한 협조

#### 제 8 조 가격심사

만약 동독지역으로부터의 물품반입이 서독지역(베를린시 포함)의 물품생산부문 또는 그 일부에 현저한 해를 미칠 경우 또는 식량분야의 시장에 현저한 해를 미칠 경우에는 물품반입허가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 제 9 조 통과지점

서독으로 반입되거나 서독으로부터 반출되는 물품은 부록 3에 지정된 통과지점을 통하여서만 운반될 수 있다.

#### 제 10조 유효기간

- ①이 세칙은 1971. 3. 1부터 유효하며 1975. 12. 31까지 효력이 있다.
- ②이 세칙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1970. 2. 13 양독간교역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을 위한 규정(1970. 2. 24 연방고시 37호)에 의거하여 수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1958. 8. 22 양독간교역규정 시행세칙 I은 효력을 상실한다.

1970. 12. 16 「본」에서

연방경제상

## 나.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Ⅱ. (1970. 12.16)

### 제 1 조 물품반입허가서의 양식과 그 적용

- ①동독지역으로부터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으로 운송될 물품의 반입허가서는 부록의 양식과 같이 발급된다.
- ②양식은 부록의 서식과 서독경제상이 제정하여 서독정부고시로 공포한 제반 필요사항과 일치해야 하며 인쇄회사의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이 항에서 명시한 제반규정을 준수치 않은 서식은 통용될 수 없다.
- ③반입허가에 관한 제반서류는 부록의 서식에 명시한 방법으로 기재되고 통용된다.

### 제 2 조 물품반입허가서

- ①반입허가는 1970. 12. 16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Ⅰ 제7조의 제1항에 의거하여 관할 관청에 제1조의 제1항에 규정한 대로의 양식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다.
- ②물품반입을 위하여 제6조의 제1항에 의한 지불절차를 밟으려면 신청서에 완전한 계약 근거서류(계약당사자들이 서명한 계약서나 계약제의서 그리고 계약동의서나 위탁증명서)가 첨부되고 계약의 목적에 따라서는 가격표나 견적서까지 첨부하고 주문서류도 첨부되어야 한다. 이 서류들은 원본과 사본1부를 제출해야 한다. 원본 대신에 인증을 거친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다.
- ③물품반입에 대하여 제6조의 제1항에 따른 지불절차를 밟

지 않을 경우 신청서에다 물품반입의 동기에 관계되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규정한 공고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2항과 제3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신청에 있어서 신청이 접수된 시각이 중요성을 가질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에 규정한 근거서류들을 갖춘 신청서가 접수된 시각을 기준으로 삼는다. 공고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거서류가 완전히 제출되지 않을 때라도 그때의 시각을 유효한 신청접수 시각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⑥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한다.

1. 계약이 교역대리인 또는 교역중개자의 개입으로 체결되었는지의 여부와 계약에 참여한 교역대리인 또는 교역중개자의 주소 성명

2. 제출된 근거서류가 완벽하다는 것

3. 부수적인 합의사항이 없다는 것

제1호에 규정한 기재는 제3조에 의거한 공고를 기초로 하는 신청인 경우에 한해서만 필요하다.

### 제 3 조 공고와 반입의 조건

① 서독정부 고시를 통해 다음 사항이 공표된다.

가. 대금의 지불 (제6조 제1항의 조건으로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엇이며 어떤 조건하에 반입이 허가되는가.)

나. 시한이 끝난 공고품목은 무엇이며 어느 시점부터 반

입 허가가 내려지지 않는가.

다. 「실링」한계 도달로 인하여 이미 사실상의 효력을 잃은 공고품목은 어느것인가.

②공고의 유효시한이 끝났을 경우, 당초의 신청액수보다 적은 액수의 신청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에 의거하여 공고가 난 물품을 사들이기 위한 구매계약서 및 판매계약서에는 반드시 동독의 당해관청이 기입한 「청산년도 19××년」이라는 표시와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④반입허가서는 그것이 외국물품의 반입을 허가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동독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의 반입만을 인정한다. 지방관청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⑤제6조의 제1항에 따른 지불절차를 밟은 것으로, 동독으로부터 외국산물을 사들일 때의 반입허가는 그것이 공고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⑥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의 계약당사자가 동독지역의 계약당사자를 상대로 맺은 물품반입계약을 실천하기 위해 추가품목이나 기타 부수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인수하려면 1970. 12. 16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Ⅲ 또는 그때 그때에 유효한 동 세칙의 개정내용이 규정한 바와 같은 송하장을 제시해야 한다.

⑦서독공업국과 농림국은 직무상의 재량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사항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제 4 조 반입허가의 효력

- ①반입허가서는 기한부이며, 허가관청의 관인과 그 관청에서 서명권을 가진 관리의 서명, 그리고 허가일자의 기재가 모두 갖추어져 있을 때에 한해서만 효력을 갖는다.
- ②유효기간은 허가관청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유효기간 연장은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 적당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다.
- ③반입허가가 내려질 때 그 물품은 일정한 용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경우 반입자는 물품을 처분할 때 물품의 취득자에게 용도가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야 한다. 반입자와 취득자는 규정된 용도의 범위내에서만 그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 5 조 계약당사자간의 호혜적 거래

- ①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반입허가를 내릴 수 없다.
  1. 계약에 의한 물품반입이 물품반출에 대한 대가일 때
  2. 한 계약에 의한 지불이 다른 계약에 의한 지불의무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때
- ②전항의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둔다.
  1. 동물의 교환에 관한 계약(무상)
  2. 제3조에 의거한 공고 속에 대금지불조건으로서 물품 제공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및 교환방법(무상)에 의한 인쇄물의 제공과 인수에 관한 계약

### 제 6 조 지 블

①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으로의 물품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불절차는 서독연방은행과 동독국립은행간의 청산으로 처리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즉 현재의 계약이나 쌍방이 이미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계약쌍방의 요구금액은 지불시의 차액계산으로 처리된다. 이 예외의 승인은 서독경제성에서 담당한다.

②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으로의 서적 및 정기간행물반입과 관계되는 지불에 있어서는, 그것이 제3조에 의거한 공고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제5조의 제1항 제1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제 7 조 최종조항

개조, 가공, 수리를 위하여 또는 개조, 가공, 수리된 이후에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으로 운송되는 물품의 반입에 대해서는 1970. 12. 16일자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IV의 규정들을 적용한다.

### 제 8 조 발 효

- ① 이 세칙은 1971. 3. 1부터 유효하며 1975. 12. 31까지 효력이 있다.
- ② 이 세칙의 효력발생 이전에도 부칙의 양식과 같은 서식은 사용할 수 있다.

1970. 12. 16 「본」

서독경제상

## 다.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Ⅲ (1970. 12. 16)

### 제 1 조 송하장의 양식과 적용

- ①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으로부터 동독지역으로 반출되는 물품의 송하장은 부록의 양식과 같은 서식으로 발급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물품반출을 분할하여 발송하려면 분할발송 때마다 부록의 양식(분할발송을 위한 송하장)과 같은 서식을 사용한다.
- ③ 서식은 부록의 양식과 동독경제상이 서독정부 고시로 공포한 요구사항과 일치해야 하며, 인쇄회사의 명칭이 기재된 것이라야 한다. 이 항의 규정에 어긋하는 서식은 통용될 수 없다.
- ④ 송하장 서식의 기재와 통용은 부록의 양식에 명시된 지침을 따른다.

### 제 2 조 신 청

- ① 송하장의 신청은 1970. 12. 16의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I의 제7조의 제1항 또는 해당시기에 통용되는 동규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관청에 부록의 양식과 같은 서식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다.
- ② 물품반출을 위하여 제6조의 제1항에 의거한 지불절차를 밟으려면 신청서에 완전한 계약근거서류(계약당사자들이 서명한 계약서 또는 계약제의서 그리고 계약동의서나 위탁증명서가 첨부된 주문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 서류들은 원본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대신에 인증을

받은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밖에 신청서에는 동독의 당해관청이 발급한 물품의 대금지불을 청산계정으로 해도 좋다는 인정서(지불승인서)를 첨부한다.

③ 물품반출을 위하여 제6조의 제1항의 규정의 지불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에 반출의 동기를 밝히는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송하장신청에 있어서 제3조의 공고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제2항과 제3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신청에 있어서 신청서류들의 접수시각이 중요성을 지니게 될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근거서류들을 갖춘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의 시각을 기준으로 삼는다. 공고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거서류들이 완전히 제출되지 않은 때라도 그때의 시각을 유효한 신청 접수시각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⑥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명기한다.

1. 계약이 교역대리인 또는 교역중개자의 개입으로 체결되었는지의 여부와, 계약에 참여한 교역대리인 또는 교역중개자의 주소와 성명

2. 제출된 근거서류들이 완벽하다는 것

3. 부수적인 합의사항이 없다는 것

제1호에 규정한 기재사항은 제3조에 근거한 공고를 근거로 한 신청인 경우에 한해서만 필요하다.

### 제3조 공고와 반출조건

① 서독정부고시를 통해 다음의 사항들이 공표된다.

1. 제6조의 제1항의 반출할 수 있는 물품으로 공고된 품목은 무엇인가.

2. 시효가 끝난 공고품목은 무엇이며 어느 시점부터 송하장이 발급되지 않는가.

3. 「실링」한계 도달로 이미 사실상의 효력을 잃은 공고품목은 무엇인가.

② 공고의 유효시한이 끝났을 경우, 당초의 신청액보다 적은 액수의 신청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동 세칙 제6조의 제1항에 근거하여 반출할 수 있다고 공고된 물품의 구매계약서 또는 판매계약서 그리고 지불승인서에는 반드시 동독 당해관청이 기입한 「청산년도 19××년」이라는 표시와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④ 송하장은 그것이 외국산 물품의 반출을 허가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에서 생산 또는 제작되었으며 자유로이 거래되고 있는 물품의 반출만을 인정한다. 허가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6조의 제1항에 따른 지불절차를 밟는 것으로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으로부터 동독지역으로 외국산물을 반출할 때의 송하장은 공고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서면 발급될 수 있다.

⑥ 동독지역의 계약자가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의 계

약 상대자로부터 물품을 반입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할 목적으로 추가품목이나 기타 부수품목에 해당하는 외국산물품을 인도할 경우, 그 첨가물품의 송하장은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에서 자유로이 거래되는 물품의 인도만을 인정한다.

⑦서독공업국과 서독농림국은 그들의 직무상의 재량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결정과는 다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제 4 조 송하장의 효력

①제1조의 제1항에 의거한 송하장은 기한부이며,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을 때만 유효하다.

1. 양식에 허가당국의 관인이 있어야 하며 이 당국에서 서명권을 가진 관리의 서명과 인가일자의 기재가 있어야 한다.

2. 양식에는 서독 공업국 또는 농림국의 관인이 있어야 하며 이 관청의 서명권을 가진 관리의 서명과 표식번호, 그리고 허가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유효기간은 허가관청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의 적당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다.

#### 제 5 조 계약쌍방의 호혜적 거래

①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송하장을 발급할 수 없다.

1. 계약에 의한 물품반출이 물품반입의 대가일 때
2. 한 계약에 의한 지불이 다른 계약상의 지불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다음의 예외를 둔다.

1. 동물의 교환에 관한 계약(무상)
2. 제3조에 의거한 공고에 대금지불조건으로서 물품제공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및 교환방법(무상)에 의한 인쇄물의 제공과 인수에 관한 계약

## 제 6 조 지 불

①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으로부터의 물품반출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지불업무는 서독연방은행과 동독국립은행간의 청산으로 처리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즉 현재의 계약이나 쌍방이 이미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계약쌍방의 요구금액은 지불시의 차액계산으로 처리된다. 이 예외의 승인은 서독경제성이 담당한다.

② 해당지방관청의 승인을 얻어 진열의 목적으로 동독지역으로 발송하는 물품의 판매수익은 그 수익금이 진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제1항과는 별도로 다루어진다.

## 제 7 조 예 외

제4조의 제1항 제2호는 다음에 열거한 품목을 동독지역으로 인도 또는 발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동독지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 중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것
2. 광선에 노출된 「필름」
3.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I의 부록에 제시된 물품 가운데 「라이프치히」 견본시장이나 기타 공업 및 농업전시회에 출품될 예정인 물품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난후 서독지역과 베를린시로 반송된다는 조건이 붙은 물품
4.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I의 부록에 제시된 종류의 물품으로서 동독지역에 인도하는 물품 가운데 담보제공이나 배상요구를 충족시키는 성격을 띤 것.
5.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I의 부록에 제시된 물품으로서 이미 허가받은 반출과 통과교역의 추가물품인 경우

#### 제 8 조 최종조항

개조, 가공, 수리를 위하여 또는 개조, 가공, 수리된 이후에 동독지역으로 운송되는 물품의 반출에 대해서는 해당시기에 통용할 수 있는 개정분의 1970. 12. 16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IV의 규정들을 적용한다.

#### 제 9 조 발 효

- ①이 세칙은 1971. 3. 1부터 유효하며 1975. 12. 31까지 효력이 있다.
- ②이 세칙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부록의 양식과 같은 서식은 사용할 수 있다.

1970. 12. 16 「본」

서독경제상

## 라.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Ⅳ (1970. 12. 16)

### I. 일반 규정

#### 제 1 조 개념정의

이 규정에서 임금가공거래라 함은 베를린시를 포함하는 서독지역에서의 계약과 동독지역에서의 계약을 포함하며 다음의 물품에 대한 개조계약 및 가공계약을 의미한다.

1. 가.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내에 있는 수탁자에게 대가(가공임금)의 지불을 조건으로 가공 또는 개조작업을 시키기 위해 인도하는 물품
- 나.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내에 있는 수탁자가 동독지역으로부터 대가(가공임금)의 지불을 조건으로 하여 가공 또는 개조작업을 하기 위해 반입하는 물품
2. 개조와 가공의 공정이 끝난 물품은 당초의 출하지역으로 반송되어야 한다.

#### 제 2 조 공고

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은 서독정부 고시를 통해 공고되며, 그 공고에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임금가공거래는 허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3 조 지불

- ① 임금가공거래와 관계되는 지불은 서독연방은행과 동독국립은행간의 청산으로 해결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즉 현재의 계약이나 계약 쌍방이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쌍방의 요구 액은 지불시의 차액계산으로 처리한다.

이 예외의 인정은 서독경제성에서 담당한다.

②공고의 내용에 따라서 개조 또는 가공될 물품을 한정량 이상으로 인도하거나 또는 임금가공의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양도함으로써 가공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할 수 있다.

## II. 위탁임금가공

### 제 4 조 동독으로의 물품반출

①동독지역에서 가공될 물품의 반출을 위해서는 부칙의 양식에 따른 송하장이 필요하다.

②허가업무를 관장하는 당국은, 해당물품이 개조 또는 가공된 후에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으로 반송될 수 있다는 내용의 동독지역에서 발급된 허가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이 송하장으로 반출할 수 있는 물품은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에서 자유로이 거래되고 있는 물품에 한정한다.

④송하장에 외국산물품의 반출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송하장은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물품의 반출만을 허가한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Ⅲ의 제1조, 제2조의 제1항, 제4조를 적절히 적용한다.

#### 제 5 조 동독으로부터의 물품반입

- ① 동독지역에서 가공된 물품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제1조의 제1호 가목과 1970. 12. 16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Ⅱ의 부칙에 있는 양식과 같은 반입허가서가 필요하다.
- ②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Ⅱ의 제1조 내지 제4조를 적용한다.

#### 제 6 조 신 청

제4조와 제5조에 의거한 허가서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 III. 수탁임금가공

#### 제 7 조 동독으로 부터의 물품반입

- ①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에서 가공될 물품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Ⅱ의 부록에 있는 양식과 같은 반입허가서가 필요하다.
- ②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Ⅱ의 제1조와 제2조의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 제 8 조 동독으로의 물품반출

- ①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에서 가공된 물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Ⅲ의 부록에 있는 양식과 같은 송하장이 필요하다.
- ② 허가당국은 신청자에 대해 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이 동독 지역으로부터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으로 반입된 것임

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Ⅲ의 제1조 내지 제4조를 적용한다.

#### 제 9 조 신 청

제7조와 제8조에 의거한 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 IV. 최 종 조 항

#### 제 10 조 수 리

제3조의 제1항과 제4조 내지 제9조는 다른 지역내에 사는 물품 소유자의 물품을 수리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 제 11 조 효력발생

①이 세칙은 1971. 3. 1부터 유효하며 1975. 12. 31까지 효력이 있다.

②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Ⅱ의 제8조의 제3항 및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Ⅲ의 제9조의 제3항의 경과규정은 여기서도 적용된다.

1970. 12. 16 「본」

서독경제상

## 마.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V (1970. 12. 16)

### 제 1 조 송하장의 양식

①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으로부터 직접 또는 제3국을 경유하여 동독지역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송하장은 그 반출이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에 상주하는 자와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과 동독지역 이외의 지역에 상주하는 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를 둔 것인 이상, 1970. 12. 16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Ⅲ의 부록의 양식과 같은 서식으로 교부된다.

② 여기에는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Ⅲ의 제1조의 제2항 내지 제4항, 제2조의 제1항, 제4조 및 제8조가 적용되며 제2조의 제2항도 준용된다.

③ 1966. 12. 20 공시된 대외무역규정의 제9조의 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교부받아 물품을 반출할 경우에는 송하장과 수출 허가증을 세관의 발송 관계당국에 제시해야 하며 수출 관계당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송 및 수출명세서의 제1란에는 송하장의 번호를 기입하며 그 뒷면의 「특기사항」란에는 「송하장이 첨부됨」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제 2 조 반입허가서의 양식

① 동독지역으로부터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으로 직접 또는 제3국을 경유하여 반입되는 물품의 반입허가서는 그 반

입이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에 상주하는 자와, 베를린시를 포함한 서독지역 및 동독지역 이외의 지역에 상주하는 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1970. 12. 16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Ⅱ의 부록에 있는 양식과 같은 서식으로 발급된다.

②여기에는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Ⅱ의 제1조의 제2항과 제3항, 제2조의 제1항, 제4조, 제7조도 아울러 적용하며 제2조의 제2항도 준용한다.

### 제 3 조 통과지점

1970. 12. 16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I의 부록에 통과지점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물품은 물품거래를 위해 지정된 모든 통과지점에서 인도될 수 있다.

### 제 4 조 효력발생

①이 세칙은 1971. 3. 1부터 유효하며 1975. 12. 31까지 효력이 있다.  
②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Ⅱ의 제8조의 제3항 및 동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Ⅲ의 제9조의 제3항에 규정된 경과규정은 이 세칙에서도 적용된다.

1970. 12. 16 「본」

서독경제상

## 5.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에 관한 서독경제상 공고(1970.12.23)

### 서독경제상 공고

1. 현행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과 대체되는 양독간 교역 규정 시행세칙 I, II, III, IV, V를 공포한다.
2. 새로운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의 제정으로 물품거래분야에 있어서 동독과의 교역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일화하는 작업은 일단 마무리 된다.
  - 1) 동독으로의 물품반출에 관계되는 일반허가 규정 2호 및 동독으로부터의 물품반입에 관계되는 일반허가 규정 3호는 절차 개선의 일차적 조치이다. 반출자측의 경우에 있어서 이미 모든 계약의 약 3분의 2, 그리고 총거래가격의 거의 절반이 일반허가사항에 포함된다. 1970. 2부터 효력을 발생한 일반허가에 의거하여 이미 모든 계약의 4분의 1이상과 총거래 가격의 약 20%가 처리되었으며 이 현상은 현재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2) 일반허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계약은 계속해서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앞서 수록한 시행세칙은 개별허가 절차를 보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만든 것이다.
3. 반입과 반출을 위한 개별허가 절차는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

세칙 II, III, IV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다음의 항목이 있다.

-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II : 동독으로부터의 반입을 위한 반입허가서의 교부
-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III : 동독에 물품을 반출하는데 필요한 송하장의 교부
-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IV : 임금가공의 형태를 취한 반입 및 반출에 필요한 허가서의 교부

이 규정은 행정상의 절차와 기술적인 문제를 간소화하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마련한다.

1) 지금까지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던 반입 및 반출을 위한 양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반입에 있어서는 「K」, 「S」 및 「L」의 3종류로 된 반입허가서 양식을 하나의 서식으로 단일화 한다.

반출에 있어서는 송하장의 「E」, 「U」 양식 및 「기본신청서」의 3종류의 양식을 「송하장」 서식으로 단일화한다. 개정된 양식 「분할발송을 위한 송하장」은 일반적 예외허가 No. 38에 해당되는 양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III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넘긴다.

2) 「분할발송을 위한 송하장」은 앞으로 모든 반출에 통용될 수 있도록 한다. 금년까지는 반출자가 송하장 양식 2를 세관에 맡겨두는 것이 상례였으나, 앞으로는 반출자가 분할발송을

위한 송하장의 양식을 물품발송 이전에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금년부터는 반출자가 분할발송을 위한 송하장 양식 2와 2a를 물품이 통과하게 되는 세관에 발송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3) 반입허가서와 송하장의 양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그 양식의 표면에 각각 기록되어 있다. 이밖에 모든 양식의 사용법을 위해서 양식기재에 관한 지침을 별도의 지면에 덧붙여 놓았다. 이 지침들은 금년까지는 시행세칙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 4) 반출과 구매에 관한 잣은 공고를 피하기 위해 불변성의 주요 공고규정을 시행세칙에 삽입했다.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Ⅱ 및 Ⅲ의 제3조 참조) 그것은 금년까지 공시사항 No. 1-L과 No. 4-B에 포함되어 온 이 규정은 그러지 않아도 이미 그 효과면에 있어서 법규와 같은 성격을 지녀왔기 때문이다.
  - 5)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Ⅱ, Ⅲ, Ⅳ는 서독공업국에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며, 이 재량권에 따라 서독공업국은 일정한 조건하에 예외허가에 의거하여 청구금액을 차액계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6) 계약 체결시에 교역대리인이나 교역중개인이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명시의무는 이미 일반허가 2호와 3호에서 채택된 규정과 합치한다.
4. 허가면제의 기본요건을 마련하고 관할권, 가격심사, 통과지점

등을 규정한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I 은 소위 삼각거래에 관계되는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V 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규정과 비교할 때 사실상 본질적으로 개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5. 금년까지의 규정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신규 시행세칙의 어디에도 별처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별처조항이 필요없게 된 것은 양독간 교역규정 제14조 및 제19조를 그대로 적용하여도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새로운 양독간 교역규정이 발효하더라도 이미 받아놓은 허가 사항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물론 현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발급된 송하장에 의거하여 분할발송에 의한 반출을 할 경우에는 새로 마련된 양식 분할발송을 위한 송하장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7. 양독간 교역회람 No. 18, 23, 24, 99와 예외허가 No. 38은 새로 마련된 시행세칙에 훨씬 뒤떨어지며, 따라서 이것은 모두 폐지한다.

## 6. 양독간교역에 대한 물품세공고

### 가. 물품세 감면청구에 관한 공고(1967. 9. 1)

1967년에 제정된 물품세법 제26조의 4에 의거, 연방경제상과의 합의하에 다음 사항을 공고한다.

1. 동독에 물품을 반출할 경우 다음 조건을 구비하면 물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①양독간 교역협정에 따른 청산단위를 준용한 반출일 것
- ②반출된 물품이 동독에 도착했다는 증명서가 첨부될 것
- ③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본공고에 의거한 세액감면을 청구할 수 없다.

상기 조건들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은 기장에 의해서 또는 증빙서류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1967년에 제정된 물품세법 제15조에 의거한 면세규정은 이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2. 동독의 구매자는 물품세 4%를 감면받거나 또는 1967년에 제정된 물품세법 부록1에 표시된 물품일 경우에는 해당 물품가격의 2%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감면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가. 양독간 교역협정의 범위내에서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

나. 다음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① 견인선과 준설선을 제외한 영업용 선박 및 관용·공용  
선박

② 1967. 12. 31부터 시행된 자유유통 물품 목록에 나타나  
있는 물품

다. 반입물품은 다시 수출할 수 있다.

라. 반입물품에 대해서는 본공고에 의거한 물품세 감면 특  
혜를 청구할 수 없다.

상기의 조건들은 기장 또는 증빙서류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동독으로부터 1968. 6. 30 이후에 구매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4%의 면세액을 5%로, 2%의 면세액을 2.5%로 증액한다.

감면액은 사전 신고기간이나 세액 사정기간중에 부과된 물품  
세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 이에 대해서는 1967년에 제정  
된 물품세법 제18조 제2항의 제4호와 제5호, 제4조 제4항을  
적용한다.

3. 회계상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서독의 기업가가 기재한 장  
부를 통해 다음 사항이 명백히 그리고 손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확실히 표시된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다.

가. 제1항에 의거한 혜택을 받을 경우

① 반출한 물품의 수량과 상거래에 있어서 관례적인 물품  
의 분류기호

②동독반출품의 수취인

③물품의 반출일자

④양독간 교역협정의 적용범위 내에 속하는 물품의 반출 및 동독 도착에 관한 증빙서류(송하허가서, 운송장, 우편물송장, 선하증명 각각 2부씩)

⑤합의된 물품대금—이것은 계산서 사본으로 제시해야 한다.

#### 나. 제2항에 의한 감면

①반입물품의 수량과 상거래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물품분류기호, 반입허가서 「K」에 해당되는 것으로 양독간 교역협정의 범위내에서 구매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②동독지역의 반출자

③인수증빙서류(예 : 송하허가서, 운송장)를 통해 인수일자를 표시할 것

④인수계산서로 증명할 수 있는 물품대금

⑤구매한 물품의 용도, 구매자가 물품을 가공하기 전에 서독내의 다른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낼 경우, 그 물품을 다시 수출하지 않는다는 증빙서류를 갖춰 제2항의 전제조건이 구비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양독간의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고한다.

1967. 9. 1

연방재무상

나. 기업체에 대한 물품세 감면에 관한 공고(1968. 1. 8)

1967년도 물품세법 제26조 제4항에 의거, 서독경제상과의 합의하에 다음 사항을 공고한다.

1. 서독거주 기업가가 양독간 교역협정의 범위내에서 동독의 주문자를 위해 행하는 다음 사항에는 물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가. 동독과 체결된 용역합의서에 명시된 사항(백림협정 부록6)

나. 임금가공(물품의 가공 또는 1967년도 매상세법 제3조의 제9항의 작업)

1967년도 물품세법 제15조에 의거한 면세조항은 이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2. 서독기업가는 양독간 교역협정의 범위내에서 동독기업가가 1의 가항 및 나항에 명시된 사항을 수행할 경우 이에 따라 산출된 대금에 대해 물품세를 감면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서독기업가가 1967년 물품세법 제4조의 제6항 내지 제26항에 따라 면세로 용역수행을 요청한다든가 1967년도 물품세법 제19조에 따른 총액부과의 대상이 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1968. 6. 30 이후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는 감면율을 5% 인상한다.

감면액수는 사전 신고시간이나 세액 사정기간에 부과된 물품

세액을 토대로 계산될 수 있다. 이에는 1967년도 물품세법 제18조의 제2항 제4,5호와 제4항 제4호가 적용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혜는 서독과 동독간 물품교역에 있어서의 운송사업 및 이에 부대되는 용역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 철도화물수송은 다음에 준한다.

가. 서독과 동독간 물품교역에 있어서 연방철도의 수송업무에 대해서는 1에 의거한 혜택이 부여된다.

나. 동독국영철도나 사설철도에 의한 물품 수송비용이나 운임의 지불을 청구받은 서독기업가는 2에 의거한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 1과 2에 명시된 특혜는 동독철도에 대한 서독철도의 용역제공과 서독철도에 대한 동독철도의 용역제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단, 서독철도와 동독철도간에 1958. 4. 25에 합의한 「화물열차 화물 적재도구와 용기(콘테이너) 이용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만 위의 특혜를 보장받을 수 있다.

5. 상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했다는 사실은 장부 또는 증거서류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백히 나타나야 한다.

가. 작업의 종류와 시기

나. 용역 수취인과 용역 제공자

다. 계산서 사본이나 영수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용역대금  
라. 1과 2의 경우에는, 수취한 용역이 양독간 교역협정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무성은 약식 증빙서류를 허용할  
수 있다.

6. 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이 동독으로 연장될 경우 이 운송사업  
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는 이 연장거리분에 대한 용역대금  
은 세금부과 기준에서 제외된다.

단, 운송자가 이 장거리분에 대한 물품세의 증빙서류와 함께  
계산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서독~서  
「백립」간 물품교역상의 운송작업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적  
용한다.

상기 규정은 1967. 12. 31이후의 용역거래에 대해서 적용한다.

1968. 1. 8 「본」

연방재무상

## 다. 소량반입시 물품세에 관한 공고(1968. 10. 26)

양독간 물품교역을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1966. 11. 18 일반예외허가규정 제39호가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소량반입의 경우에 반입허가서 「K」의 제출을 반입자에게 면제해 주기 위한 것이다.

즉 특정한 전제조건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반입허가서 「K」 대신 「소량반입 명세서」만을 제출하면 된다. 그렇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입자는 「소량반입 명세서」 대신에 반입허가서 「K」를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에 일반예외허가규정 제39호에 따른 소량반입에 대한 세금혜택을 거절할 경우에는, 물품교역에 대한 세금특혜조치를 위하여 제정된 본 공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공고는 일반예외허가규정 제39호 제1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반입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본 공고는 물품세관계 법규집에 수록된다.

1968. 10. 26 「본」

연방재무상

라. 삼각무역에 대한 물품세의 면세특례에 관한 공고  
(1969. 7. 31)

양독교역에 있어서의 소위·삼각무역을 대상으로 시행함.

1. 반입관계 공고에 따른 특혜조치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독기업인이 외국 기업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판매되는 물품이 직접 서독으로부터 외국 구입자에게 전해지거나 혹은 외국 기업인이 사용하도록 동독에 전하여지는 경우(소위 3각 무역)에는 면세에 대한 특례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독에 있는 외국 기업인의 지점이나 해당회사로부터 판매되는 물품이 동독에 있는 구입자에게 직접 전하여지는 경우와 외국 본사의 판매계약이 그들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융통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에 명시된 종류의 물품반출의 경우에는 본인은 반입공고 No. 1에 따른 규정적용에 동의한다. 반출물품의 동독 도착증명은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V의 제1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3. 본 공고는 1968. 12. 31 이후에 행하여지는 물품의 반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공고는 연방 경제상파의 합의하에 행하여진다. 본 공고는 연방 세법집 제1부에 수록되며 물품세법집에 수록된다.

1969. 7. 31 「본」

연방재무상

마. 양독교역상 위탁판매소 설치·운영에 관한 공고  
(1969. 9. 17)

동독의 최고 경제기관과 다음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물품교역의 처리 및 청산을 위하여 물품판매를 위한 시설을 위탁상의 명의와 부담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위탁판매소의 구체적 세부항목에 관하여는 양독간 교역 회람 제29호에 대한 부록3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양독간 교역회람의 29호 7차 개정을 통하여 보완되었다.

### 1. 서독의 위탁판매소

서독에 위탁판매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은 용역허가를 통하여 허용된다. 동독거주 위탁자가 위탁판매소에 반출하는 물품의 납입에 대하여는 반입허가서 「S」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탁판매인은 수탁판매인에게 위탁하는 물품에 대한 잠정적인 계산을 하여 준다. 위탁한 물품들이 팔린 뒤에 수탁판매인은 위탁판매인과 최종적인 결산을 한다.

수탁판매인은 자기가 받을 수수료와 기타 잡비용 등의 보수를 판매 이익금으로 상계 청산할 수 없다. 이 보수는 물품위탁자가 별도로 지불한다. 수탁판매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는 사람은 그 대금을 수탁판매인에게 지불하거나 물품위탁자에게 직접 송금해도 좋다. 지불계정은 양독교역 협정의 일반규정에 따라서 행한다.

물품세법상 위탁인과 수탁판매인간에는 일종의 납품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반입공고 2에 따른 감면청구는 위탁판매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수탁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이 대금지불을 직접 위탁판매인에게 하는 경우에는 이 구입자는 계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물품세를 별도로 수탁판매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수탁판매인이 행하는 감면청구의 경우에 정산 기준이 되는 금액은 물품을 위탁할 때에 잠정적으로 작성하는 계산서에 나타난 금액이다. 물품을 판매한 뒤에 잠정가격보다 초과되거나 미달하게 될 경우 감면조치는 이에 알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위탁된 물품이 위탁자에게 반송되는 경우 감면조치는 취소된다. 이러한 정정조치는 보상문제가 변경되거나 혹은 납품된 물품이 납품자에게 반송되기 전 사전 신고기간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위탁판매자가 지불하는 보상(수고비등) 조치는 물품세법상 특별한 업무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물품위탁자에 대한 지불금액을 줄이는 역할을 하므로, 감면을 위한 사정기준을 줄인다.

반입공고에 따른 증명으로서 반입허가서 「K」 대신에 반입허가서 「S」가 인정된다.

## 2. 동독의 위탁판매소

동독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위탁판매소의 경우 서독 위탁자는 용역허가를 필요로 한다. 물품교역과 지불거래는 전항의 경우

에 해당하는 형식으로 행하여진다. 동독에 있는 위탁판매소에 위탁물품을 발송할 경우 송하허가서「U」가 있어야 한다.

1967년의 물품세법 제3조에 따라서 반출로 간주되는 서독의 위탁판매자와 동독의 수탁판매자간에 이루어지는 물품의 이동에 대하여는 반입공고 제1호에 의거한 특혜조치를 적용한다. 사정기준을 사후 변경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물품 위탁자에 의하여 수탁판매자에게 지불된 보수는 특별한 업무에 대한 보수가 아니므로 반입공고 2에 따른 감면조치를 받지 않는다.

본 공고는 연방경제상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연방세법집과 물품세법집에 수록된다.

1969. 9. 17 「본」

연방재무상

## 7. 양독간 교역에 있어서의 장기거래보증 일반조건(1969. 4. 2)

### 제 1 조 보증의 부담

- ① 서독은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동독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보증채무를 진다.  
보증확인서(Garantie-Erklärung)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이 「일반조건」이 상기의 보증을 위해 적용된다.
- ② 「뒷셀도르프」에 있는 「독일감정 및 신탁주식회사」 (Die Deutsche Revisions-und Treuhand-Aktiengesellschaft, 일명 Treuarbeit)가 자기 명의로 보증을 책임질 임무를 연방정부로부터 위임받았으며, 제3항을 침해함이 없어 이 보증문제와 관계되는 모든 확인을 연방정부로 대신하여 행하고 또한 수취할 권한을 갖는다.
- ③ 보증확인서는 어떠한 것이든간에 문서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문서형식을 취한 보증서는 「트로이아르바이트」와 연방 채무관리국(Bundes-Schulden Verwaltung)이 서명한 경우에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 ④ 서독은 보증의무의 부담과 제반조건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⑤ 보증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다.

## 제 2 조 보증책임을 지는데 대한 여러가지 전제조건

①보증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1951. 7. 18에 제정된 양독간 교역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다.

②전항에 해당되는 기업과 동독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업들간에 행하여지는 계약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만 보증의무를 질 수 있다.

가. 동독에 대한 투자목적에 사용되는 투자재 또는 투자에 적절한 자료의 반출

나. 주문자에 대한 용역제공

투자재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가공된 다음에야 투자재로 될 원자재(Vormaterial)의 반출에 대하여는 보증을 할 수가 없다.

③계약을 통한 합의에도 다음과 같은 점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전항에 명시된 반출이나 용역제공은 최소한 계약체결 6개월 이후에 행하여져야 하며 늦어도 계약체결 1년 이후에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

나. 180일 지난 후에 이상의 지불기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지불합의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한다.

④신청인은 양독교역 규정에 따라서 교역계약 이행에 필요한 허가서를 제출, 문서로 확약해야 한다.

### 제 3 조 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다음의 주소로 제출한다.

독일 감정 및 신탁주식회사 : 트로이아르바이트

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안내서」를 참조하면 된다.

### 제 4 조 보증의 효력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조치가 유효하게 된다.

- ① 서독 이외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사건 또는 서독이 취하지 않은 정치적 조치가 반출에 제한을 가하게 되거나 보증을 받은 사람의 물품납품이나 혹은 용역제공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서독에 소재지를 둔 계약 당사자가 이에 해당하는 반출계약 또는 용역제공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만기 6개월후에 피보증인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사후에 만기가 재합의될 경우에는 후자의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피보증인에 의해 계약 이행에 하자가 있을 경우 보증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제 5 조 보증책임의 개시와 종결

- ① 보증에 대하여 서독정부가 지는 보증책임은 보증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개시되며, 피보증인의 요구가 충족됨과 동시에 종결한다.
- ② 서독정부의 보증책임은 늦어도 보증확인서에 명기된 날자에 끝난다.

## 제 6 조 보증범위

① 서독정부는 피보증인에게 반출 물품가격의 최고 90%의 지불을 보증하며, 보증확인서에 명시된 보증금액 이상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반출가격

가. 반출보증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물품반출 계약 또는 용역계약에서 합의된 대금 및 별도로 산출된 부대비용을 합친 것이다.

나. 지불보증의 경우에는 반출된 물품과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계약상으로 계산될 수 있는 대금과 여기에 대하여 가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부대비용이 된다. 계약상 약속된 신용대부 이자(Kreditzinsen)에 대한 청구는 전부 혹은 일부를 보증액 속에 포함할 수 있다. 연체이자와 계약위약금, 손해배상, 혹은 기타 이와 유사한 청구사항들은, 이들이 비록 판매계약 내지 반출계약이나 혹은 용역계약에 명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들도 보증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③ 배상금(Entschädigung)은 제7조의 제1항에 따른 보증확인서에 명시된 반출물품의 90%까지 지불한다. 단 반출된 물품가격의 90%가 청구된 보증금액보다 많을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이미 행하여진 반출이 부분적으로만 행하여졌기 때문에 물품반출보증, 또는 이미 수취한 계약금이나 분할금 때문에 손해(피해)를 입지 않을 때에는 배상금은 지불되지 않는다.

## 제 7 조 배상금 보증

① 배상금 계산에 있어서는 제6조의 제2항에 따라 반출된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 사항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 가. 납품 보증의 경우

1. 이미 반출된 물품과 제공된 용역가격에 대한 보증으로 이미 이에 대한 어떤 청구행위가 있었을 경우

2. 포장비(물품), 화물운송비, 보험료 그리고 물품을 주문된 곳으로 아직 송달치 않음으로써 절약된 운송과 관계되는 부대비용을 피보증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거나 이를 비용이 물품구입자에게 항목별로 분리되어 계산되는 경우

3. 계약에 따라서 반출되는 물품비용 또는 이를 가공생산하는데 쓰이는 비용과 기타 비용들이 보증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까지 아직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

4. 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이미 구입한 원자재 및 반제품재고품의 구입원가가 피보증인에 의한 제품 생산과정에서 더이상 추가되지 않을 경우

5.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까지 매입되었거나 혹은 제조된 제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므로써 획득된 순이익이나 전4항에 해당되지 않는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재고품과 반제품 재고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획득되는 순이익

6. 보증의 사유가 발생했으나 순이익에는 감소가 초래되

## 지 않을 경우

7. 물품반출이나 용역제공을 이행하지 않아 피보증인에게 돌아가는 일(특히 전3항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들이 절약되는 것들)이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나. 지불보증의 경우

피보증인에게 수익이 되는 이미 이행된 물품의 반출과 이의, 청산완료와 관계되는 이익과 그밖의 다른 계산 가능한 금액 중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1. 보증효력 발생 이전에 지불되고 만기된지 아직 6개월 이 경과하지 아니한 금액

2. 불완전한 반출이나 용역에 따른 임무자나 혹은 피보증인에 의하여 주장되는 다른 이유들로 인하여 이의가 제기되는 금액

3. 반송품에 대한 금액이 피보증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불될 경우, 이에 해당하는 반출가격, 순 매상금액을 포함한 반송품

4.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얻어지는 순 매상이익

5. 차감계산이 가능한 청구, 청구할인, 감소대변기입 그리고 지불대신에 행하는 용역등

보증에서 제외된 나머지 부분은 따라서 피보증인이 부담하는 10%로 감소된다.

### 제 8 조 보고의무

- ① 피보증인은 보증기간 동안 보증상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조치 또는 사건들에 대하여 연방정부에 즉시 통고할 의무를 진다. 특히 이 피보증인이 절박한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에 연방정부에 알려야 한다.
- ② 피보증인은 보증 효력발생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즉시 연방정부에 통고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지불을 포함하는 계약 이행의 현황에 관하여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피보증인은 이 경우 즉시 그의 서명이 되어 있는 보고기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보고에는 손해배상금액 산출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④ 늦어도 이때까지는 피보증인은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를 보고해야 한다.

### 제 9 조 손해액의 감소

- ① 피보증인은 연방정부에 위하여 배상될 손해의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상인으로서의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즉시 모든 조치들을 취할 의무를 갖는다.
- ② 피보증인은 특히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매입했거나 혹은 제조한 물품을 제7조 제1항 가항의 4에서 언급한 것은 예외로 하고, 연방정부의 이익을 유지하면서 최상의 가치를 발휘토록 사용할 의무를 갖는다.

③ 피보증인은 물품을 매각할 때까지 별도로 보관하고 표시해 두어야 한다. 피보증인의 여건에 비추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의 지불은 연방정부가 보상지불(제10조)들과 함께 지불한다.

④ 피보증인은 손해를 줄이는데 과당한 경우에는 세부계약에 있어서의 해약가능성을 이용해야 한다.

⑤ 피보증인은 연방정부가 경우에 따라서 내리는 지시가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 제10조 손해배상의 요구, 확인 및 지불

① 손해배상신청은 보증유효기간이 시작되어 6개월만기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피보증인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제반 자료를 제시하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손해배상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후 6개월 이내에 확인되어야 한다. 연방정부는 손해배상으로서 확인된 액수를 즉시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물품보증의 경우 계약의 이행이 이전에는 불가능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금액은 지금껏 상존하는 계약사항의 위임 또는 계약에 따른 지불의무자에 대한 지불요구 등을 포기했을 경우에 지불된다.

피보증인은 연방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방정부에 대해 (지불비용의 보전을 위해) 위임된 계약사항과 권리행사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임의로 계약사항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④연방정부는 미리 예기했던 손해배상에 대하여 분할로 지불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의해 연방정부는 안전을 위해 피보증인의 위임을 요구할 수 있다. 분할로 지불액이 손해액과 어긋날 경우 이를 즉시 조정해야 한다.
- ⑤피보증인이 연방정부에 위임했던 사건 및 권리와 관련된 수취금을 수령한지 7일 이내에 서독중앙은행에 지불하면, 연방은 이 시기부터 서독중앙은행에 도착한 날까지 연방은행 할인율에 따른 30%의 이자를 받게 된다.

## 제11조 검사권

- ①피보증인은 자기의 사업, 장부, 문서 등을 검사하는 것이 연방정부가 보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연방경제상, 검사원장 또는 상기 두 관청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연방정부의 요구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이러한 요구의 전제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는가를 확인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 ②전항에 따른 검사권은 보상금액이 마지막으로 지불되고 나서 3년 동안 계속된다. 분할로 지불된 손해배상금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차액은 즉시 조정되어야 한다. 이에 의거 피보증인이 재검이 끝난지 1년 이내에 차액의 반환을 요구받지 않았을 경우 피보증인의 차액반환 의무는 소멸된다.

### 제12조 보증대가

- ①보증을 받은 시기가 경과하는 동안 매 6개월마다 2.5%에 해당하는 대금이 부과된다.
- ②최초의 대금은 보증확약서의 수령과 함께 지불한다.
- ③대금지불 1개월 이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보증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 제13조 계약상 의무위반

피보증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일반적인 조건이나 보증확약서의 제반 규정에 따른 절대적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지고 있는 의무와 또 이행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 상황에 따라 피보증인의 성실성 및 신뢰성을 토대로 결정하되, 특히 의무에 반한 행동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가 증가했는가 또는 손해를 줄이는 것을 얼마나 계율리했는가와 손해배상 계산의 원인이 된 상황이 얼마나 파악하기 어렵고 곤란하였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제14조 손해배상 의무의 면제

연방정부 피보증인이 다음의 사항과 관계될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①피보증인이 보증을 받기 전에 의식적으로 부정확하고 불안전한 신고를 했을 경우
- ②보증의 기초가 되어 있는 양독 교역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독내에서 적용되는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이 위반이 보증

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손해를 야기하지 않더라도 연방정부는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

### 제15조 양 도

- ①보증청구권은 연방정부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가가 있어야만 위임할 수 있다.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제1조의 제1항이 적용되는 지역내의 금융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 ②지불보증 청구권의 위임은 보증을 받은 청구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과 관계될 경우에 한해 있을 수 있다.
- ③위임을 했을 경우에도 피보증인이 보증 때문에 연방정부에 지는 제반 의무는 변하지 않는다.

### 제16조 최종조항

- ①연방정부가 피보증인이 청구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명백히 거부하면 연방정부에 대한 보증청구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법적으로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보증공고에서 야기되는 소송 관할지역은 「본」이다.
- ③구두로 하는 대답은 효력이 없다.

## 8. 양독간 교역에 있어서의 장기거래 보증에 관한 공지사항(1970. 11. 24)

서독은 1951.7.18 양독교역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내의 기업으로부터 보증신청을 접수한다.

다음 사항에 대한 보증이 인정될 수 있다.

- 가. 물품반출과 용역제공에 있어서의 반출보증과 지불보증
- 나. 위탁판매소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물품보증과 지불보증
- 다. 신청자로부터 제3자를 통해 상인과 위탁자에게 전가되는 보증이행의 위험부담에 대한 「별도보증」

보증을 위임받는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 I. 물품반출과 용역제공에 대한 반출 및 지불보증

#### 1. 보증위임을 위한 조건

1. 양독교역규정이 적용되는 지역내에서의 기업과 동독기업 사이의 계약에 대하여만 보증을 할 수 있다.

- 가. 투자재 또는 투자에 적당한 자재의 동독반출에 대한 보증
- 나. 동독 주문자에 대한 투자에 따르는 무역의 보증  
투자재를 위한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가공을 통해서만 투자

재가 되는 원자재 반출에 대한 보증은 할 수 없다.

2. 계약합의서에는 다음 사항이 구비되어야 한다.

가. 반출과 용역제공은 최소한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에 개시하고,

나. 반출과 용역제공 계약체결후 1년 이후로 이행기를 연장 할 수 있으며,

다. 180일 이상의 시일이 지나야 지불이행이 요구될 수 있다.  
보증은 원칙적으로 지불조건이 관례에 따라 지켜질 경우에 한해 접수할 수 있다. 반출과 용역 이행후 5년 이상의 신용 계약은, 특별한 상황이 이것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경우에 한해 보증될 수 있다.

3. 이 보증은 동일한 계약자와 체결한 개개의 계약 또는 여러 개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개개의 계약 이란 같은 날짜에 다시 말해서 시간적으로 짧은 거리를 두고 체결한 계약들을 지칭하며 전체 반출가격이 50만「마르크」를 넘지 않는 것들이다.

## 2. 보증의 내용과 범위

### 1. 피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가. 반출보증 : 서독 이외지역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 또는 서독과는 관계없는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반출이나 용역제공

이 불가능한 사태에 대비한 보증. 단 상기의 정치적 사건이 서독내의 계약자들에게도 반출 및 용역제공을 불가능하게 할 경우에 한한다.

나. 지불보증 : 피보증인이 자신의 계약사항을 순조롭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만료기일 6개월이 지난 후에도 피보증인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지불보증. 사후에 지불기한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이 지불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피보증인이 보증의 필요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보증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

2. 보증행사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반출가격의 총액이다. 반출보증에 있어서 반출가격의 총액이란 매매계약 반출계약 및 용역계약에 명시된 금액과 별도계산에 의거한 부대비용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반출보증에 의거 손해를 계산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비용과 그밖의 이익금은 반출금액에서 제외된다. 지불보증에 의거 손해를 계산할 경우, 반출 및 용역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이윤과 기타 계산될 수 있는 금액은 공제된다. 나머지 액수는 피보증인이 10%를 부담해야 한다.

준보험의 경우, 보상은 상기 기준에 의거 산정된다.

3. 피보증인은 보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방정부가 부담할 보상액을 줄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손실보상 신청은 사유가 발생하는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5. 보상액수는 보상신청을 한때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확정된 보상금액은 결정되는 즉시 지출된다. 그러나 물품의 반출보증의 경우 피보증인이 보증계약에서 명시한 대로 판매대금을 수취하기로 예정했던 시기전에는 지불하지 않는다.

### 3. 절 차

1. 보증신청서는 계약체결과 해당관청의 허가서 발급후 연방정부로부터 보증업무를 위임받은 「트로이 아르바이트」에 제출한다. 신청을 하는 시기에 이미 위험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면 이에 대한 보증은 책임질 수가 없다.

본 신청을 함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가. 모든 계약당사자와 서명한 계약서의 복사본 및 기술적인 세부내용이 아닌 조약내용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되는 첨가서류를 제출해야만 된다.

경우에 따라서 함께 반출해야 할 부속물의 반출가격이 위에 언급한 문서들에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나. 합의된 반출가격 속에 동독이나 제3국에서 획득되거나 또는 생산제조되는 물품이 반출물품이나 용역제공 속에 포함

되어 있는지 여부와 포함정도에 관한 신청인의 명세서  
다. 반출이나 무역이 보증신청을 제기하는 시점에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설명서  
라. 가항에 언급된 문서에서 금액이나 또는 분할지불의 만기일을 쉽게 알아볼 수 없을 경우에는 구입자와 신청인의 모든 지불계획

계약체결 후에 보증신청을 하는 시기까지 이미 지불만기가 지났을 때에는 지불청산에 관한 보고가 첨가되어야 한다.

마. 본 신청서는 양독 교역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교역에 필요한 여러가지 허가를 받았다는 설명서(송하허가서 번호와 신고번호는 일반허가규정 2호에 따름)를 계약체결 신고서 15번 란에 기입한다.

만약 본 신청을 할 때에 위에 언급한 문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항과 나항에 명시된 내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상의 중요점들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한다. 즉 주문서, 반출 및 용역제공 대상, 반출가격, 계약체결시기, 반출시기, 생산시기, 지불약속, 협약된 외상판매 이자 등

2. 연방정부는 교섭중인 업무가 성취될 경우에 대한 잠정적인 보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추진하고자 하는 계약조건은 항목 별로 명시해야 한다.

3. 제출된 신청에 대하여는 연방경제상과 재무상이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이 내리면 「트로이아르바이트」가 신청자에게

통고한다.

4. 보증의 인수결정이 내리면 「트로이 아르바이트」는 연방손해 배상관리국이 서명한 보증확약서를 피보증인에게 발송한다.
5. 계약의 변경은 연방정부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4. 내용

##### 1. 보증에 대한 비용의 액수

보증기간 동안에는 6개월마다 보증금액의 2.5%에 대한 비용의 지불요청이 가능하다.

##### 2. 잠정인수에 대한 대금

연방정부의 잠정보증 발급신청에 대한 업무수행의 경우 「트로이아르바이트」는 1회에 한하여 대금을 징수한다. 보증대상 물품가격과 대금채권에 대한 사전인수 대금은 다음과 같다.

1백만DM까지 = 500DM

5백만 " = 1,000 "

1천만 " = 2,000 "

5천만 " = 3,000 "

1 억 " = 4,000 "

1 억DM이상 = 5,000 "

이미 발급된 인수허가에 대해 재차 연기신청을 할 경우 위에

열거한 금액의 한도까지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다.

## II. 위탁판매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물품보증과 지불보증

### 1. 보증책임 인수에 대한 전제조건

1. 다음의 여러 조건들이 이행되었을 때에 한하여 보증인수 책임을 질수가 있다.

가. 위탁판매자는 1951. 7. 18에 제정된 양독 교역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내에 그 소재지를 두거나 혹은 지점(지소)을 두어야 한다.

나. 수탁판매자는 동독에 그 주소를 두거나 그 지점을 두어야 한다.

다. 계약합의의 대상은 1969. 7. 6에 제정된 양독간 교역회람 94호를 보완한 95호의 취지에 따른 위탁판매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이라야 한다.

라. 입하하게 될 대상(물품)은 투자재로서 직접적인 개조를 위해 더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도록 된 투자재 또는 물품이어야 한다.

마. 판매소를 최소한 1년을 기한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이 구비되어야 한다.

바. 합의된 지불조건은 관례적인 범위내에서 이행되어야 하

며 다음 사항도 관례적인 범위로 이행된다.

- 위탁판매자가 제3자와 매듭지을 지불합의
- 피보증자, 위탁판매자에게 구입자로부터 지불된 대금의 인도에 동의한 기간
- 합의된 외상판매의 이자

반출 후 또는 작업준비 완료 후 5년 이상의 외상판매기간의 계약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정당함을 입증할 경우에만 보증된다.

2. 외상이자를 포함하여 외상판매하게 될 총액에 대하여 피보증자는 은행담보의 설정을 유보하고 있어야 한다.

## 2. 보증의 내용과 범위

1. 피보증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가. 물품보증 : 독일연방공화국 밖에서의 정치적 사건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에 해당되지 않는 정치적 조치 및 반출제한을 포함한 정치적 조치에 따라,

- 위탁판매소에 대한 물품의 발송과
- 판매소에 재고중인 물품에 대한 처분, 특히 동독지역 구입자에 대한 양도 및
- 동독지역 물품의 양독간교역규정 적용영역으로의 발송 등이 6개월간 계속 불가능할 경우에 행한다.

나. 지불보증 :

- 피보증자의 위탁판매인에 대해 구입자가 지불한 판매 대금의 인도요구 또는
- 판매대금 요구권의 양도나 위탁판매인의 자기판매권의 양도에 따라 판매대금이 지불기한으로부터 6개월 경과하도록 지불되지 않을 경우에 행한다. 청구액을 미리 지불하도록 했던 당사자끼리의 합의기간은 이 경우 고려되지 않는다.

2. 연방정부의 보증은 총보증금액중

- 가. 분리계산이 가능한 물품과 부대비용에 대한 신청시 제출된 가격의 10분의 9와
- 나. 피보증인으로부터 지불될 외상이자의 10분의 9를 포함하는 총액으로 제한한다.

물품보증의 손해청산에 있어 보증총액중에서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손해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미 손해를 입은 물품가격의 10분의 9
- 절감된 제비용과 위탁판매소에 도착하지 않은 물품 이익의 10분의 9
- 보증신청시 제출된 손해 예상가격보다 실제손해로 발생한 가격이 적을 경우 두 가격사이의 차액의 10분의 9

- 손해대상물품의 계속 반출이나 반송에 대한 절감비용
- 손해사고와 관련하여 피보증자에게 발생하게 되는 금전상 이익의 10분의 9

지불보증에서의 손해청산에 있어서는 피보증자에게 들어가는 완료된 반출과 이의 청산과 관련된 이득 및 기타 예측되는 금액의 10분의 9를 제외한다.

일부보험의 경우 손실액은 보험액 만큼 차감된다.

3. 피보증자는 보증에 대한 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지체없이 연방정부가 보상할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손해보상 신청은 보증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뒤 6개월간의 종결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출돼야 한다.

5. 손해보상은 신청이 있은지 6개월 이내에 확정된다. 손해보상으로 확정된 금액은 지체없이 지불하되 물품보증의 경우는 피보증자가 보증계약에서 명시한대로 교역업무의 진전에 따라 판매대금을 수취하기로 예정했던 시기에 가서 지불한다.

### 3. 절 차

1. 보증 인수신청은 계약체결과 해당관서의 허가서 발급 후 지체없이 연방정부로부터 보증의 인수와 실행을 위임받은 「뒤셀도르프」소재 독일 감정 및 신탁주식회사인 「트로이아르

바이트」에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제출한다.

신청시에 이미 위험부담이 시작되고 있는 경우, 보증은 인수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한다.

가. 모든 계약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의 복사본 및 계약시에 수취한 기타 서류, 단, 이 서류가 기술적인 세부사항에만 언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한다.

나. 위탁판매소에 반입하게 될 물품의 수량 및 가격 규모를 기재한 가항에 명시된 근거서류에 따라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신청인은 적절한 방법으로 배상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계속적으로 통용되는 보증신청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예상되는 채권의 최고액수까지 고려한다.

위탁판매소에 반입하게 된 보상 및 피손분에 대한 가격은 가항에 명시한 근거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로 표시한다.

다. 동독지역과 제3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의 신고가격에 운반비와 용역비가 포함됐는지 또는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근거도 밝혀야 한다.

라. 위탁판매소의 물품반입과 함께 보증신청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확인서

마. 신청인이 예견하는 위탁판매사업 전망에 대한 진술서

바. 양독간 교역규정에 따른 판매사업의 계약에 합당한 지불에 필요한 허가서류를 제출한다는 신청인의 확약서 및 용

### 역허가서의 번호 및 송하허가서의 번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상기 근거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미리 위탁판매인, 위탁판매의 대상품목, 계약체결의 시기, 판매소가 설치되는 기간, 외상이자, 외상보증 등 본질적인 계약 내용 요점을 나, 다 및 마 항을 참조하여 신고한다.

2. 교섭중인 위탁판매사업의 실현에 대비하여 제출된 신청에 대한 연방정부의 사전접수도 가능하다. 교섭중인 계약조건은 일일히 명시한다.
3. 신청에 대하여는 연방경제상과 연방재무상이 결정한다. 결정사항은 「트로이아르바이트」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4. 「트로이아르바이트」는 보증인수의 경우 연방회계기관이 서명한 보증확인서를 신청인에게 인도한다.
5. 계약변경은 연방정부가 동의할 경우 유효하다.

### 4. 비 용

#### 1. 보 증 금

보증기간 동안은 6개월마다 외상이자와는 관계없이 보증총액의 2.5%의 대금을 징수한다.

#### 2. 잠정인수에 대한 대금

연방정부의 잠정보증의 발급신청에 대한 업무수행의 경우 「트로이아르바이트」는 1회에 한하여 대금을 징수한다.

보증대상 물품가격과 대금채권에 있어 사전인수에 대한 대금은 다음과 같다.

1백만DM까지 = 500DM

5백만 " = 1,000 "

1천만 " = 2,000 "

5천만 " = 3,000 "

1 억 " = 4,000 "

1 억DM이상 = 5,000 "

이미 발급된 사전인수 허가에 대해 제차 연기신청할 경우 위에 열거한 금액의 한도까지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다.

### III. 계약이행보증의 위험에 대비한 부가보증

#### 1. 보증인수의 전제조건

모든 보증은 그것이 인도보증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제3자의 계약이행 보증이 관례를 벗어나지 않을 때에 한해서만 인수될 수 있다.

#### 2. 보증의 내용과 범위

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제3자가 피보증인(판매자/수탁자)에 대해 상환을 요구할 때 피보증인은 부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독일연방공화국 이외의 지역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 또는 독일연방공화국 이외의 국가가 취한 정치적 조치 또는 물품 반출을 통제하는 정치적 조치 등으로 인해,

가. 피보증인(판매자/수탁자)이 물품반출과 용역제공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제3자가 계약이행 보증을 요청했을 경우

나. 판매자/위탁자가 제3자에 대해 부당하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했을 경우

2. 제3자의 상황에 의거하여 피보증인이 보증을 받으면서 부여받은 의무는 보증이행의 근거가 된다.

## 9. 양독간교역의 반출가격 심사에 관한 행정지침 공시사항(1970. 9. 28)

연방 식량, 농림상과 합의하여 「프랑크푸르트」연방산업경제청과 식량, 임업청에 대하여 양독교역에서의 반입 가격심사에 대한 행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1970. 9. 28 「본」

연방경제상

### 양독간교역의 반출가격 심사에 관한 행정지침(가격심사 요령)

1. 가격심사 요령의 목적은 동독지역으로 부터의 반입이 그 가격 결정에 있어 이와 동종류이거나 동일목적으로 사용될 물품을 생산하는 서백림을 포함한 연방지역 생산부문에 대해 현저한 손해를 끼치는지의 여부 및 식량부문 시장에 현저한 장애를 유발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있다.
2. 가격심사절차의 취급기관은 반입허가서 발급에 관계하는 연방정부 관서이며 산업경제 부분에 대하여는 연방산업경제청이, 식량·농림부문에 대하여는 연방식량·농업청이 취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반입허가서 발급 및 가격결정 권한의 정부관서는 자체의 책임하에 구입가격의 물품을 심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관서에 가격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주정부 관서는 주의 특수한 경제이해가 관련될 경우 연방관서의 심사에 공동 참여한다. 주정부 관서의 공동작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가격심사 요령을 각주의 당해관서에 통보한다.

동독지역의 물품반입이 가격결정과 수량에 있어 당해 생산부문이나 이의 일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치거나 식량부문 시장에 현저한 장애를 유발한다고 경제청 및 주정부관서가 판단할 경우에는 전기 각 「청」에서 가격심사를 한다.

3. 가격심사 초에는 신고사항과 근거서류를 사전 심사한다. 이 경우 매상, 생산, 수출량에 대한 실적현황 및 가격반입 규모와 생산과의 관계 등 당해 생산부문이나 이의 일부에 대한 자료를 참조한다. 반입규모의 배분이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기타 시장자료에서 현저한 손해를 미칠 요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체없이 가격심사 절차를 중지한다. 각주의 당해관서와 이에 관련된 경제부처는 이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는다.

4. 사전심사의 결과에 따라 심사절차가 중지되지 않을 경우 연방관서는 지체없이 주심사(본격심사)에 들어간다. 이 심사를 위해 경제관청의 참여하에 합의된 반입가격과 공장도가격과 식량부문에서 서「베를린」을 포함한 연방지역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될 물품 또는 동종의 물품의 시장가격에 약간의 보조금이나 할인(할인, 기타 가격특혜), 운임 및 수입가격을 고려한다.

생산자의 비용가격과 각목가격은 가격비교에 있어 다른 근거 자료가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참조한다. 가격비교에 있어 상기한 조건외에도 동일한 거래등급에서의 반입자의 거래범위도 고려한다. 반입가격 결정에 있어 비교물품과의 이용가능성, 장비, 기술개발, 업무수행능력, 품질 또는 유행적인 유통성의 얼마간의 차이도 고려한다. 독립된 전문가의 참여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제한된다. 가격의 비교에 있어 연방지역내의 생산자로부터 구입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양독교역에서는 발생할지도 모를 비용과 위험부담은 반입가격에 가산해야 한다. 비특혜적인 반출, 지불조건, 「클레임」제기 및 보상의 곤란, 불규칙적이거나 자연될 공급의 위험부담 등 거래위험부담은 근년에는 반출자 측의 현저한 개선으로 그리 심하지 않게 되고 있다. 어느 정도의 가격차이는 일반적으로 동독지역 물품거래에 대한 전제가 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 심사에서는 비교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차이와, 반입규모의 증가에서 뚜렷한 손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와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인가를 결정한다. 반입가격의 시장 영향 조사에 있어서는 확인된 가격차이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생산가격의 전망과 당해 물품종류와 물품「그룹」의 생산 및 당해 물품분야에서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기타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주심사에서의 조사는 처음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한다. 최종 판단근거 자료가 충분치 않을 경우, 연방관서는 관련기업의 일부에 대한 설문형식으로 보충조사를 한다.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신빙성을 이유로 개개의 설문결과를 공포할 수 없다. 개개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방관서는 질의를 받은 기업의 응답을 토대로 한 개의 생산부문이나 이의 일부가 해당되는 범위내에서 기업의 다음과 같은 특징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 생산계획의 종합 및 물품종류와 물품「그룹」에 따른 생산가격의 백분비율
- 최근 3년간의 판매, 종업원수, 생산가격의 추이
- 당해물품과 물품「그룹」의 판매, 생산추이 및 최고 3년간의 가격등급
- 물품과 물품「그룹」의 공장도가격, 생산가격
- 동독지역 물품의 반입에 의한 자체생산 손실량 및 기타 특징  
이러한 내용의 결정에 있어 교역행위자는 질의를 받게 된다.  
거래행위자는 동독지역 물품반입, 연방지역 생산자의 물품반입, 당해 수입물자 물품반입의 범위내에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알려 주어야 한다.
- 반출근거 내지 반출방법
- 반출자의 반출조건
- 생산지 내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운송방법

—최종 반입의 수량, 종류, 구입가격

—가격 추이

관청의 공적인 조사는 각 경우에 대응하여 이 조사가 사실내용의 소명과 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될만큼 광범위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주심사 절차가 일정한 표본시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한다.

주심사가 끝나기전 일반적으로 당해 생산자와 조사대상이었던 거래행위자는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연방관서로부터 조사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을 수 있다.

5. 연방관서는 사실내용이 충분히 소명되고, 생산자와 거래행위자에 구두로 인지되거나 또는 당해 생산부분의 근거자료로부터 손해요소가 크지 않다고 밝혀질 경우 가격심사절차를 종결한다. 일반적으로 이 절차는 3개월내에 끝내며, 예외적으로 전문가가 참여할 경우 가격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격심사 절차의 종결후 연방관서는 이 결과를 연방 경제상,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식량·농림상, 각주의 당해관서 및 가격심사 절차에 참여했던 부서에 통보한다.

연방경제상의 일반허가서가 발급되는 생产业의 경우에 가격심사 결과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연방경제상은 적절한 조처(동독지역 관서에 대한 항의제기, 일반허가 또는 이와 비슷한 사례의 철회)를 취한다.

## 10. 각지역 경계지 세관을 통해 분할발송하는 동독으로 부터의 반입감독을 위한 회보 (1972. 12. 16)

반입허가서를 발급받거나 반입이 일반적으로 허가된 물품을 동독에서 분할발송 할 경우 반입자는 반입허가서 2호서식 또는 일반허가규정 3호에 따른 일반허가 물품반입에 대한 확약서를 세관에 일일히 제출할 수가 없다. (예; 분할발송이 각기 다른 경계지세관을 통해 동시에 반입되는 등) 이러한 경우 허가된 거래한도와 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독하기 위해 연방경제상과 합의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규정을 실시한다.

1. 반입자에 대해 지역적으로 관할권이 있는 지역세관 본청은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유보하에 반입자가 반입허가서 2호서식 또는 확약서 원본을 세관 본청에 예치하고 이의 사본을 경계선 세관에 예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반입자는 세관본청에 대해 이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세관본청은 허가서 또는 확약서가 완전 사용되지 않을 경우 허가서 또는 확약서에 따른 더 이상의 반입이 없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세관본청이나 경계선 세관에 통고한다는 의무를 반입자가 이행한다는 조건하에 이를 허용한다.

①국경세관이 파악하는데 필요한 운송완료신고에 대한 서식(제1항의 제3항)을 사용하도록 하고,

② 운송완료신고서 발송에 있어 자유로운 재량권을 갖도록 의무를 지운다.

2. 허용의 경우 세관본청은 예치된 2호서식에 사본의 수량과 반입자가 사본을 예치한 경계선 세관수를 기재한다. 세관본청은 세관본청의 허가서 사본을 경계선 세관에 발송한다. 또한 본청세관은 본 통고에 따른 반입에 있어 반입자가 절차상 이를 허용 받았다고 연방통계국에 통보한다.

3. 경계선 세관은 예치된 사본에 완료된 분할발송 사실을 기재한다. 경계선 세관은 운송의 결과를 허가서 2호서식 또는 확약서의 원본이 예치된 세관본청에 통보한다. 운송완료 통보에 대한 견본은 후첨하는 별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관서로부터 연방지역에서 이양서류와 함께 어느 세관에 분할발송이 위임될 경우에는 위임받은 경계선 세관은 운송각서가 첨부된 위임상의 첫서류를 받는 즉시 세관본청에 운송신고서를 예치한다.

더이상 반입될 물건이 없다는 반입자의 신고가 있은 후 또는 마지막 분할발송의 종료후 경계선 세관은 예치된 사본을 허가서 2호서식과 함께 세관본청으로 발송한다.

4. 세관본청은 예치된 허가서 2호서식과 확인서에 분할발송 완료 후 또는 더이상 발송될 물품이 없다는 반입자의 통보가 있은 뒤 발송완료 신고서와 경계선 세관으로부터 송달되는 사본을 2호서식 또는 확인서 원본이 첨부하여 연방통계국—

「베를린」분국—으로 발송한다.

반입허가서가 1970. 12. 16 양독간교역규정시행세칙Ⅱ 별지의  
전본서식에 따라 발급됐을 경우(1의 제1항) 또는 일반허가규  
정 제3호에 따라 확약서가 제출됐을 경우에는 본규정에 따른  
절차가 적용된다. 1958. 12. 22 양독간교역회람 제23호 제10  
조의 제3항에 대한 특별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1970.12.16 「본」

연방경제상

## 11. 비상업적인 지불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신용한도 규정에 관한 동독과의 협정 (1985. 7. 5)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대변인인 프리트헬름 오스트 차관은 1985년 7월 5일 본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1985년 7월 5일에 산업 및 무역 신탁사무소는 1986년부터 1990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신용한도를 8,500,000마르크 결제 단위에서 확정하는 새로운 신용한도 규정을 독일민주공화국의 외무성과 협정, 체결했다. 1982년 협정되었던 규정은 1985년말에 만기된다.

신용한도에 있어서는 내독무역의 범위내에서 이자없이 잔고 이상의 돈을 대출하는 신용이 문제이다.

이 신용한도는 30년 이상 내독무역의 원칙이 되고 있고, 과거에는 독일민주공화국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경제관계의 연속적인 확장을 관찰하면서 항상 재검토되어 확정되었다.

새로운 신용한도규정과 관련하여 독일민주공화국과 무역에 있어서 의견일치가 이루어졌다. 즉, 무역은 15,000,000마르크의 규모로 전년에 비해 1985년에 이르러서는 1/4분기에 10% 가량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90년까지 무역은 계속 증가일로

에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공급구조가 생산재의 경우—80년 초이래 현저히 쇠퇴한 후—독일민주공화국의 구매증가로 계속 개선되고 있다. 고대하던 무역의 상승발전에 직면하여 신용한도는 이런 무역의 상승에 상응하여 책정되었다. 신용한도가 1986년에서 1990년까지 아마 수입의 10%보다 적은 액수일 것이다. 신용한도가 이런 무역에 특별히 강한 흥미를 가지는 우리의 기업을 위하여 내독무역에서 생산재 공업의 경우에만 안정보장이 된 가능한 손실의 위험을 줄이는 일도 일어났다. 어쨌든 1985년 7월 5일에, 동독이 1986년부터 1990년 까지 매년 70,000,000마르크의 불입금을 폐쇄계정대체로 제공하는 문제가 비상업적인 지불거래의 범위에서 독일민주공화국의 재무성과 체결되었다. 1979년이래 독일민주공화국은 이를 위해 매년 50,000,000마르크를, 1983년이래 매년 60,000,000마르크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불입금은 대체지불이 양쪽 방향에서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필연적이다. 이 때문에 마르크구좌를 가지고 독일민주공화국의 마르크를 지불한 독일민주공화국 거주자의 대체가능성은 우리의 경우에 권리자에 의해서 보다 훨씬 적게 요구받는다는 것이 이에 대한 원인이다. 도중에 대체가능성은 독일민주공화국내의 마르크 구좌로부터 대체하여 마르크로 지불할 수 있다.

70,000,000마르크의 불입금은 독일민주공화국에게는 외환지불을 의미한다. 이 외환지불이 우리의 시민들에게 (연금생활자,

원호대상자, 빈민구제혜택자 그리고 미성년자, 고아) 차후 5년동안 3개월마다 600마르크씩 독일민주공화국내의 그들의 예금으로부터 대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지금까지 매년 대략 300,000명이 이런 가능성을 이용했다.

과거에 차감계산량에 부족액이 생겼었기 때문에 독일민주공화국으로부터의 대체에 대한 법안들이 지금까지 6개월에 이르도록까지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독에 의한 불입금의 상승은 이런 “대기실”을 차후에 없애고 그것으로 해당 인적 범위를 위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올해 말에 원유와 석탄·역청탄의 공급 및 광유산출물의 구입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략의 협정이 만료된다. 그 때문에 산업 및 무역신탁사무소(TSI)와 독일민주공화국 무역성간에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동안 새로운 원칙 위주의 외곽협정이 체결된다.

이런 새로운 외곽조약은 공급과 구입을 위한 기본량을 매년 계획한다. 이런 기본량을 능가한 양에 대해서는 매년—또한 생산재의 범위에서 독일민주공화국의 구입을 고려하여—4월 30일까지 토의된다.

독일민주공화국은 이미 석탄·역청탄, 코우크스에 대한 추가적인 필요량의 수입을 우선적으로 연방정부의 소득에 의해 지불할 것을 선언했다.

— 신용한도 —

베를린 협정의 VIII조항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베를린 협정의 VIII조항에 맞는 금액은 1986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매년 850,000,000마르크의 불입금으로 확정되었다. 1990년 신용한도 속행에 대하여 토의될 것이다.

1985년 8월 12일의 특정 경우에 있어서 연금대체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재무장관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재무장관간의 1974년 4월 25일자 협정을 위한 1978년 11월 16일자 의정서의 1985년 7월 5일의 문서교환 고시—

1985년 7월 5일 베를린에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위임자간의 문서교환에 의해 특정의 경우에 있어서 예금의 대체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재무장관사이의 1974년 4월 25일자 협정을 위해 1978년 11월 16일자 의정서 각서의 속행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정은 1985년 7월 5일에 그 효력을 발하게 된다. 협정은 다음에 공개된다.

이런 고시는 1982년 8월 13일의 고시와 연결된다.

1985년 8월 12일, 본.

재무장관과 한스 티트마이어박사

#### <관련서신>

발신인 : 독일연방공화국의 상주대표부 대표

국무장관 한스 오토 브로이티감박사

베를린 1985년 7월 5일

수신인 : 독일민주공화국 재무부

국무장관 발터 지게르트박사  
베를린

친애하는 지게르트박사께,

본인은 귀하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삼가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1. 특정경우에 있어 예금대체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재무장관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재무장관간의(1974년 4월 25일) 협정을 위한 1978년 11월 16일의 의정서 각서의 1번에서 3번까지의 해당규정을 1986년부터 1990년의 기간동안 속행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1986년부터 1990년 동안의 기간동안 독일민주공화국이 매년 70,000,000마르크를 특정경우에 있어 예금의 대체를 위하여 매년 1/4분기 초에 동일한 비율의 금액으로 현 손익청산계정에 불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으로부터 독일연방공화국으로의 대체는 독일연방공화국으로 부터 독일민주공화국으로의 대체를 매년 대략 70,000,000마르크 가량 초과하는 것을 계속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 규정의 시행에 대한 회담은 1990년에 속행될 것입니다.

경의를 표하며  
브로이티감박사

답신

독일민주공화국 재무성차관

베를린 1985년 7월 5일

독일연방공화국의 상주대표부 대표

한스 오트 브로이티감박사

베를린

친애하는 브로이티감박사께,

본인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삼가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1. 특정의 경우에 있어 예금의 대체에 대한 독일민주공화국 재무장관과 독일연방공화국 재무장관간의(1974년 4월 25일) 협정을 위한 1978년 11월 16일의 의정서 각서의 1번에서 3번 까지의 해당규정을 1986년부터 1990년 기간동안 속행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1986년부터 1990년 기간동안 독일민주공화국이 매년 70,000,000마르크를 특정의 경우에 있어 예금의 대체를 위하여 현 손익청산계정에 불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으로부터 독일연방공화국으로의 대체는 독일연방공화국으로부터 독일민주공화국으로의 대체를 매년 대략 70,000,000마르크 가량 초과하는 것을 계속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 규정의 시행에 대한 회담은 1990년에 속행될 것입니다.

경의를 표하며

지게르트박사

## 12. 통과무역의 개선에 관한 협정(1985. 8. 15)

독일연방공화국의 교통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베를린과 히르쉬베르크간 남쪽 경유 고속도로에서의 그리고 드라이린데의 국경통과지점으로 가는 베를린 순환도로의, 부분적으로 위험을 내재한 막대한 교통으로 인한 손해는 독일 민주공화국에 의해, 1986년에서 1987년 사이에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선되었다. 이것은 독일 민주공화국의 교통부와 독일연방공화국의 교통부간의 협정으로 비로소 해결될 수 있었다. 1985년 8월 15일 알프레트 바이어 차관과 하인쯔 슈미트에 의해 본에서 서명된 문서교환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협정되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베를린 순환도로의 압쓰바이크 드레비쓰지점과 드라이린데의 국경통과지점 사이의 약 5km에 걸친 부분 구역을 포함한 히르쉬베르크의 국경통과지점과 트리프티스 사이의 유통고속도로의 약 41km에 달하는, 또한 훨씬 짧은 구간의 근본적인 복구를 실행한다.

통과무역을 지금까지보다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독일민주공화국은 그밖에 히르쉬베르크의 국경통과지점 전 지역에 있는 교통망을 확장시킨다.

협정에서 독일민주공화국의 지역에 우세하게 걸쳐 있는 잘레

강 다리의 차도에 대한 근본적인 복구는 독일연방공화국의 회사에서 행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체결될 수 있었다. 이때 도로공사에 의해 청부가 이루어진다.

막대한 손해와 지방의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독일민주공화국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토목공사에 독일연방공화국은 148,000,000마르크의 공정가격으로 참여한다. 청구된 지불의 의무는 입법단체에 의한 예산법상의 전권위임의 유보하에 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채굴기계와 장비를 30,000,000마르크의 가격으로 사들일 것이다. 내독무역은 이런 금액으로 확대되었다. 서독지역과 서베를린 간의 통과무역지역은 베를린-히트쉬베르크의 이용으로 불충분하다. 1985년 8월 15일의 협정에서 근본적인 복구와 개선이 계획된 선로구역은 베를린 통과무역에 의해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해진 건축규범이 베를린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우리의 경제와 노동시장은 존넨란트지역에서 이익을 얻는다. 근본적인 복구로 남독과 베를린 사이의 무역에서 증가되고 있는 손해는 제거된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여기에 제시된 특별한 상황에 근거하여 안전보장에 대한 관심으로써, 그리고 무역을 수월하게 하고자 근본적인 복구에 비용을 지불하는데 참가할 것을 확정하였다. 그렇지만 독일민주공화국이 통과협정에 근거한 그 의무의 실행에 상응하여 통과통로를 독일민주공화국의 비용을 들여 정

비하여 줄 것을 독일연방공화국은 요구하였다.

1985년 8월 15일의 협정은 독일민주공화국과의 공동작업의 여타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1985년 8월 15일의 협정은 모스크바에서 1985년 3월 12일에 독일연방공화국 수상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서기장 호네커가 대화에 의해 양독 관계를 진행 시켰던 활동에 관련되며, 그리고 인간의 복지를 위해 보다 광범위한 결과를 자아냈던 활동에 관련된다.

건축상의 규정과 재정상의 업무에 관한 문서교환

1985년 8월 15일 베를린

<관련서신>

독일민주공화국 교통부장관

독일연방공화국 교통부 차관, 알프레트 바이어씨

친애하는 바이어씨!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본인은 귀하에게 다음의 사항을 삼가 알리는 바입니다.

1.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통과무역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건축상의 규정을 귀하에게 오늘 넘겨진 업무명세서에 맞게 실행하게 될 것이다.

— 히르쉬베르크 근교의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국경 243.4km와 225.0km지점 근방에 있는 연결지점  
쉬라이쓰간 고속도로의 부분적인 복구

- 225.0km지점 근방에 있는 연결지점 쉬라이쓰와 202.3km지점 근방에 있는 트리프티스 연결지점간 고속도로의 부분적인 복구
- 히르쉬베르크의 국경통과지점 교통망의 확대
- 압쓰바이크 드레비쓰와 베를린과 독일민주공화국의 경계 사이에 위치한 고속도로 부분차도의 근본복구(0.2-4.0km와 0.2-5.8km까지)
- 드레비쓰의 국경통과지점 근방의 16.0km와 16.2km지점 근방에 있는 서베를린과 동독의 국경사이의 근본 복구

2년 4개월의 준비기간과 건축기간이 계획되었다.

1985년 9월 15일에 준비되었던 건설작업은 1986년 1월 15일에 시작된다.

2.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148,000,000 마르크의 비용으로 1번에서 언급된 건설시행에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부터 출발한다. 언급된 금액은 공정가격으로 이해된다.

3. 히르쉬베르크 근방의 잘레강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차도의 근본복구는 양도한 업무명세서에 맞게 독일민주공화국 교통부의 발송과 부담의 원칙 위에서 그리고 독일연방공화국의 자국 회사를 통한 독일연방공화국 교통부의 지불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다. 계획과 건설의 실행은 독일민주공화국 교통부와 위임자와 국가시공관리에 의해 재가, 관리, 검사를 받는다.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위에 언급된 사업의 실행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행지역중의 한 부분을 상황에 맞도록 일시적으로 이용할 것을 허락한다.

기술적인 세목 및 무역실행의 필요한 조처는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이 교통부의 위임자에 의해 그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진다.

경의를 포하며,  
슈미트박사

독일연방공화국 교통부차관

독일민주공화국 교통부장관

하인쯔 슈미트박사

친애하는 슈미트씨!

본인은 어제의 귀하의 서신에 관련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위임을 받고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1971년 11월 17일의 협정을 참조로 하여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 사이의 시민 및 양질의 물건의 통과무역에 관해 귀하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의 건설사업의 실행을 위한 오

늘의 귀하에 서신에 상응하여 통과무역의 개선을 고려한 148,000,000마르크의 금액을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당국에 지불할 것입니다. 건설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쉬라이쓰와 히르쉬베르크 225.0km 근방에 있는 연결지점 및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경지역에 있는 243.4km지점 사이 고속도로의 부분적인 복구, 쉬라이쓰의 225.0km 근처의 연결지점 트리프티스의 202.3km 근처의 연결지점사이 고속도로의 부분적인 복구
- 히르쉬베르크의 국경통과지점 교통망의 확대
- 압쯔바이크 드레비쓰와 독일민주공화국과 서베를린 사이의 고속도로의 부분적인 복구(0.2~4.0km까지, 0.2km~5.8km까지)
- 드레비쓰의 국경통과지점 근방의 16.0km와 16.2km지점 근방에 있는 독일민주공화국과 서베를린 국경사이 고속도로의 부분적 복구

2. 148,000,000마르크에 달하는 금액이 다음의 할당액으로 지불됩니다.

- 1986년 1월 15일의 건설작업 개시때 23,000,000마르크를 지불
- 1986년 6월 30일과 1987년 6월 30일에 그때마다 각기 50,00,000마르크씩 지불
- 1988년 1월 15일 25,000,000마르크를 지불, 그렇지만 건설

작업의 종결때는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1986년부터 건설작업의 진행이 순조롭게 행해지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협정에 할부금액은 독일의 해외무역은행을 위해 독일민주공화국에 의해 정해진 독일연방공화국 은행의 구좌에 입금될 것입니다.

3. 히르쉬베르크 근처의 잘레강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다리의 근본적인 복구는 귀하의 오늘 서신에 언급된 전제조건하에서 우리측의 회사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의를 표하며

바이어

#### <서명에 즈음한 성명>

구두를 통한 성명에서 독일민주공화국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했다:

- 독일민주공화국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30,000,000마르크의 가격으로 건설기계와 건설장비를 독일연방공화국으로부터 추가로 사들일 것이다. 지불은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국립은행 “S”구좌로 이루어진다.
- 실행명세서에 의해 뜻밖의 변화가 필요해진 경우에는 양측의 위임기간의 대화가 선행된다.
- 이것은 계획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변화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의 실행시 뜻밖에 필요한 것

으로서 증명된 정확한 규범을 위하여 필요하다.

-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교통부에 건설사업의 진행에 대하여 통보한다.

#### <실행명세서>

히르쉬베르크와 트리프티스 연결지점 근처 국경선 사이의 근본적으로 잘 복구된 고속도로는 연장 41.1km이다. 고속도로는 24m너비의 횡단면을 유지하며 24cm두께의 시멘트로 되어 있다. 근본 곡구는 내부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전체 두께는 대략 70cm정도이다. 부분적으로 위협이 있는 재료는 교환할 수 있다.

고속도로 구역에서 47개의 고속도로 다리가 있다. 이 47개의 고속도로 다리중 36개가 기본적으로 정비될 수 있고 대략 11개가 부분적으로 복구될 수 있다. 고속도로 양쪽에 있는 3개의 현 공원자리에 새로운 차도를 내기 위해 보존되고 있고 새롭게 조성된다. 공원자는 새로 설계된 5개의 연결자리에 새로운 차도수준과 동등하게 조성할 수 있다.

고속도로 차도에는 두꺼운 방어용 판자와 2~3km거리마다 비상호출기 등이 세워질 것이다.

히르쉬베르크의 국경통과지점에서 베를린 방향의 교통망은 550m 길이로, 3.50~10.00m 너비의 구간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서 4~7m의 제방을 쌓는 일이 필요하다.

드레비츠와 드라이린데 사이의 국경통과지점 그리고 베를린

순환도로 암쓰바이크 드레비쓰지점 및 드레비쓰의 국경통과지점 사이의 지역 내에서 10.6km의 방향차도가 근본적으로 복구된다. 고속도로는 어쨌든 24m의 폭이며 시멘트 콘크리트차도는 26cm의 두께를 유지한다. 정해진 구역에서 역청모양의 건설방법이 예견된다. 암쓰바이크와 드레비쓰의 국경통과지점 사이에 7개의 고속도로 다리가 정리된다. 2개의 다리건설에서 교량구축부분은 부분적으로 복구된다. 현행의 좁은 통로는 어쨌든 정리할 수 있다. 고속도로 양쪽에 위치한 공원자리는 확장된다. 일치하는 도로구간은 보호벽이 설치되어 있고 측면지역에 있는 2~3km의 구간에는 비상호출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히르쉬베르크 근교의 잘레강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다리의 경우 교량각을 포함한 현 콘크리트 다리가 측량되면서 복구될 수 있다. 동시에 강철로 된 보호벽이 설치된다.

각각의 부분지역에서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매 방향마다 차량통행은 계속된다.

# **제 3 편 사회·문화·체육 ·과학교류 분야**



## 1. 보건분야에 대한 동·서독 정부간 협정 (1974. 4. 25)

### A. 협 정 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아래와 같은 취지하에 이 협정을 체결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양국의 국민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응하여 건강유지와 촉진 및 재생의 의미를 인식하고,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보건분야에 대한 관계조정이 유럽의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공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이 협정은 1972년 12월 21일의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 기본조약의 정신과 일치하여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정상적 선린관계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제 1 조 이 협정의 목적은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1972년 12월 21일의 기본조약에 대한 추가의정서 II 절 제6 항을 시행함에 있어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에 양 협정체결 당사국들이 가입한 국제협정을 통하여 보건분야의 협력문제가 조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규정하는데 있다. 협정체약 당사국들은 국제적 관행에 따라 이를 완화하며 가능한 한 합목적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협력을 촉진한다.

제 2 조 협정당사국들은 전염성 질병의 예방과 퇴치문제에 관하여 해당부처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한다는데 합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건강규정(Internationale Gesundheitsvorschrift)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신고와 병행하여 실시되는 정보교환과 국제보건기구에 규정되어 있는 질병이 유입될 경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 경계선에서 이행되는 보건조치에 대한 합의
2. 각국에 신고의무가 있는 질병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의 교환
3. 전염병 상태의 특수성과 특히 경계선 통행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교환
4. 전염성 질환과 성병, 혹은 전염성 폐결핵의 보균자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 또는 다른 나라에 체재하고 있거나 체재했던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정보

양국은 정보교환 및 이에 적용되는 보건조치의 규모와 관련하여 각국에서 적용되는 법률규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 3 조 ① 다른 나라로부터 입국하여 여행하는 사람은 체재기간 중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상 질병의 정도에 따라 외래진료 및 입원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모든 위급한 질병과 사고, 과거 질병의 악화, 특히 만성병과 악화방지 혹은 통증순화에 필요한 의료지원

등이 모두 포함한다.

②외래진료 및 입원치료 지원은 의사 및 치과의사의 구호와 의사가 지정한 병원입원 등을 총망라한다. 또한 의사처방에 의한 의약품보급(분실 혹은 파괴시 보충을 포함하여), 정형외과 지원품, 안경, 보청기, 치아, 그리고 여행자의 체재중 의사가 그에게 필요불가결하다고 처방·확인한 이에 준하는 보조물품, 그 필요성을 의사가 증명하는 병원수송, 경계선을 통과하는 환자수송의 규정상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경계선까지의 수송 등이 포함된다. 이 협정에서 따로 합의되지 않는 한 치유요양, 온천장요양, 휴양 및 요양원체재는 제외된다.

③모든 생명위험상태와 질병악화로 자신이 통지할 수 없는 상태와 사망의 경우 협정체약 당사자들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각국에서 통용되는 방법에 따라 의료상 통보를 취하고 상주대표부에도 통지한다.

④미성년자에 대한 진료허가가 필요할 때 협정당사자들은 법정 대리인의 허가 취득을 가능한 한 최대로 간소화한다. 협정당사자들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당 상주대표부를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⑤계속적인 진료에 필요한 담당의사의 보고서를 지참하거나 발송할 의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협정당사자는 이것이 가능도록 노력한다.

⑥급박한 의료상 이유에서 첫번째 진찰을 받은 시설에서 재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협정당사자는 가능한 한 이를 허용한다.

제 4 조 ①협정당사자는 주어진 가능성의 범위안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의학적 특별진료와 요양에 관한 문제를 처리할 수 없을 때 협정당사국중 일방의 특별요청으로 동 문제를 합의한다.

②특별진료비 및 요양비는 협정당사자간 증명된 실적에 기초하여 청산된다.

③각각의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 협정 제7조에 지정된 대표자들간에 합의된다.

제 5 조 협정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의료품 및 이와 동일한 원료, 조제품(의약품), 의료소모품, 의료기술 생산품, 그리고 정보교환에 대해 합의한다.

①의약품과 의료소모품 및 의료기술 생산품의 상호간 상업적 공급은 이러한 생산품에 대한 수입국가의 도입 법규정과 그 국가에서 통용되는 유통규정 및 상업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협정 당사자들은 의약품 허용과 그 분석적, 약물적 및 임상적 조사에 요구되는 사항과 생산자 및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적용되는 요청사항에 대하여 통보한다.

②협정당사자들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당부처의 요청에 따라 재해가 발생했을 때 특별한 의약품, 의료소모품과 의료기술 생산품을 제공하며 지원한다.

③ 협정당사자들은 경계선을 넘는 여행에 있어 자신의 건강상태 때문에 개인적 필요를 위한 경우, 또는 방문국내에서 의사로서의 직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증명될 때, 사용할 적당한 양의 의약품과 의료소모품 및 의료기술 생산품을 휴대할 수 있다.

④ 협정당사자들은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특별히 중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통보한다.

제 6 조 협정당사자들은 마약과 홍분제 및 습관성약품 오용분야에 대한 협력 및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교환에 관하여 합의한다.

1. 홍분제 혹은 습관성 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원료와 조제품
2. 마약과 홍분제 및 기타 습관성 약품으로 오용될 수 있는 약물의 종류 및 이의 만연

제 7 조 ①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보건장관과 독일민주공화국의 보건장관은 이 협정 이행에 필요한 상세한 조치규정을 세우고 동 협정의 적용과 해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을 임명한다. 상주대표부의 소관업무는 변화되지 않는다. 위원들은 양 협정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그들은 직원들을 동반할 수 있다.

② 위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제1항 제2문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양국정부에 위임한다.

협정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의해 이루어진 규정을 저촉하는 조치를 합의적인 조정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8조 1971년 9월 3일자 4대국 협정에 따라 이 협정은 확정된 절차와 더불어 서베를린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서베를린시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보건문제에 관한 합의사항은 이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다.

제9조 ①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발효후 5년이 만료하기전 3개월내에 폐기를 통지할 수 있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한스·케을그 볼터스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안데리제 퇴트만
--------------------------------	------------------------------

## B.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간 보건분야의 협정에 대한 협의서 각서

### — 제3조 제1항에 대한 의정서 각서 —

다른 나라의 입국자 가운데 제3국의 국민이라는 것은 그가 조약당사국으로부터 3개월이상의 체재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제3국과 다른 규정을 맷지 않았거나 또한 맷지않고 있는 한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다.

### — 제3조 제2항에 대한 의정서 각서 —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경계선 통과

환자수송시 독일연방공화국 적십자사 본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적십자사 본부간에 직접적 장거리 전보 혹은 장거리 전화연결이 이루어져 환자가 지체없이 직접 차를 바꿔탈 수 있도록 인수시간과 경계선 통과장소를 약속할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환자인수시 이에 가장 유리한 경계선 통과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에 환자수송차량이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경계선을 통과할 수 있다.

－ 제3조에 대한 의정서 각서－

의료구호비 청산방법에 대하여 장차 규정을 세운다는 유보조전하에 각 협정당사자는 자기국가에서 발생하는 의료건에 대해 비용을 부담한다.

－ 제3조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성명－

제3조 제2항의 범위내에서 제공된 의료지원의 일환으로 의사 및 치과의사가 행한 업무에 대한 보상은 지역질병 보험회사가 그 지역에서 의사업 혹은 치과의사업을 개업해서 그 가입자에게 지불하는 것 만큼을 지불한다. 청구권자는 제1항에 명시된 사례를 받으며 의료 및 치과의 진료용의가 있는 의사와 치료의사를 임의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 입원하는 의료지원의 범위내에서 일반적인 병원에서의 업무실적이 허용된다.

－ 제4조에 대한 의정서 각서－

업무실적 청산에서 발생하는 초과잔고는 독일연방은행에 개설된 독일민주공화국 국가은행의 「S구좌」를 통하여 청산된다.

— 제5조에 대한 의정서 각서 —

긴급하고 의사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계속 진료 혹은 재진료에 한해 특수한 경우에는 접수국내에서 소통이 허가되거나 또는 그 속에서 생산되지 않는 종류의 의약품을 발송할 수 있다. 이때 발송국에서 등록된 의사의 처방을 첨부하여 적절한 양을 발송한다.

이 비상업성 의약품 소통은 국내법에 따라 해당부서(약국)에서 취급한다. 발송은 의사가 처방에 기재한 약품에 한하며 다른 물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2. 부양비지급의 대체에 관한 동·서독 재무장관간 합의문서(1974. 4. 25)

### A. 합의문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 기본관계에 관한 1972년 12월 21일자 조약 제7조에 대한 추가의정서 II 절 제11항에 따라 쌍방은 다음과 같은 부분 규정을 제정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제 1 조 1974년 6월 1일부터 상호주의 원칙아래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독일민주공화국으로,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으로부터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양국의 의무자와 권리자간 다음에 기술된 지급에 대한 대체가 허용된다.

1. 가족법에 근거한 부양비 지급의무를 이행키 위한 일
2. 법률의 배상 의무규정에 따라 인명손해의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그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할 경우 및 다른 규정에 따라 정리되지 않은 손해배상을 지급할 경우. 이 규정은 물적피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체는 배상해야 할 의무 총액수와 은행예치금액의 한도내에서 허용된다. 계속적인 지급은 의무자의 의뢰에 따라, 은행예치금으로부터의 지불은 구좌소지자의 의뢰에 따라 그에게 의뢰 지급된다.

제 2 조 대체를 통하여 발생하는 초과잔고는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제 3 조 ①이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지금은 독일연방은행과  
독일민주공화국 국가은행의 청산방법을 통하여만 이루어진다.  
②독일연방은행과 독일민주공화국 국가은행은 이 합의문서에  
서 확정된 대체업무의 기술적인 진행문제를 조정한다.

제 4 조 1971년 9월 3일자 4대국협정에 따라 합의사항은 확정된  
절차와 함께 (서)베를린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제 5 조 이 합의문서는 5년간 유효하다. 협정만료전 3개월 이내  
에 폐지를 통고하지 않는 한 매1년씩 연장된다.  
이 합의문서는 서명과 공시에 발효된다.

시행:본에서, 1974년 4월 25일 2통의 원본작성

독일연방공화국 장관을 대리하여 칼 오트	재무성독일민주공화국 재무성 장관을 대리하여 흘스트 카민스키
-----------------------------	--

#### B. 1974년 4월 25일자 합의문서에 대한 인정서 각서

1. 성년자에 대한 부양비지급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원의  
결정으로 허용한다. 기타의 경우 피부양자소속 국가의 해당당국  
및 국가기관이 그 필요성을 증명할 때는 가족법에 근거하여 성  
년자의 부양비 지급은 매년 200마르크(독일마르크 혹은 독일민  
주공화국 마르크)까지 허용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에 거주  
하는 부양의무자가 그 이상의 부양비를 대체하려 할 때 경우에

따라 허가한다는 것을 유보한다.

2. 쌍방은 이 합의문서에 언급된 지급의무를 대체의 방식으로  
이행하는 원칙을 기초로 한다. 현재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  
공화국의 외환법 규정을 바탕으로 한 여타 조치 가능성은 이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 쌍방은 이에 추가하여 담당자에게 타방  
에서 고려되는 외환법상 규정을 통보한다.

3. 쌍방은 합의문서 발효시까지 독일민주공화국의 권리자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지급되는 부양비를 권리자의 새로  
운 신청없이 독일연방은행에 개설된 독일민주공화국 국가은행  
구좌에 입금한다.

4. 쌍방은 합의문서 발효와 동시에 독일연방공화국 청소년성  
과 독일민주공화국 청소년구호 담당부서간의 청산과정을 중지  
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5. 합의문서 제2조에 따른 대체에서 발생하는 초과잔고는 독  
일연방은행에 개설된 독일민주공화국 국가은행 「S구좌」를 통하  
여 정리한다.

6. 비상업성지급 및 청산소통의 집행에 있어 수혜자에게 1독  
일마르크는 1독일민주공화국마르크로, 1독일민주공화국마르크는  
1독일연방공화국 마르크로 환산한다.

### C. 독일연방은행과 독일민주공화국 국가은행간의 부양비지급 대체에 관한 은행간 합의문서

부양비 및 특정한 손해배상금 지급 대체(차후 부양비지급이라 표시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독일연방공화국 재무성장관과 독일민주공화국 재무성장관간 1974년 4월 25일 체결된 전문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 A. 계정구좌 운영

1. 이 지급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산구좌를 개설 한다.

「독일연방은행에서 독일민주공화국 국가은행을 대신하여 독일 민주공화국 국가은행 부양비 지급」이라는 표시를 한 독일마르크

「독일민주공화국 국가은행에서 독일연방은행을 대신하여 독일연방은행 부양비 지급」이라는 표시를 한 마르크 정산구좌

2. 정산구좌에는 이자와 수수료가 없다.
3. 다른 은행에 원본으로 서명해 놓은 서명권자가 정산구좌를 활용할 권리를 갖는다.
4. 정산구좌에 등재된 지급이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은 지급 신청용지에 찍힌 확인도장이나 일부인에 의하여 증명된다.

#### B. 부양비 지급

5. 부양비 지급은 특별한 견본인쇄로 독일연방은행 혹은 독일

민주공화국 국가은행에 제시된다. 등록업무와 결산보고의 허용 아래 독일연방은행 혹은 독일민주공화국 국가은행은 부양비 지급 총금액을 매일 각기 다른 은행의 청산구좌에 등재한다. 지급견본 인쇄는 독일연방은행에서 4부, 독일민주공화국 국가은행에서 3부 작성하여 각기 다른 은행으로 발급한다. 지급견본 인쇄의 구성은 상호간 협의하에서 이루어진다.

6. 독일연방은행과 독일민주공화국 국가은행은 금융 및 신용 기관이 전문분야 합의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부양비 지급 의뢰를 행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7. 독일연방은행과 독일민주공화국 국가은행은 전문분야 합의 제1조에 따라 모든 부양비 지급의뢰를 한다.

### C. 적용기한

8. 은행간 합의문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그 적용기간은 전문분야 합의의 적용기간에 준한다.

독일연방은행을 대표하여      독일민주공화국 국가은행을 대표하여

프라스만 박사

에버트 박사

### 3. 독일체육연맹과 독일체조체육연맹간 체육관계 규정에 관한 의정서(1974. 5. 8)

독일체육연맹과 독일체조체육연맹은 다음 사실을 확정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1. 쌍방은 매년 양 체육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대표자들이 수립하고 독일체육연맹 회장과 독일체조체육연맹 회장이 확인하는 체육행사 개최계획에 합의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2. 쌍방은 체육관계를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체육단체의 규정과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서베를린에 관해서는 1971년 9월 3일자 4대국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규정할 것이다.
3. 쌍방은 재정문제 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 a) 피초청국은 행사장까지의 여행에 소요되는 왕복여비 및 수하물과 체육기재를 수송하는데 드는 경비를 부담한다.
- b) 초청국은 합의된 참가자수에 대하여 체재일 동안의 호텔경비와 식비를 부담하며 1인당 매일 10독일마르크(DM) 혹은 10마르크(M)의 용돈을 지급한다.

수차에 걸친 행사는의 경우 초청측은 처음부터 마지막 행사장 소까지의 국내 수송비를 부담한다.

독일체육연맹을 대표하여

한스 그메린 회장 서리

독일체조체육연맹을 대표하여

만프레트 에발트

#### 4. 문화 협정(1986. 5. 6)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 1972년 12월 21일에 체결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의 관계에 관한 조약의 토대 위에서,
- 상호간에 문화적·사회적 생활에 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보다 나은 상호이해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 그럼으로써 평화정착과 진장완화에 기여한다는 인식 속에서,
-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합의된 규정들을 마드리드(Madrid)에서 합의된 사항들과 관련시켜, 적절하게 고려함으로써 실행한다는 결심하에,
- 문화협력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려는 희망에 따라 이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제 1 조 협정당사국들은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내에서 양측의 이해에 기초하여 문화, 예술, 교양, 학문분야에서의 협력이나 이것들과 연관된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협력이 해당기관이나 관청, 단체들사이에서, 또한(이 협력이 그때 그때마다 자국의 법질서에 상응하고 조약의 실현을 위한 것과 관계되며) 각 조직체들, 연합체들 및 문화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협력은 그때 그때마다 자국의 법률규정과 조화시켜서, 또한

쌍방이나 여러 측면의 법률규정과 조화시켜서, 특히 이 협정에서 거론된 협정당사국들의 의무에 관한 전문(前文)에서 완성된다.

협정당사국들을 이러한 테두리내에서 협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전제조건들을 승인한다.

제 2 조 협정당사국들은 학교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 및 고등 교육, 전문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분야나, 학문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다음의 내용을 장려한다.

1. 경험의 교환, 학문상 정보, 회의나 회담에서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학자들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한다.
2. 강연, 연구 및 학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학자들을 교환 한다.
3. 학생들의 교환, 특히 대학원생들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젊은 학자들을 교환한다.
4. 전문문헌, 강의자료, 전시자료 및 교수도구 등을 교환한다.  
제2호 및 제3호에서 게기된 활동들의 실천을 위해서는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다.

제 3 조 협정당사국들은 조형미술, 연극, 영화, 음악, 문학, 언어 발달, 박물학 및 기념물보호 등의 분야나 이와 인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다음의 내용들을 장려한다.

1. 문화, 예술 등 상이한 영역에 있어서 여러 동기에 따라, 예술가들 및 문화창조자들로 구성된 대표단들이 서로 접촉하

고 교류한다.

2. 문화나 예술 분야에 있어 양측의 행사준비 및 다양한 행사 개최에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3. 문화단체나 예술단체들 사이에 있어 출판물이나 정보자료 들을 교환한다.
4. 갖가지 종류의 행사개최를 통한 예술활동 및 문화활동의 교류
5. 영화상영, 중요한 영화제나 국제적인 영화제에의 참가, 이런 맥락에서의 영화제작에의 참여, 또한 영화잡지분야에서 해당기관들 사이의 협조 등, 이런 활동들을 포함하여 영화 분야에 있어서 각 단체들, 기업 및 조직체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
6. 박물학분야에서의 협력, 전시회의 교류 및 유물(대여)의 허용
7. 고고학적인 기념물보호를 포함한 기념물보호 단체들사이의 협력

제 4 조 협정당사국들은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된 예술가들 및 악단들의 상업적인 초청공연을 장려하고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내에서 영화부문에서의 상업적 협력 및 제작활동을 포함하여 예술과 문화의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상업적 관계를 촉진시킨다.

제 5 조 협정당사국들은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내에서 출판분야

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다음의 내용들을 장려한다.

1. 상업적인 문헌교류의 테두리내에서 출판물 보급 및 수입 확대
2. 어느 한쪽이나, 쌍방간에 있어 중요한 정보상의 이익 및 학문상의 이익이 되는 출판물의 간행
3. 인가에 대한 양측의 위탁 확대
4. 서적전본시장 개최에의 참여

제 6 조 협정당사국들은 도서관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1. 국제적인 출판물 교류의 확대
  2. 다양한 협력의 테두리내에서 독일어권 국가들을 위해 문헌 목록을 작성하는 규칙을 세우고 또 그것을 개정하는데 대한 협력 확대 협정당사국들은 다음의 내용들을 통한 협력을 촉진시킨다.
    - ① 대출교류의 확대
    - ② 참고서지 및 그밖의 정보자료들의 교환
    - ③ 도서관분야에 있어서 비상업적 전시회의 교류
    - ④ 정보자료교류, 특히 국제관계의 전문회의에 참여
- 제 7 조 협정당사국들의 문서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키며 다음 사항들을 장려한다.
1. 자국의 법률규정에 근거한 공개적인 문서자료의 교류
  2. 문서담당 행정기관을 통한 문서복사물의 교류
  3. 전문문헌의 교류와 문서자료에 관해 알리는 것에 대한 승인

4. 우선적으로 복사물의 형태로, 기록문서의 준비를 통한 전시
5. 정보교류, 특히 국제관계의 중요한 전문회의에 참여

제 8 조 협정당사국들은 해당 국가기관들은 중요한 회의나 회담, 토론회, 축제, 기념행사(기념축제행사) 및 학술회의 등에 대해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며 기존의 이해에 기초하여 학자들, 예술창조자들,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종류의 행사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제 9 조 협정당사국들은 라디오나 텔레비전부분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해당기관들에 대해 이러한 목적의 협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제 10 조 협정당사국들은 체육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제 11 조 협정당사국들은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내에서 성인이나 학생들을 포함한 청년들의 교류발전을 장려한다.

제 12 조 협정당사국들은 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재정적인 규정들을 포함하여 그때 그때마다 2년 동안의 사업계획에 합의를 본다.

그러나 협정의 목표에는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문화사업계획속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조치들에 대한 장려가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 13 조 1971년 9월 3일의 4대국협정에 대응하여, 문화협정은 결정된 처리규정에 합의함으로써 서베를린까지 연장, 적용된다.

제 14 조 이 협정은 5년 동안 유효하다. 협정당사국들중 어느 한

쪽이라도 최소한 협정만기 6개월 전에 문서로 통고하지 않으면 이 협정의 유효성은 그때마다 3년씩 연장된다.

제15조 협정을 합의하는 시점에 대해 상호통첩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는 내독간의 전제가 있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1986년 5월 6일 베를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대표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대표

한스 오토 브로이티감

쿠르트 니어

## 5. 문화협정에 따른 동·서독 공동사업계획서 (1989. 12. 19)

동서독간 문화, 학술, 교육분야의 관계를 발전시킬 희망에 따라 86. 5. 6 동서독 정부간에 체결된 문화협정 제12조에 부응하는 90/91년도를 위한 다음과 같은 공동사업계획을 유첨으로 결정할 것을 합의한다.

### 제 1 조 문화 및 예술

① 양측은 매년 자료수집 및 연구체류와 초빙과정 및 경험교환을 포함한 예술 및 학술행사 참석을 위해 장기 1,200일, 단기 360일간의 체류 기간으로 소장 신진학자와 대학생을 포함한 문화 및 예술분야 종사자를 교환한다.

② 대표적인 전시회의 교환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전시회 부대 행사(심포지움, 세미나, 강연회등)에 10일간 교환할 수 있다. 이와 무관하게 대표적인 전시회와 중요문화계획의 개막식에는 공식사절 4명을 교환할 수 있다.

③ 양측은 동독 국립영화보관소와 서독 연방문서보관소/영화보관소간의 영화복원 및 재생의 협력을 지원하며 영화주간 행사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양측은 동독 국립영화보관소와 서독 연방문서보관소/영화보관소간의 약정체결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④ 양측은 유적보전분야의 협력을 위한 약정체결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⑤ 양측은 90년도와 91년도 슬레스빅 홀스타인 축제에 참여하는 동독의 상업적 연주단을 지원한다. 양측은 동독출신 예술가의 축제오케스트라 협연을 지원하며 그 관할범위내에서 이 오케스트라의 동독내 등단 가능성을 검토한다.

⑥ 양측은 베를린 음악대학과 쾰른 음악대학간의 협력을 지원한다.

⑦ 양측은 바이마르소재 국립 독일고전문학 연구소와 그 기념관측과 쉴러박물관, 마아박소재 독일문학서고, 볼펜뷔텔소재 헤어촉 아우구스트도서관, 프랑크푸르트 암마인과 뒤셀도로프 소재 괴테박물관측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연구와 협력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특히 문헌학, 독일고전 작가문헌학, 문서보관자료의 정리, 하리그립 캐슬러연구, 인셀 문서보관소, 괴테에게 쓰여진 서한문 일체의 연대별 출간의 정리, 헤어더 서한문, 괴테의 일기문과 서한문 연구를 지원한다.

⑧ 양측은 이력 및 문헌학, 대백과사전, 독일문학의 정리를 지원한다.

- 그라피전(베를린)
- 발탁히 비엔날에(로스톡)
- 유럽음악제(90, 라스타트, 91, 북헨)
- 국제민속음악제(비트부억)

## 제2조 학술 및 연구

- ① 양측은 매년 신진 소장학자와 대학생을 포함한 학술 및 연구분야 종사자를 단기연수는 총 220일간, 장기연수는 총 1,300일간의 체류기간동안 교환한다.
- ② 양측은 다음 대학간의 자매결연 가능성을 검토한다.
  - 괴팅겐대학과 예나대학
  - 칼스루에 공대와 라이프찌히 공대

## 제3조 교 육

- ① 양측은 매년 86.5.6에 체결된 양독간 문화협정 제2조와 제11조에 근거하는 가능성의 범위내에서 단기연수는 290일, 장기연수는 70일간 신진 소장학자와 대학생을 포함한 교육분야 종사자를 교환한다.
- ② 양측은 동독 교육학 아카데미와 독일 국제교육학 연구소간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영재교육개발 및 일반교육에 관한 문제에 대해 협력한다.
- ③ 양측은 선정된 초중고교간의 자매결연 가능성을 검토한다.
- ④ 양측은 청소년연구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한다.
- ⑤ 양측은 제11조의 범위내에서 실습생교환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 ⑥ 제2조②와 제3조⑤에 열거된 사업의 실현은 제3조①과 제4조④의 할당범위내에서 수행된다.

#### 제 4 조 기타분야의 협력

① 양측은 문서보관분야의 협력을 지원하며 양측은 매년 단기 30일, 장기 300일간 체류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인원을 교환한다.

② 양측은 그 가능성에 부응하여 학자와 전문가의 국제전문회의, 세미나와 학술, 연구, 교육, 문서보관 분야의 전문박람회 참석을 지원한다.

그 실현은 각각 제1조①, 제2조①, 제3조①, 제4조①, 제4조④의 할당범위내에서 수행된다.

③ 양측은 전문서적 교환을 지원한다. 그 방법은 별도로 합의 한다.

④ 서독측은 동독측에게 제1조①, 제2조①, 제3조①, 제4조①에 합의된 교환할당에 추가하여 연간 200회의 단기체류(각각 30일까지)와 100회의 장기체류(각각 180일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 5 조 개별사업계획

1990/91년도 개별사업계획의 실현은 사업계획목록(유첨)에 따라 각각 지명된 상담대상자를 통해 수행된다.

#### 제 6 조 일반적 기본조건

① 공식사절단 교환에 있어서 일정계획안은 상주대표부를 통해 파견국 해당기구 내지 해당기관에게 전달된다.

② 자유할당범위내 연구체류에 관한 신청서의 상호전달은 동

독 외무부와 서독 상주대표부를 통해 수행된다. 인원선발은 파견자측이 결정한다.

학자, 전문가, 대학생 교환의 업무협조는 서독측에서는 본소재 독일 학술교류재단이 맡는다.

③사업계획 수행에 요구되는 정보는 적시에 전달되거나 교환되어야 하며 제6조②에 따른 신청서는 다음분기를 위해 체류분기의 제1주 첫날까지 제출해야 한다(최소기간)

④제6조②에 따른 신청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거지)
- 직장, 직위
- 학술전공분야
- 방문계획 및 업무계획 전의서
- 예정체류 또는 예비체류의 시점과 기간

⑤전시회의 파견 및 초청의 근거는 해당 대여대상자간에 체결될 대여 계약이다.

## 제 7 조 재정적 기본조건

①인원교환시 재정적 책임은 다음과 같다.

### 가. 파견자측

- 초청국내 최초 및 최종체류지 까지의 교통비

### 나. 초청자측

- 체류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여행비

- 1개월 미만 체류시 적절한 숙소비 및 일일비용 보장  
동독내 일일비용은 40동독 마르크, 서독내 일일비용은 60DM
- 1개월 이상 체류시 월간지원비용

동독내

교 수	최 고	1,200	동독마르크
강 사	"	1,050	"
박사소지학자	"	950	"
박사과정생	"	850	"
박사가 아닌 신진학자	"	600	"
대학생	"	480	"

적절한 무료숙소가 준비되어 있음

서독내

정교수	최 고	3,500	DM
대학강사	"	3,000	"
박사소지학자, 조교, 의사시보 기타	"	2,700	"
박사과정생등	"	2,000	"
대학생	"	1,500	"

- 합의된 방문계획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 수고비 지불  
(예 : 초청과정, 초빙강연)

- 약정된 범위내에서 학술기관 및 기구의 사용비용

②장학생 교환시 초청자측은 규정에 관계없이 학비면제

③전시회와 그에 준한 행사수행시 재정적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파견자측

- 최초 체류지까지의 운송비
- 전시회계획, 준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및 지역내 경찰보호 비용)

나. 초청자측

- 전시회가 개최되는 국내에서의 운송비 및 행선지까지의 반송비(제3국으로 계속운송시 행선지까지의 발송비용만 포함)
- 전시회에 필요한 장소비, 전시회와 관련된 기술적, 조직적 비용, 홍보비, 약정된 전시회 수행원의 체류비용
- 전시회목록 비용 및 그 인쇄비용(단 다른약정이 없는 한) 파견자측은 초청자측에게 목록자료(문장, 사진등)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전시회목록의 발행부수, 분량, 장절 및 그 발행일은 사업계획 당사자간의 별도 의견합의를 필요로 한다. 동독측이 전시회목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초청자측은 이를 구입할 수 있다. 서독측이 전시회목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그 판매이익을 서독의 외국인 외환계좌 B에 대변기입할 수 있다.
- 대여품목에 대한 그 상설전시장으로부터 대여국가 내에서의 거치기간 및 대여품목의 상설전시장까지의 반

송기간중의 전적인 책임을 진다. 피대여자는 대여품목에 대한 상기한 책임에 근거하여 보증하거나 파손시 손해배상 지불의 용의선언과 함께 안전과 보험이 내포되어 있는 국가적 보증선언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 ④ 행사와 관련된 모든 수입은 다른 약정이 없는한 초청자측에 둔다.

1989.12.19 드레스덴에서 독일어로 원본 2부 작성

서독정부를 대신하여

프란츠 베어텔레

동독정부를 대신하여

쿠어트 니어

## 6. 서독 Hof시와 동독 Plauen시간 도시 자매결연에 관한 합의서(1987. 8. 4)

Hof시와 Plauen시는 상부상조하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를 보전하며, 긴장완화와 신뢰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선린우호관계 정립에 기여하기 위한 염원하에

- 1972.12.12자 동·서독 기본조약의 정신으로
- 1975.8.1자 CSCE헬싱키 최종의정서와 1983.9.6자 마드리드 후속문서의 정신으로
- 기존 동·서독간 체결된 조약과 협정을 양도시가 공동협력을 통해 실현해 나가고 지원하려는 노력으로

다음과 같은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Hof시와 Plauen시는 서로 도시 자매결연을 맺는다. 양측은 양측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치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 의견교환을 하고, 우리 시대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호 기여하는 바를 각자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러한 대화의 장에 양측주민들을 참여시킬 의무가 있다.

Hof시와 Plauen시와 그 주민들에게는 평화적인 삶과 성공적인 공동협력을 지향하는 제 국가들의 노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 양측 자매결연도시들의 관할권과 가능성 안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행해진다.

제 2 조 ① 양 도시는 양 도시 발전사, 그리고 양 도시 주민들의 생활을 서로 이해하기 위해 모든 사회계층 및 사회집단에 속한 주민들의 우호적인 접촉과 만남, 관계를 조직화하고 지원한다. 특히 양 도시 청소년들 간의 접촉에 중점이 두어진다.

② 1988년에는

- 양측 도시에서 거행되는 문화 및 체육행사에 관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 양측 도시가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인 문서를 이용하여 각 도시, 지역사 연구결과를 상호 교환하고, 공표하며
- 상대편지역에 각 도시 특산품을 진열하는 전시관을 설치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제 3 조 양측은 아래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활동과 관련된 주제에 관해 정기적인 정보 및 의견교환에 합의한다.

- 도시개혁, 도시정비, 주택문제, 유적관리
- 상하수 처리시설, 근거리 교통, 보건·사회 분야를 포함한 도시 서비스 행정
- 여가활동, 휴양, 스포츠
- 청소년 지원
- 예술과 문화
- 환경 및 자연보호

제 4 조 ①이 합의서는 무기한 유효하다.

② 이 합의는 Hof시의 시의회와 Plauen시의 시대표자회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③ 합의서에 의해 양측에 부여된 임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연간 실행계획을 작성한다.
- ④ 양측은 각 도시 주민들에게 합의된 사항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
- ⑤ 1987. 8. 4일자 의정서 주석 또한 이 합의서의 일부이다.

Hof시 시장

Dr. Henn

Plauen시 시장

Dr. Martin

---

Hof시와 Plauen시 간의 자매결연 합의서 의정서 주석(1987.8.4)

---

1. 양측에 의해 합의된 모든 조치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취해지고, 재정보조된다.
2. 방문단과 그 일원에 대한 여행경비는 방문단을 보내는 측에서 부담한다.

문화행사라 할지라도 공연진행 비용과 사례금은 초청자측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방문단의 체제비와 문화·체육행사 요원들의 체제비는 초청자측이 부담한다.

초청자측은 초청자측 관계인들과 방문단이 공동으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비용분담문제와 관련하여 이와 다른 규정은 양측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3. 양측 도시의 활동과 발전상에 관한 정보자료는 무료로 제공된다.
4. Plauen시는 독일체조체육연맹(DTSB)과, Hof시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체육과 스포츠를 장려한다.
5. 양측은 청소년교류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Plauen시는 동독 청소년여행사와 공동으로 청소년 교류를 장려한다.
6. 다음 해의 연간 실행계획은 매년 4/4분기에 양측 시장들 간에 서명된다. 양측은 실행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될 내용에 관해 9월말까지 실무진 간에 협의한다.

---

#### Hof시와 Plauen시 간의 1988년 연간 실행계획

---

1. Plauen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주민들의 이니셔티브와 기여에 관한 세미나 개최 : 1988. 9월
2. Hof시는 양 도시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Hof시의 발전 사에 관한 전시회를 Plauen시 시청에서 개최 : 1988. 4월
3. Plauen시는 Plauen시의 사회·문화적인 생활 발전상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Hof시에서 전시회를 개최함 : 1988. 10월
4. Hof시는 Plauen시립극장에서 Hof시 교향악단이 봄맞이 음악회를 개최토록 함 : 1988. 5월
5. Plauen시립극장 교향악단은 Hof시에서 공연을 개최함 :

1988. 11월

6. Hof시 노동자들이 노조의 공동결정권과 기타 노동문제에 관하여 연구·토의하는데 대표단을 초청함 : 1988. 6월
7. 30명 범위 내에서 청소년 여행단을 조직하여 상호 교환하고, 상호 방문도시에서 여러 날을 머물도록 한다.
8. Hof시와 Plauen시에서 각각 한 종목의 체육경기를 개최한다.

## 7.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동·서독 정부간 협정(1987. 9. 8)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 1972.12.21 동서독 기본조약을 근거로,
- 1975.8.1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선언을 상기하면서,
- 양독간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이 상호 이익이 되며, 인류복  
지를 계발·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소망에서,
- 또한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국제적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 협정을 체결함에 합의하였다.

제 1 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상호 이  
익이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고 그에  
부응하는 계획과 대책을 협의하고 그 수행을 지원한다.

제 2 조 ① 협력은 자연과학과 공학 및 정신과학과 사회과학 전  
분야를 포함하며 전자의 경우 특히 자연과학과 공학에 관련  
된 제문제를 포함한다.

② 양국 정부는 학술적, 기술적 연구 및 개발의 결과에 대한  
정보와 출판물을 교환할 것과 그와 같은 목적하에 자료보관  
센터간의 협력을 규정할 것에 합의한다.

③ 양국 정부는 과학·기술협력의 수행상 서독당사자와 동독당  
사자가 상업적 소유권 보호 및 그 권한 집행을 위한 필요 규

정이 국가간 입법의 범위내에서 조화있게 제정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때 당사자들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작성한 권고사항을 근거로 한다.

제 3 조 ①개별분야 또는 개별계획에 관한 협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로부터 당사자로 지명된 당해 기구간 개별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양국 정부는 서로 개별적 합의 발효에 관한 동의여부를 통보하며, 그 개별적 합의사항 수행을 지원한다.

제 4 조 ①이 협정의 수행을 위해 위원회가 구성되며 그 위원은 각국 정부가 임명한다.

②위원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 협력분야 및 협력주제 선정

나. 협력당사자 임명

다. 제3조에 의거한 개별합의의 수행을 지원하고 그 내용 구성에 대한 총체적 조언 및 과학·기술협력상의 상업적 권리보호 조언

라. 학자교환을 포함한 협력의 조직상 방법과 재정적 세부 사항을 조화있게 설명

마. 진행중인 협력업무의 수행을 지원하고 조정

바. 협력의 현황과 진행사항에 관하여 보고

③위원회는 개별문제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전문감정인단을 동원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어느 일방 정부의 요구하에 최소 1년 1회, 각 사  
절단장이 합의한 장소에서 회동한다.

⑤ 위원회는 운영세칙을 작성한다.

제 5 조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가. 정보교환

나. 심포지움, 회의, 전시회와 같은 학술행사의 조직과 그 수행  
다. 자료수집, 연수, 교수, 연구목적의 학자 및 전문감정인의 교환

라. 연구계획의 합의 및 그 수행

마. 과학 기자재를 비롯한 연구자료의 상호 비치

제 6 조 ① 협력국의 실정법규와 기타 규정의 일치하에 수행된다.

② 전 제1항에 열거한 전제조건의 범위내에서 양국정부는 기  
구, 연구소, 기업체, 공장, 학자간의 접촉을 고무하고 그 발전  
을 지원한다.

③ 합의된 분야의 협력 수행을 위해 각국 정부는 실정법규와  
기타 규정과의 일치하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전제조건  
을 조성한다.

제 7 조 1971년 9월 3일의 4대국협정에 준하여 이 협정은 확정  
된 방법과 함께 서베를린지역에 확대, 적용된다.

제 8 조 ① 이 협정은 조인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0년간이며, 그 이후 협정유효기간 종료  
6개월전에 서면해약이 없는 한 1년씩 연장된다.

② 이 협정의 효력상실과 그때까지 체결된 개별합의는 무관하다. 이와 같은 개별합의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 협정의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1987. 9. 8, 본에서 독일어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

서독정부를 대표하여

하인즈 리센후버

동독정부를 대표하여

해얼베이트 바이즈



## **제4편 우편·통신·방송교류 분야**



## 1. 동·서독간 우편 및 전신교류에서 상호 취급 업무에 대한 결산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문서(1970. 4. 29)

### 1. 합의서

독일연방공화국 체신성과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성은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상호 우편 및 전신교류에 관한 전반적 규제가 아직 없다는 양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쌍방은 양독간의 상호 우편·전신교류를 최소한 현존하는 규모내에서 가능한 정도로 실시한다.

제2조 ① 1967년 1월 1일부터 상호 취급한 업무실적에 대한 보상은 총액청산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상기 ①항의 총액청산규정은 본 합의서의 부속문서인 추가의정서에 규정된다.

제3조 1966년 12월 31일까지 양독간의 우편과 전신교류에서 상호 취급한 업무실적에 대한 총액보상은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을 통해 처리한다.

제4조 쌍방은 제1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양독간의 상호 우편·전신교류 업무의 개선을 위해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

화국간에 추가 장거리전화 및 텔레스선을 가설한 의무를 진다.

제5조 이 합의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이 합의서는 2 통을 작성한다.

1970년 4월 29일, 본

독일연방공화국 체신성을  
대표하여  
에크너박사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성을  
대표하여  
렘케박사

## 2. 부 속 문 서

합의서 제2조 제2항에 따른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 우편 및 전신교류에서의 상호 취급업무에 대한 결산 및 청산에 대한 의정서

제1조 ①상호간의 체신 및 전신교류에서 수행된 업무에 대해서 매년 총괄적으로 청산하며, 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만료한다.  
②독일연방우편국은 독일우편국에서 매년 취급한 업무에 대해 총 3,000만 마르크를 보상한다.  
③계산서의 작성과 송달절차는 생략한다.

제2조 ①제1조 제2항에 따라 합의된 총액은 우선 1973년 말까지 유효하다. 이 규정은 합의한 어느 일방이 총액의 변경을 희망하여 이 총액의 액수에 있어 교류규모에 합당하지 않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이 증명은 매 당해년도 6월 30일까지, 즉 총액의 변경이 확립되는 시기의 6개월전에

제시되어야 한다.

②변경된 청산총액은 총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다음해가 시작되면 유효하게 된다. 이 시기까지는 그 때까지 통용되던 합의서가 유효하다.

제3조 1967년, 1968년 및 1969년에 대한 지불총액은 지금까지 독일연방우편국이 지불한 22,016,100마르크를 산정해서 이 합의서 체결후 14일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4조 지불하게 될 금액은 독일연방은행 세부계정/3-4003호의 독일민주공화국 국립은행 계정을 통해서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성 앞으로 지불한다.

## 2. 동·서독 체신성 대표간 협상에 관한 의정서 (1971. 9. 30)

1. 1971년 9월 30일부터 독일연방공화국 체신성대표와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성대표가 협상을 진행하였다.

독일연방공화국 체신성대표단은 동 국장 에크너(Eckner)박사에 의해 인솔되었다.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성대표단은 동 국장 렘케(Lemke)박사에 의해 인솔되었다.

협상결과 다음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2.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성이 1966년 12월 31일까지 수행한 초과업무에 대한 보상을 독일연방공화국은 일시불 총액청산으로 이행한다. 보상할 상기기간의 총액은 2억 5천만 마르크에 달한다.

이 금액은 1971년 12월 5일까지 독일연방은행구좌 4003/UK3에 있는 독일민주공화국 국가은행 계정을 통해서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성 앞으로 송금된다.

①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성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우리는 상기 총액청산속에 독일우편국의 대 서베를린시 당국에 대한 채권도 함께 청산될 것을 요구한다.

3.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성대표는 독일민주공화국이 우편과 전신

교류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통고 한다.

- ① 1971년 12월 31일까지 장거리전화를 위해 전방향으로 30회선을 더 가설하고 반자동식 운영방식을 도입한다.
  - ② 1972년 3월 31일까지 장거리전화 16회선이 증설된다.
  - ③ 전신교류는 1971년 12월 31일까지 자동화된다. 이를 위해 전방향으로 45회선을 증설한다.
  - ④ 1972년 6월 30일까지 텔레스교류의 회선수는 전방으로 12선이 증설된다.
  - ⑤ 주파수 이용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 ⑥ 완전자동식 장거리전화교류는 1974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회선이 개설된다.
  - ⑦ 신규 전신시설을 설치운영한다.(장거리전화를 위한 지향성방송교류는 1973년 12월 31일까지, 방송주파수케이블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 ⑧ 무선 중계방송의 질을 개선하고 회로를 변경한다.
  - ⑨ 서한, 수하물 및 소포의 배달시간을 단축한다.
  - ⑩ 독일연방공화국 체신성의 대표단장은 제2.1항과 제3항에서 표명된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성 대표단장의 성명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4.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에 지향성 칼라텔레비전 방송구간 설치에 관한 합의서가 조인되었다.

5.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성대표는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우편을 통해 선물을 발송하는데 따른 발송규정은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내법적 규제의 대상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 긍정적인 규제를 목적으로 계속 협의한다.

6.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성대표는 독일민주공화국이 서베를린 지역의 우편과 전신교류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통고한다.

① 1971년 12월 15일까지 장거리 전화를 위해 60회선이 전방향으로 증설되고 이로써 총 150회선이 운영된다.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우편국은 부분적으로 완전자동식 운영방식으로 개선한다.

② 전신교류는 1971년 12월 31일까지 자동화된다. 이를 위하여 전방향으로 12회선까지 증설된다.

③ 1971년 12월 31일까지 텔레스 교류를 위해 전방향으로 6회선이 추가로 운영된다.

④ 주파수의 이용은 협의·조정한다.

⑤ 장거리전화교류는 완전자동화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회선과 케이블 연결공사는 1974년 12월 31일까지 시공된다.

7. 독일연방공화국 체신성의 대표단장은 제6항에서 언급된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성 대표단장의 통고를 인지하고 승인한다.

8. 쌍방대표단의 단장은 이 조치가 상기기간까지 이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기술적 조치에 필요한 대화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양측의 대표가 의정서에 조인한 후 1주이내에 갖는다.

9.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우편 및 전신교류에 있어 상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지불 및 청산에 관해 1970년 4월 29일 본에서 이루어진 총액합의는 우선적으로 1976년까지 적용된다.

1971년 9월 30일, 베를린

독일연방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성을 대표하여

체신성을 대표하여

에크너박사

렘 캐박사

### 3. 동·서독간 지향성「칼라」 방송구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1971. 9. 30)

독일연방공화국 체신성과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성은 다음과 같은 협정에 합의하였다.

제1조 ①갈토브(독일연방공화국)방송국과 데크베데(독일민주공화국) 방송국사이에 지향성 무선방송구간을 설치하여 1972년 6월 1일부터 운영한다.

②방송설비는 FM 960/7500지향성 시스템으로 한다(시공자는 지멘스사).

③지향성 방송통신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사항(주파수, 예비스위칭시스템, 업무용회선 등)은 지향성 구간의 계획 및 실시를 위임받은 쌍방의 기관간에 합의한다.

제2조 ①갈토브 – 데크베데 구간에 실시될 방송용량은 다음과 같다.

1. 영상 및 음향중계시설 및 100%의 예비시설을 갖춘 두개의 텔레비전 통신망

2. 쌍방의 중계소간 및 상근자가 주재하는 쌍방의 최단거리의 텔레비전 중계소간의 한개의 업무용 회선

②중계체널용 자동 예비스위칭(Ersatzschaltung)은 독일연방체신국 영역내에서는 중간주파대로 하고 독일체신국 영역내

에서는 기본주파대(Basisband)로 한다.

제3조 ① 중계방송채널의 중계파라미터는 쌍방의 위임기관을 통해서 합의한다.

② 영상 및 음향통신의 운영 및 측정은 쌍방의 위임기관에 의해서 금후 합의되는 협력원칙에 따라 유로비전(Eurovision) 및 인터비전(Intervision)의 규정을 참고해서 실시한다.

※ Eurovision~서구내 방송교류 협력권

Intervision~동구내 방송교류 협력권

제4조 ① 본 지향성 구간은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프로그램 교류뿐 아니라 유로비전과 인터비전간에 합의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기관간의 프로그램 교류를 위해서도 이용된다.

② 인터비전 방송망을 위한 지향성 방송구간의 연장 스위칭은 독일민주공화국내의 데크베데－베를린간 방송대를 경유해서 실시한다.

갈토브 중계소(독일연방공화국)를 경유하는 지향성 구간의 연장 스위칭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또는 함부르크의 유로비전 연속방송망을 연결해서 실시한다.

제5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은 다음의 기관에 위임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측 :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소재, 독일연방체신국의 중앙텔레비전 및 라디오 중계소
2. 독일민주공화국측 : 베를린 소재, 독일체신국 중앙방송국

제6조 ①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며 서명후 즉시 발효한다. 이 협정문은 2부를 작성한다.

②이 협정의 수정, 보완은 쌍방의 합의와 문서화에 의해서 이 루어진다. 문서화된 것은 이 협정의 부속문서로 첨부된다.

제7조 ①이 협정의 만료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공포 또는 상호 통고로써 이루어진다.

②이 협정은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문서로 통고한지 6개월 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1971년 9월 30일, 베를린

## 4. 우편 및 전신제도 분야에 있어서 동·서독 정부간 협정(1976. 3. 30)

### A. 협정문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이 협정과 더불어 1972년 12월 21일의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 기본조약과 일치하게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정상적 선린관계의 발전을 촉진하려고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더 나아가 범세계적 국제협력을 위한 기여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권리와 의무의 바탕위에서 세계우편연맹과 국제통신연맹의 회원국으로서의 관계수립을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 제1장 조약대상, 법적 기초

#### 제1조(조약대상) ①이 협정의 대상은

1.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상호 우편 및 전신 교류
2. 이 협정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우편 및 전신 통과
3. 다자간 협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위내의 주파수 사용의 조절이다.

② 양측은 일반적·국제적 관행에 일치하여 우편 및 전신교류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단순하고 유효하게 이 교류는 실시된다.

제2조(법적 기초) ① 상호 우편 및 전신교류, 우편 및 전신통과와 주파수 사용의 조절에는 세계우편연맹과 국제전신조약의 법규에 근거하여 체결된 동 협정의 규정 및 독일연방공화국 우편·전신행정 당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우편·전신행정 당국간에 체결된 합의규정이 적용된다.

② 이 협정과 우편·전신행정 당국간의 합의에 어떤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유효하다.

- 세계우편연맹 정관
- 세계우편조약
- 가격표기 우편협정
- 소포협정
- 국제전신조약
- 해당 실행, 법규, 최종 의정서 및 추가의정서

## 제2장 상호 우편교류

제3조(발송방식, 실적) ① 상호 우편교류는

1. 편지발송(편지, 우편엽서, 인쇄물, 맹인용 물품발송, 소형소포)
2. 가격표기 우편
3. 일반소포와 가격표기 소포

② 발송규정에 따른 통제는 우편·전신행정 당국간에 합의되어 진다.

③ 우편·전신행정 당국은 상호간 우편교류를 위하여 각기 책정한 금액을 상호 전달한다.

모든 우편물은 발송인에 의하여 완전히 우표가 붙여져야 한다. 수교에 있어서 발송품에 부과되는 요금 및 추가요금은 발송자에게 부과되어질 수 없다.

④ 상호 우편교류에 있어서 우편물의 발송이 공로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편·전신행정 당국간에 세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

제4조(우편물의 취급) ① 우편물 및 우편교류관계의 처리, 취급 및 교환은 우편 및 전신행정 당국의 교류량 및 기술적, 경제적 가능성의 고려하에 유효적절하며 단순하게 이루어진다. 상세한 내용은 우편 및 통신행정 당국에 의하여 합의된다.

② 세관 카아드와 관세내용 명세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제5조(수교, 조회) ① 우편물은 각기 국내규정에 따라 수교된다.

② 조사의뢰는 발송우체국간에 직접 교환된다.

#### 제4장 우편·전신통화

제8조(제3국과의 우편 및 전신교류) 양측은 제3국과의 우편 및 전신교류를 그의 국가영역내에서 보장하며 기술적, 경제적

가능성의 범위내에서 필수적인 통과업무를 수행한다.

#### 제9조(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의 우편 및 전신교류)

- ①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의 우편 및 전신교류는 독일민주공화국 국토를 통하여 이 교류에 관한 기존 협정과의 일치하에 가능한 한 간단하고 유효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 ②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의 육로를 통한 우편물 발송은 독일민주공화국을 경유하여 합의된 통행로전역에서 이루어진다. 이 교류의 실시를 위한 세목은 이것이 1971년 12월 17일자의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의 시민과 화물을 위한 통행교류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협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우편 및 전신행정 당국사이에 합의된다.
- ③독일연방공화국의 우편 및 전신행정 당국이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의 전신교류를 위하여 통과로를 사용할 의도를 가졌을 때에는 독일민주공화국의 우편 및 전신행정 당국에 의하여 그 기술적, 경제적 가능성에 상응하여 이에 필요한 전선, 단파, 중계로가 주선된다.

#### 제5장 주파수 사용의 조절

#### 제10조(주파수 사용의 조절) ①우편 및 전신행정 당국은 상호간에 장애가 예상되며 양측의 조절이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무선주파수 스펙트럼과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무선주파수의 사용을 조절한다.

②고려의 대상이 되는 주파수 영역에 있어서 주파수 사용의 조절절차는 우편 및 전신행정 당국간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 제6장 실적의 청산

제11조(상호 우편 및 전신교류의 청산) 상호 우편 및 전신교류에서 행해진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지불한다. 총액 지불에 대해서는 이 협정에 의한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우편 및 전신교류에서 상호간에 수행한 업적에 대한 계산과 청산에 대한 1970년 4월 29일자의 합의규정이 채택된다.

제12조(제3국과의 우편 및 전신교류에 있어서의 청산) ①우편 및 전신 행정당국이 제3국과의 우편 및 전신교류에 있어서 타 우편당국을 위하여 수행하거나 또는 중계해 주는 업적은 이 협정 제2조에서 언급된 국제조약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청산된다.

②상세한 내용은 우편 및 전신행정 당국간에 합의된다. 이것 이 유효적절하다는 판정이 나면 특정한 교류관계를 위하여 총액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의 우편 및 전신교류에 있

- 어서의 청산) ①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의 우편교류에 있어서 독일민주공화국의 우편 및 전신행정 당국이 주선한 업적은 총액 지불된다.
- ②독일민주공화국의 우편 및 전신행정 당국에 의하여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의 전신교류를 위하여 수행된 업무에 대하여는 전신·전화가 국제협의회의 추천과 일치하는 기본관계하에서 청산되어 진다.
- ③상세한 내용은 우편·전신 행정당국에 의하여 합의된다.

## 제7장 보증, 요금반송

### 제14조(보증근거) 우편 및 전신행정 당국은

1. 등기우편물의 분실
2. 가격표기 우편, 일반소포와 가격표기 소포의 분실, 훼손, 약탈등의 경우에 보증한다.

### 제15조(우편교류에 있어서 배상과 요금반환) ①우편물의 발송자만이 배상요구를 할 수 있다. 수신인에 대한 배상요구의 양도는 있을 수 없다. 배상업무는 발송당국에 의하여 배상에 대한 보증 및 절차법상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 ②요금반환에는 제1항 규정이 적용된다.

- ③우편 및 전신 행정당국은 지체없이

1. 보증근거에 해당되지 않고 수교되지 않는 우편물의 분실을

상호 간에 전달해야 한다.

2. 각기 다른 우편 및 전신 행정당국의 요구에 따라 분실되었거나, 훼손 또는 도난당한 우편물에 대하여 정보를 주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우편 및 전신 행정당국에 의하여 합의된다.

제16조(전신교류에 있어서의 요금반환) ①전신교류에 있어서의 요금반환에는 제15조 제1항이 적용된다.

- ②우편 및 전신행정당국은 지체없이 요금반환의 요구판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제8장 종 결 규 정

제17조(목록과 서류의 교환) 우편 및 전신행정당국은 우편 및 전신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목록 및 기초서류를 교환한다.

제18조(기존합의의 인수) 이 협정을 통해서

- 1971년 9월 30일자의 독일연방공화국의 우편·전신성의 대표단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우편·전신성의 대표단이 가진 회담의 의정서
- 1971년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지향성 칼리발송구간의 설치와 가동에 대한 합의서 등이 인수되었다.

제19조(협정의 실시) 이 협정의 기초위에서 성립된 합의 및

이 협정의 적용 또는 해석의 문제 등을 우편 및 전신행정 당국에 의하여 조정된다.

제20조(공고) 이 협정 및 이 협정의 기본위에서 금일 체결된 행정협정은 양측에 의하여 세계우편연맹의 국제사무소와 국제통신연맹의 사무총장에게 각기 정본 한 부씩을 송부한다.

제21조(서베를린에의 확대) ① 1971년 9월 3일자의 4대국협정에 부응하여 이 협정 및 금일 우편교류, 전신교류, 우편·전신통과에 있어서의 실적청산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 체신성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체신성 사이에 체결된 행정협정은 확정된 절차와 일치하여 서베를린까지 확대 유효하다.

② 서베를린의 해당관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해당기관간의 조정된 우편 전신제도에 관한 문제들은 언급되지 않는다.

제22조(유효기간) ①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체결되었다.

② 이 협정은 양측의 동의에 의해 변경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③ 이 협정은 양측간에 각서교환이 합의되어지는 시점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1976년 3월 30일 본에서 독일어로 된 원본 2통이 작성되었다.

독일연방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독일민주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엘리아스

칼로브

## B. 우편교류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체신성과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성간의 행정협정

1976년 3월 30일자의 우편과 전신분야에 있어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협정의 실시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다.

### 제1장 상호 우편교류

#### 제1조(발송규정) ①상호 우편교류는

1. 편지송부를 위한 등기
2. 편지, 가격표기 우편, 일반소포와 가격표기 소포 등에 대한  
급행송부 및 속달
3. 등기우편, 가격등기 우편, 일반소포와 가격표기 소포에 대  
한 수신인의 영수증
4. 등기우편과 가격표기 우편의 직접 수교 등이다.

②부피가 큰 소포와 깨지기 쉬운 내용이 든 소포도 허용된다.

③가격표기 우편과 가격표기 소포에 있어서 가격공시는 독일  
연방공화국 및 독일민주공화국의 1만마르크에 한정된다. 가격  
공시는 서독 마르크나 독일민주공화국 마르크로 할 수 있다.

④상호우편교류에 있어 소하물의 최대중량은 20kg이다. 소하  
물은 밀폐되어질 수 있다. 소하물에는 어떠한 편지전달도 포  
함되어서는 안된다.

제2조(소정양식, 각서, 문서교환) ①상호간의 우편교류에 있어 서 교환조건에 부합되며 우편 및 전신행정당국의 업무상 필요에 일치되는 간단하며 유효적절하게 합의된 소정양식이 사용된다.

②우편발송 기호, 소정양식, 우편업무상의 각서와 교환문서는 독일어로 작성된다.

③소포, 수하물의 주소 카아드는 교환되지 않는다.

제3조(우편번호, 표식) ①상호 우편교류는 우편번호를 사용한다. 발송인은 우편번호를 수신인 주소 성명란중 그 목적지 앞에 기입해야 한다. 우편번호는 우편발송의 상호 처리와 작업에 대한 기본이다.

②우편번호앞의 표지로서는 경계선을 넘는 자동차교통에 이용되는 구별표지 D내지 DDR을 사용한다.

③우편 및 전신행정당국은 발송인이 상응하는 우편번호와 표지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우편물의 처리, 관리 및 교환) ①우편물은 발송우편국에 의하여 수납우편국의 작업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작업되고 처리되어져서 최단 시간의 도착시간을 기록하고자 한다.

②우편물은 우편열차와 보조열차 등의 선로와 경우에 따라서는 노상에서 자동차에 교환되어 실리기도 한다. 카아드 종결의 내용과 크기는 합의된다.

③등기우편과 일반소포 등은 화물인환증 없이 교환된다.

**제5조(업무처리의 조정)** 우편물 처리, 관리와 교환절차 및 상호간의 우편교환에서 생겨나는 원칙적 의미의 안건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체신장관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체신장관간에 조정된다.

마찰없는 경제적 사무처리의 보장을 위해서, 교통문제의 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서, 우편연결과 우편열차운행에서 발생되는 장애는 단기간내에 제거하기 위해서, 합의된 내용의 테두리안에서

1. 참가 당국간의 직접적인 작업과정에 관한 업무
2. 독일연방우체국의 서부철도우편국과 독일민주공화국 독일우체국의 중앙우편교류국간에 일반적 작업진행 업무가 조정된다.

**제6조(발송보고)** ①우편 및 전신행정 당국은 세계우편연맹 국제사무실에 각 우편 및 전신 당국에 의하여 금지된 품목규정에 따라 발송금지 저촉으로 인하여 발송품이 수취인에게 수교되지 않았거나 또는 발송인에게 다시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보고한다. 이 보고에는

1. 발송인과 수취인
2. 발송우체국과 수취우체국
3. 증명된 발송품과 일반소포에 있어서 발송번호
4. 1번에서 언급한 명단의 구분에 따라 가능한 한 정확히 기재된 발송금지품

- ② 우편발송품의 일부가 발송금지 저촉 때문에 수취인에게 수교되지 않았다면 세계우편연맹의 규정에 따라 목적지국가의 국내법에 일치하게 수취인에게 알려준다.
- ③ 발송금지 저촉으로 인하여 발송품이 발송인에게 반환될 때에는 위의 제1항 4번에 따라 그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 제2장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의 우편교류

- 제7조(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의 우편교류 실시) ①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의 육로를 통한 우편물의 운송은 1971년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의 시민과 화물의 운송교통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협정에 따라 선로와 도로로 규정된 모든 통과노선에서 가능하다. 그외의 통과노선은 합의되어져야 한다.
- ② 선로를 통한 우편발송물의 운송은 우편열차, 여행열차, 급행열차 또는 화물열차안의 철도우편차와 화차로 이루어진다.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우체국은 독일국영열차가 작업기술적 가능성의 테두리안에서 필수적인 운반실적을 올리도록 중재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조정은 독일연방우체국의 서부철도우편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우체국의 중앙우편교류국간에 이루어진다.
- ③ 철도상에서의 우편물의 운송은 독일연방우체국에 의하여

납으로 봉인이 된 노상운송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동 전서류로는 독일연방우체국의 송장이 휴대된다. 독일연방우체국은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우체국에게 우편교류의 실시에 대하여 통지한다. 독일연방우체국의 서부철도우편국은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우체국의 중앙우편교류국에 열차시간표를 정규운행에서는 실시 15일 전에 임시운행에서는 24시간 전에 텔레스로 공지하여야 한다.

### 제 3 장 효력규정

제8조(효력 발생) ①이 행정협정은 우편과 전신분야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협정과 함께 1976년 3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이 행정협정은 쌍방의 동의하에 변경될 수 있고 보충될 수 있다.

1976년 3월 30일 본에서 독일어로 2통의 원본 작성

독일연방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장관을 대리하여

체신장관을 대리하여

엘리아스

칼로브

#### C. 의정서 각서

1976년 3월 30일의 우편교류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체신

장관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체신장관간의 행정협정 제1조에 관한  
의정서 각서 양측은 현재 소포에 적용되고 있는 20kg의 최대중  
량이 상호우편교류에 있어 어느 한 측이 전체 소포교류에 있어  
서 경량의 최대중량을 확정시키는 국내 규정의 근거에 구속되  
지 않는 한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 D. 전신교류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체신성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체신성간의 행정협정

1976년 우편·전신분야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  
주공화국 정부간의 협정의 실시에 즈음하여 상호 전신교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이 합의되었다.

제1조(전화업무) ①전화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류의 통화가 허  
용된다.

1. 비상통화
2. 국정담화(통화)
3. 업무통화
4. 개인통화

②국정통화, 업무통화 및 개인통화는 일반통화로 또는 긴급통  
화로 간주된다.

③추가업무를 동반한 다음과 같은 통화는 허용된다.

1. 개인통화 — 호출이 없는 경우
  - 안내원을 통한 호출

## 2. 안내에 대한 청원

자동전화가 없는 교류관계에서만 호출없는 개인통화가 허용되어진다.

제2조(전보업무) ①전보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류의 전보가 허용된다.

1. 인간생명의 보호를 위한 전보(SVH)
2. 국가전보(ETATPRIORITYNATIONS, ETATPRIORITY, ETAT)
3.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협정에 의해 보호되는 사람들에 관한 전보(RCT)
4. 일반적 개인전보
5. 전보업무교류(A, AURGENT, ADG, ST, RST)
6. 기상전보(OBS)

②전보에는 다음과 같은 비상업무가 허용된다.

1. 긴급송달과 배달(URGENT)
2. 비교(TC)
3. 추송(FS, FSDEX, REEXPEDIEDEX)
4. 전보지의 장식(LX, LXDEUIL)
5. 우체국유치송달(GP)
6. 전화배달(TEX)
7. 텔레스 송달(TLXX)

③개인전보는 공공언어로 작성된다. 개인정보에 있어서 비밀

언어는 일반적 약호를 사용하며 전달되는 소식이 비밀내용을 갖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용되어진 약호는 전보 순두에 기재되어야 한다. 수취행정 당국은 미지의 약호를 거절할 수도 있으며 또한 그 약호의 복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다.

④각측은 전신·전화 국제협의회의의 추천에 따라 상대방측의 대체계정절차에 의해 계산된 수수료에 대한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이 증명서는 매달 독일연방공화국의 중앙전신기술소와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우체국 중앙전신교류소간에 교환되어진다. 대체계정 절차중 요금의 청산은 상호 우편 및 전신교류의 합의된 총액 청산의 한 요소이다.

제3조(텔레스 업무) ①텔레스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텔레스 연결이 허용된다.

1. 인간생명 보호를 위한 텔레스 연결(SVH)
2. 국가간의 텔레스 연결
3. 업무상의 텔레스 연결
4. 일반적 개인적 텔레스 연결
5. 안내에 대한 청원

②텔레스 업무에 있어서 대체계정 절차에는 제2조 제4항이 유효하다.

제4조(해상무선전신업무) ①각측은 그의 해상무선전신국을 통해서 타국의 해상무선전신국과 연결된 해상무전통화와 해상무선전보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행한다. 이 증명서는 매달 독

일연방공화국의 중앙전신기술소와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우체국 중앙전신교류소간에 교환된다.

② 해상무선전신업무에 있어 요금의 청산은 상호 우편 및 전신교류의 합의된 총액 청산의 한 부분이다.

**제5조(운영절차)** ① 전화업무에 있어서 수동식, 반자동식과 자동식의 작업방식이 채택되어진다. 자동식 작업방식은 연차적으로 확장된다.

② 전보업무와 텔레스 업무는 자동적으로 운영된다.

③ 자동운영방식에 있어서 전화업무와 텔레스 업무는 우선은 가능하지 않다.

**제6조(국가표식)** 상호 전화·전보 및 텔레스 업무에 있어서 우편 및 전신행정당국은 이들의 교류를 위하여 전신·전화 국제협의회 추천에 따라 국가표지를 사용한다.

**제7조(전선)** 전신업무를 위한 전선은 우편 및 전신행정 당국 간에 교류 및 기술적·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확정된다.

**제8조(라디오·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교류를 위한 중계)** ① 우편 및 전신행정 당국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신청에 따라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 프로그램 교환을 위한 중계로를 이용하게 한다.

② 연결은 독일연방우체국의 라디오·텔레비전 중앙중계소와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우체국 중앙라디오간에 약정된다.

③ 라디오·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교환에 사용되는 중계로 이

용에 대한 경비는 수신측 우편·전신 당국이 프로그램 제작  
라디오방송국에 중계 이용에 대한 요금을 지불한다. 우편·전  
신행정 당국은 요금의 계산을 위하여 필수적인 거리량을 상  
호간에 알린다.

제9조(중계로 임대) ①상호간의 비공식 전신교류에 있어서 중  
계로가 제3국에 임대될 수 있다.

②중계로의 연결은 각기 독일연방우체국의 중앙전신기술소와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우체국 중앙장거리전신소간에 약정된다.

③한 중계로가 임대되면 각 우편·전신국은 각자의 전화회로  
에 상당하는 요금을 임차국에서 징수한다.

제10조(기술작업상 조처의 규정) 우편 및 전신행정당국은 상  
호간의 필수적 표결을 포함하여 기술작업상 조처의 기안과  
실시를 통해 후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효력 발생) ①이 행정협정은 1976년 3월 30일자의 우  
편 및 전신제도·분야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  
주공화국 정부간의 협정과 함께 발효한다.

②이 행정협정은 쌍방의 동의하에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보완  
될 수도 있다.

1976년 3월 30일 본에서 독일어로 2통의 원본을 작성하였다.

독일연방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장관을 대리하여

체신장관을 대리하여

엘리아스

칼로브

### E. 협정서 각서

1976년 3월 30일의 전신교류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체신장관과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장관간의 행정협정 제1조 2항에 대한 협정서 각서

독일연방공화국 우편·전신행정 당국은 긴급통화를 허용한다.  
이 통화는 독일민주공화국의 우편·전신행정 당국에 의하여  
긴급통화로써 취급된다.

### F. 우편 및 전신통파에 있어서 실적청산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 체신성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체신성간의 행정협정

1976년 3월 30일자의 우편 및 전신분야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협정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다.

제1조(제3국과의 우편·전신교류에 있어서의 청산) ①제3국과의 우편·전신교류에 있어서 어느 한 우편·전신행정 당국이 다른 우편·전신 당국을 위하여 수행한 업적이나 또는 중요한 업적의 청산을 위하여 독일연방우체국의 중앙전신기술소와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우체국내의 중안우편교류는 필수적인 청산자료를 교환한다.

②4분기말에 채권당국은 총액청산을 작성한다. 총액청산에는 개별적 우편·전신업무를 위하여 각 4분기안에 인정된 계산액

이 그것이 관계되는 청산기간과는 관계없이 포함된다.

제2조(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의 우편교류에 있어서의 청산) ①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의 우편교류에 있어서 독일민주공화국 우편 및 전신행정 당국에 의해 수행된 업적의 총액 지불을 위하여 독일 연방공화국의 우편 및 전신행정 당국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우편 및 전신행정 당국에 대하여 매년 8백십만마르크를 지불한다. 총액은 4번의 할부로 지불되어 지는데 매4분기말이면 지불기한이 만기가 된다. 계산서는 교환되지 않는다.

②총액금은 어느 한 우편·전신행정 당국이 총액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통용되고 있는 총액이 가격에 있어 실적의 규모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 증명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총액 액수가 변경되어 진다면 총 금액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차년의 시작과 함께 새로 책정된 총액이 청산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 시점까지는 이전에 합의되어진 총액이 계속 유효하다.

제3조(독일연방공화국의 우편 및 전신행정 당국에 의해서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간의 전신교류를 위하여 제공되어진 실적에 대한 계산서 교환) ①이 실적에 대한 채무된 금액은 제1조에서 언급된 총액청산테두리 안에서 계산되어진다.

제4조(지불 결산) 지불 결산은 서독 마르크로 이루어진다.

제5조(효력 발생) ①이 행정협정은 1976년 3월 30일의 우편

및 전신분야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협정과 함께 효력이 발생된다.

②이 행정협정은 쌍방의 동의하에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보충될 수도 있다.

1976년 3월 30일 본에서 독일어로 2통의 원본 작성

독일연방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장관을 대리하여

체신장관을 대리하여

엘리아스

칼로브

#### G. 의정서 각서

1976년 3월 30일의 우편 및 전신통과의 업적 청산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 체신장관과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장관간의 해정 협정 제4조에 대한 의정서 각서

채무액은 독일민주공화국의 국립은행의 계정 S를 통해서 독일연방은행에서 청산되어진다.

## 5. 우편교류 개선에 관한 동독과의 협정 (1983. 11. 15)

서독의 우편국과 통신국은 다음을 통고한다.

1983년 11월 15일 동베를린에서 서독의 우편국과 통신국의 국가비서 빈프리트 프로리안박사와 동독의 우편국과 통신국의 국가비서 반프레트 카로브박사간의 서신교환은 쌍방의 우편교류와 통신교류에 있어 동독의 능률 증대를 위한 총계의 새로운 확정에 대한 협정과 이런 교류의 개선을 위한 규정에 대해 서명되었다.

서신교환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서독 연방체신성 장관

본, 1983년 11월 15일

동독의 우편국과 통신국의 국가비서 반프레드 카로브 박사  
동독 – 1066 베를린

존경하는 국가비서께 !

1. 1970년 4월 29일 동독과 서독의 우편교류와 통신교류에서 쌍방이 이룬 성과의 산출과 결산을 수용했던 1976년 3월 30일의 우체국과 통신국에 대한 동독과 서독 정부사이의 협정의 11개 조항안에서 다음 사항을 협정한 것을 우리 대표단 간에 행해진 회담의 결과로서 동의함을 귀하게 확인하는 바입니다.

1) 서독의 연방우편으로부터 동독의 독일우편으로 보상된 총

액은 1983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동안 매년 200,000,000 마르크로 확정되었습니다.

- 2) 서독연방우편은 매년 6월 30일에 100,000,000마르크와 12월 31일에 100,000,000마르크를 은행구좌에 입금시키게 됩니다.
  - 3) 서독연방우편은 1983년분 총액의 은행입금과 함께 다음해 분의 총액의 지불에 대한 선불로서 100,000,000마르크의 금액을 동독의 독일우편에 입금시키게 됩니다. 이 금액은 1987년 12월 31일에 50,000,000마르크 그리고 나머지 50,000,000마르크는 1990년 12월에 1987년 및 1990년의 총액의 입금때 지불됩니다.
2. 서독의 연방우편과 동독의 독일우편은 쌍방의 우편교류에서 다음의 유효기간을 철저하게 보증합니다.
- 발송후 2번째 평일, 가능한 한 오전에 목적지로의 편지와 우편엽서의 인도
  - 발송후 3번째 평일에 목적지로 소포와 소화물의 인도
  - 목적지인 지역에 도착후 2번째 평일에 편지와 우편엽서의 인도
  - 목적지인 지역에 도착후 3번째 평일에 소포와 소화물의 인도
- 이상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는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1984/1985년(1984년 6월 3일)의 연중기차계획표의 변경때까지 유효

합니다.

3. 서독 우편과 동독의 독일우편은 우편배달의 피해를 가능한 방지하기 위해 효력있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서독우편과 동독의 독일 우편은 책임 소재도 없이 우편배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경우, 우편물의 행방을 즉시 서로 통고하는 의무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4. 동독의 독일우편은 1983년 12월 20일에 동독의 지역인 지방도시 로스톡(Rostock), 쉬베린(Schwerin), 칼-맑스(Karl Marx), 술(Suhl) 및 그외의 240개의 지역망을 온종일 자동전화 통화가 가능하도록 서독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1984년 2월 말까지 서독과 동독간의 교류를 위해 96개의 보충 전화선이 가설될 것입니다.

5. 동독의 독일우편은 1983년 12월 20일에 동독으로의 서독의 텔레스통신을 위해 텔레스연맹 합부르크 DVSE-베를린 텔렉스 IVST에 4개 이상의 텔레스선을 접속할 것입니다.

6. 동독의 독일우편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신교류를 위해 접속된 선의 작동을 보증합니다.

7. 서독 연방우편과 동독의 독일우편은 현행의 협정의 토대위에서 그때 그때 다른 도시의 적법한 규정을 침해하는 보도와 주제의 전달을 위한 우편교통과 통신교통의 남용을 저지하고 합법적으로 포장되고 표기된 그러한 우편물만이 양도되는 것을 – 수신인에로의 비난의 여지 없는 배달과 인도가 가능한 –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극한 존경을 표하며  
프로리안박사, 국가비서

동독 내각의 체신국과 통신국  
동독 1066, 베를린  
1983년 11월 15일 서독의 연방 체신국과 통신국의 국가비서  
빈프리트 프로리안박사  
D - 5300. 본  
존경하는 국가비서께 !

1. 1970년 4월 29일 동독과 서독의 우편교류와 통신교류에서  
쌍방이 이룬 성과의 산출과 결산을 수용했던 1976년 3월 30일  
의 우편국과 통신국에 대한 동독과 서독 정부사이의 협정의 11  
개 조항의 응용 안에서 다음 사항을 협정한 것을 우리 대표단  
간에 행해진 회담의 결과로서 동의함을 귀하게 확인하는 바입니다.

- 1) 동독의 독일우편으로부터 보상된 총액은 1983년부터 1990  
년까지의 기간동안 매년 200,000,000마르크로 확정되었습  
니다.
- 2) 서독연방우편은 매년 6월 30일에 100,000,000마르크와 12  
월 31일에 100,000,000마르크를 은행구좌에 입금시키게  
됩니다.

- 3) 서독연방우편은 1983년분 총액의 은행입금과 함께 다음해 분의 총액의 지불에 대한 선불로서 100,000,000마르크의 금액을 동독의 독일우편에 입금시키게 됩니다. 이 금액은 1987년 12월 31일에 50,000,000마르크 그리고 나머지 50,000,000마르크는 1990년 12월 31일에 1987년 및 1990년의 총액의 입금 때 지불됩니다.
2. 서독의 우편과 동독의 독일우편은 쌍방의 우편교류에서 다음의 유효기간을 철저하게 보증합니다.
  - 발송후 2번째 평일, 가능한 한 오전에 목적지로의 편지와 우편엽서의 인도
  - 발송후 3번째 평일에 목적지로 소포와 소화물의 인도
  - 목적지인 지역에 도착후 2번째 평일에 편지와 우편엽서의 인도
  - 목적지인 지역에 도착후 3번째 평일에 소포와 소화물의 인도이상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는 단계적으로 우편배달의 피해를 가능한 방지하기 위해 효력있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서독우편과 동독의 독일우편은 책임소재도 없이 우편배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경우, 우편물의 행방을 즉시 서로 통고하는 의무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4. 동독의 독일우편은 1983년 12월 20일에 동독의 지역인 지방도시 로스톡(Rostock), 쉬베린(Schwerin), 칼-맑스(Karl Marx), 술(Suhl) 및 그외의 240개의 지역망을 온종일 자동전화

통화가 가능하도록 서독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1984년 2월 말까지 서독과 동독간의 교류를 위해 96개의 보충 전화선이 가설될 것입니다.

5. 동독의 독일우편은 1983년 12월 20일에 동독으로의 서독의 텔레스통신을 위해 텔레스연맹 합부르크DVSE-베를린 텔렉스IVST에 4개 이상의 텔레스선을 접속할 것입니다.

6. 동독의 독일우편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신교류를 위해 접속된 선의 작동을 보증합니다.

7. 서독연방우편과 동독의 독일우편은 현행의 협정의 토대위에서 그때 그때 다른 도시의 적법한 규정을 침해하는 보도와 주제의 전달을 위한 우편교통과 통신교통의 남용을 저지하고 합법적으로 포장되고 표기된 그러한 우편물만이 양도되는 것을 — 수신인에로의 비난의 여지없는 배달과 인도가 가능한 —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극한 존경을 표하며  
칼로브박사 국가비서

서신교환의 서명에 즈음하여 다음의 설명이 부가되었다.  
동독의 우편국과 체신국의 국가비서 만프레드 카로브박사에게 서독의 우편국과 체신국의 국가비서 빈프로트 프로리안박사의 설명

1983년 11월 15일

1983년 11월 15일의 편지교환에서 이루어진 동서독의 우편교류와 통신교류의 결과 생겨난 지불의 문제를 위한 추후의 동등한 배상총액에 관한 협정은 서독우편측에서 볼 때 서독우편의 재정에 맞는 조건일 때만이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이 이루어지는 즉시 서독의 우편국과 통신국은 동독의 우편국과통신국과 이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서독의 우편국과 체신국의 국가비서 빈프리크 프로리안박사에게 동독의 우편국과 체신국의 국가비서의 우편교류 실행의 문제에 관한 설명

1983년 11월 15일

나는 동독정부의 이름으로 다음의 사항을 설명할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동독은 선물용 소포와 소화물의 교류에서 이미 합의된 규정이상으로 보다 완화된 규정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개인당 12번으로 현재 제한되어 있는 선물용 소포의 발송에 대한 규정의 폐지
- 발송이 인정된 의약품 목록의 실제적인 확대에 의한 의약품의 발송 때보다 완화된 규정, 동독내의 수취인에게 간단한 형식으로 필요한 물건의 증명과 이런 의약품의 발송을 가능하게 할 규정들의 제정

서독의 우편국과 체신국의 국가비서 빈프리트 프로리안박사

에게 동독의 우편국과 체신국의 국가비서의 만프레드 카로브박사의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통신 교통교류의 문제에 관한 설명

1983년 11월 15일

동독은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통신교통교류를 위해 전적으로 이용된 광선케이블의 동독지역에의 설치와 작업에 동의합니다.

동독에서 발생한 광선케이블의 설치비용은 서독에 의해 지불되고 광선케이블의 이용을 위한 상응하는 보수는 합의될 것입니다.

동독은 이上面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에 회담을 개최하고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6. 서베를린 정부의 새로운 통신망에 대한 협정 (1985. 3. 15)

연방체신성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연방체신성과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성은 1985년 3월 15일 본에서 서베를린쪽의 새로운 통신수송협정을 조인하였다.

이것에 이어 광파양도체 케이블시설(유리섬유케이블)의 설치와 서베를린쪽의 디지털방송국의 설치를 계획하였다. 이미 1983년 11월 15일의 우편협정과 관련하여 독일민주공화국은 오로지 베를린교역의 목적을 위해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설치에 동의했었다.

그 사이 동서독의 우편관리국의 전문가들은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설치와 작동에 대한, 또 추가적으로 디지털방송망의 설치와 작동에 대한 상세한 목록들을 확정할 수 있었다. 통신망의 급격한 디지털화와 통신업무의 왕성한 수요에 직면하여 서베를린과 알력없이 교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결이 필요하다.

니더작센의 가르토브를 기점으로 하여 독일민주공화국내 3개의 방송탑을 거쳐 베를린으로 연결되는 방송망은 1986년 6월 30일에 그 기능을 발휘한다. 우엘첸에서부터 독일민주공화국을 거쳐 서베를린에 이르기까지 설치되어야만 하는 유리섬유케이

블은 1년 후에 작동하게 될 것이다. 서독정부는 소기의 결과를 환영한다. 이는 소기의 결과가 독일민주공화국과 함께 보다 확대된 범위에서 양국가에 유리한 이익의 조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협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다.

독일민주공화국 영토내의 서베를린과 연방공화국간의 통신수송을 위한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설치와 작동에 관한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성과 연방체신성의 협정

1976년 3월 20일의 우편제도와 통신제도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의 협정 제9항 3절과 제13항 2,3절에 의거하여, 연방체신성과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성의 대표단 사이에 행해졌던 회담의 결과에서부터 다음의 사항들이 합의되었다.

### 1. 광파양도체 – 케이블설치

1)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우편국은 독일연방공화국과 잘스 베델주위의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의 경계선에서부터 독일 민주공화국과 슈타肯주위의 서베를린까지의 독일민주공화국 영토에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서베를린 사이의 통신통과교류를 위한 총 211km에 달하는 광파양도체와 케이블 시설을 설치한다.(설계도 진로 플랜트1).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은 독일연방우편국에 의해 계획된 파손없고 기밀이 엄수된 독일우편의 배달물을 공급한다는 전제 하에 1987년 6월 30일에 이루어진다.

2) 140Mbit/s의 Bit-Rate를 지닌 130mm의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되는 60다발의 구배광파양도체 – 케이블이 설치된다.  
독일민주공화국 우편국은 작동에 필요한 4줄의 구리를 포함한 케이블의 구조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우편의 기술규정을 표준으로 삼는 것에 동의한다.

3) 케이블플랜트는 간발전기가 대략 18km의 최대거리를 유지할 것과 그것이 지상의 독일우체국 건물에 설치되는 것으로 구상되어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영토에서 설계도의 진로에 상응하여 간발전소의 설치에 적당한 지역은 총 13곳이다. 간발전소는 직류로 작동된다.

4)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구상과 케이블의 설치 및 독일민주공화국 영토내의 케이블시설의 표식은 독일민주공화국 우편국에 의해 생겨난다. 이것을 위한 비용 및 독일 우편의 2가지 플랜트에서 제시된 공급은 독일연방공화국에 의해 3,500,000마르크의 금액으로 배상된다.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지불된다 :

- 협정의 서명시 총금액의 25%인 8,750,000마르크를 지불
- 1985년 6월 30일 총금액의 25%인 8,750,000마르크 지불
- 1986년 6월 30일 총금액의 25%인 8,750,000마르크 지불
- 광파양도체와 케이블시설의 개통시 총금액의 25%인 8,750,000마르크 지불

5) 독일연방우편국은 광파양도체와 케이블시설을 위한 광파

양도체 케이블 및 모든 필요한 기술적 장비와 통신망 건축도구와 측량기계를 독일우편국의 공급에 있어 예외로 무보수로 공급한다. 배달은 3개의 플랜트에 제시된 시간에 맞춰 부분배달로 행해진다.

독일연방우편국은 독일민주공화국 우편국에 상대하여 기술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없는 실행과 그 배달의 수행능력에 대하여 보증한다. 배달에 실수가 생겼을 때 보충배달이 즉시 이루어진다. 독일우편국은 비난의 여지가 없는 시간에 맞춘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설치를 보증한다.

- 6) 독일민주공화국 영토내의 광파양도체와 케이블시설의 설치는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우편규정의 통신망 시설에 유효한 법규에 따라 이루어진다.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소유이다.

## 2.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가동

- 1)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은 서독과 서베를린사이의 전신통과교류의 전개를 위해서만 전적으로 사용된다.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작동은 독일우편의 전신시설의 작동에 대한 규정에 상응하는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토에서 이루어진다. 독일우편은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작동능력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때를 위하여 독일민주공화국의 우편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의 우편물간에 보상과 정비의 규정이 합의되었다.

- 2)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가동시 우선 30개의 섬유,

즉 15개의 기본양도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15PCM-1920-시스템과 각 위치에 상응하는 중간발전기를 제대로 갖춘 광파양도체-케이블시설이 생겨난다. 독일민주공화국 우편국은 독일연방공화국 우편국의 소망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섬유를 작동시킨다. 작동의 전제는 독일연방공화국 우편국이 2년마다 의도된 작동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1,5번에 상응하여 의도된 필요한 시설을 작동전 6개월동안 공급한다.

독일우편국은 광파양도체-케이블시설의 작동, 기능 측정을 행하게 된다. 그와 같은 측정이 광파양도체-케이블시설의 작동시에 생겨나는 방해요소를 즉각 제거시킨다. 광파양도체-케이블시설의 개통과 작동을 위하여 플랜트4에 맞는 원칙이 중요시된다.

- 3)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에 있어 필요한 손실방책과 수선방책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우편국은 무료로 광파양도체-케이블, 기술적 장비, 측정기계 그리고 전선 설비 장비에 필요한 보증을 행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우편국은 광파양도체-케이블시설의 개통의 시점에서 독일민주공화국 우편국에게 플랜트5 손질방책과 수선방책을 위한 예비물품을 넘겨준다. 고장난 간발전기, 특수기구와 측정기계는 독일민주공화국 우편국으로부터 독일연방공화국 우편국으로 넘겨진다. 독일연방공화

국 우편국은 이것 대신 동일한 방식의 기능을 하는 기계를 공급한다.

- 4) 독일연방공화국 우편국은 광파양도체-케이블시설의 정비와 수선에 대한 비용을 독일민주공화국 우편국에 매년 6,200,000마르크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불한다. 이 금액은 4번에 4분기말에 동일하게 지불된다.

보다 광범위한 섬유의 개통시에는 이런 금액은 개통의 시점에서 10개의 섬유당 10%씩 상승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우편국에 의해 지불되고 있는 이 금액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전년 “개개 예산재정의 생활기준 물가지수”의 변화에 상응한다.

- 5) 그 원인이 오로지 독일민주공화국 영토내의 방해 때문에 이를 이상 0시부터 24시까지 기본양도체의 작동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기본양도체를 위해 독일연방공화국 우편국이 제때에 지불하는 금액의 지불이 지체된다.

제한은 2), 4)번에서부터 생겨난 연금액과 작동하는 기본양도체수의 토대위에서 조사되어진다. 이때 일년 365일이 기초가 된다.

### 3. 일반규정

- 1) 광파양도체 - 케이블시설의 계획과 설치, 조립 그리고 개통이 행해지는 동안 필요한 기술상의 정보를 독일민주공화국 우편국의 자유에 맡기고 독일우편국의 조립능력

과 작동능력을 교육시키고 지시한다.

- 2) 1), 4)에서 협정된 불입금액은 독일해외무역은행 A.G 베를린을 위하여 독일민주공화국이 저정하는 독일연방공화국 은행의 구좌에 입금시킨다.

2.5)에서 협정된 금액은 독일연방은행에 개설된 독일민주공화국 국립은행의 “S”구좌로 지불된다.

3) 1971년 9월 3일의 4대국협정에 상응하여 이런 협정은 서베를린에서 확정된 협정과 일치하는 안에서 연장된다. 체신업무에 관련된 서베를린의 주무관청과 동독의 해당 기관 사이의 규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4) 번호1의 5가지의 플랜트가 이런 협정의 분리할 수 없는 구성 요소이다.

5) 이런 협정은 그 비준과 더불어 효력을 발한다.

1985년 3월 15일

## 독일연방공화국 우편국

## 독일민주공화국 우편국

독일어로 된 2개의 원본으로 작성.

주 : 다음에 언급된 플랜트들이 협정에 속한다.

## 플랜트1 : 독일민주공화국 영토 내에 있는 광파양도체-케이블 시설의 설계과정

## 플랜트2 : 광파양도체-케이블시설의 설계, 조립, 표정과 개통 을 위한 독일우편국의 비용 원조

플랜트3 : 광파양도체-케이블시설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 우

### 편국의 공급

플랜트4 : 광파양도체-케이블시설의 개통과 작동에 대한 원칙

플랜트5 : 독일연방공화국 우편국에 의해 제공된 정비조치와  
수선조치에 대한 예비품목

### 〈 협 정 〉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토에서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 사이  
의 전신망과 교류를 위한 전파연결의 작동과 설치에 대한 독일  
민주공화국 우편국과 독일연방공화국 우편국의 협정

1976년 3월 30일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협정  
제9항 3절과 제13항 2, 3절에 근거하여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의 대표단에서 행하여졌던 화답결과, 다음의 사항들  
이 협정되었다.

#### 1. 전파연결시설

1) 독일민주공화국의 독일우편국은 데쿠에데, 리히노우와 페  
르베니쓰전파탑을 이용하여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  
간의 전신통과 교류를 위한 전파연결을 행한다.

전파연결의 국경을 넘어선 시그날전송은 전파지역인 가  
르토브-테쿠베데에 있는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  
국 사이에서, 또 전파지역인 페르베니쓰-슈탄트오르트 슈  
펠베르크에 있는 독일민주공화국과 서베를린 사이에서

일어난다.

전파연결은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우편국에 의해 이루어진 공급이 독일민주공화국 독일우편국에 제 날짜에 우편물의 훼손없이 넘겨진다는 전제하에 1986년 6월 30일 개통된다.

2) 전파연결은 3,850 GHz부터 4,170 GHz의 주파범위를 이용함으로써 PCM-1920 시스템(140Mbit/s의 Bit-Rate : 비율)를 가진 디지털 송전기술장비가 갖추어진다. (플랜트1 : 독일의 영토에서 전파연결의 주파).

3) 전파연결계획 :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토에서 전파연결의 작동에 필요한 기술적 시설의 조립 및 독민의 영토내에서 전파연결의 표정은 독일우편국에 의해 행해진다.

그것을 위한 비용 및 독일우편국의 플랜트2에서 실행된 예비품은 독일연방우편국에 의해 4,500,000마르크에 달하는 금액으로 상환한다.

이런 금액은 다음과 같은 할부액으로 지불된다.

협정의 서명시 2,250,000마르크에 달하는 전체 금액의 50%를 지불한다.

전파연결시설이 개통될 때 전체금액의 50%인 2,250,000 마르크를 지불한다.

4)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우편국은 전파연결을 위하여 독일우편국의 공급을 제외한 모든 필요한 기술상의 장비와 측량기계(플랜트3)를 무료로 공급한다. 공급은 플랜트3에서

제시된 기간동안 부분공급으로 이루어진다.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우편국은 독일민주공화국 우편국에 상대하여 기술상 하자 없는 공급의 수행능력에 대해 보증한다. 잘못이 생겼을 때 즉시 보충 공급이 이루어진다. 독일우편국은 비난의 여지가 없고 기간을 염수하는 전파 연결에 설치를 보증한다.

- 5)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토에서 전파연결의 시설은 독일민주 공화국의 전신시설에 중요한 합법적 규정에 따라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 우편국의 규정에 따라 생겨난다.  
독일우편국의 전파탑에 있는 전파연결의 기술적인 시설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소유이다.

## 2. 전파연결의 작동

- 1) 전파연결은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사이의 전신통과 교류의 전개에 한해서만 이용된다.  
전파연결의 작동은 전신시설의 작동에 대한 독일우편국의 규정에 상응하는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토에서 이루어진다. 독일우편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술적 시설의 수평기간 동안의 전파연결의 작동능력과 기능능력을 보장한다.

전파연결의 작동능력과 기능능력, 혹은 이런 시설의 어떤 부분의 작동과 기능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독일연방공화국의 우편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우편국간에 보충조치와

검사조처가 협의된다.

- 2) 독일우편국은 전파연결의 필요한 작동의 측량과 기능의 측량을 행한다. 독일우편국은 전파연결의 작동시 생겨나는 방해를 즉각 제거할 것이다. 전파연결의 작동과 개통을 위해서는 플랜트4에 맞는 원칙이 중요하다.
- 3) 독일연방우편국은 필요한 수선조치에 있어 무료로 기술적 장비와 측량기계에 필요한 보충수요를 공급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우편국은 전파연결의 개통시 독일우편국의 플랜트5에 맞는 정비조치와 수선조치를 위한 예비품을 양도한다. 고장난 기술상의 장비와 측량기계는 돌일민주공화국으로부터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우편국으로 양도된다. 연방우편국은 이를 위하여 동일한 방식의 기능을 갖춘 기계를 무료로 공급한다.
- 4)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우체국은 독일 우편국에 전파연결의 정비와 수리비용으로 매년 300,000마르크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이 금액은 4번에 나눠 동일한 금액으로 4분기말에 지불된다.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우편국에 의해 지불되고 있는 금액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공식발표한 전년의 일개 가정재정의 생활기준을 위한 물가지수의 변화에 상응한다.
- 5) 단지 동독의 영토내의 장애 때문에 전파연결이 이틀이상(0시 – 24시)작동되지 않는다면, 독일연방공화국 연방

우편국으로부터 금액의 지불이 지연된다.

제한은 2.4)의 연금액의 근거 위에서 조사된다. 그때 일년 365일이 기본이 되어 있다.

### 3. 일반규정

- 1) 전파연결의 계획, 조립 그리고 개통이 행해지는 동안의 필요한 투자의 실행과 기술적인 각각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대리자들이 독일연방공화국 우편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우편국에 의해 임명되었다.
- 2)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우편국은 설치, 작동, 정비에 필요한 기술상의 정보를 독일우편국의 자유에 맡기고 독일우편국에게 조립능력과 작동을 무보수로 교육시킨다.
- 3) 1.3)에서 협정된 할부액은 독일 해외무역은행 AG 베를린을 위해 독일민주공화국이 지정한 독일연방공화국 은행의 구좌에 입금시킨다.  
2.4)에서 협정된 금액은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은행에 개설된 독일민주공화국 국립은행의 “S”구좌에 입금시킨다.
- 4) 1971년 9월 3일의 4대국 협정에 상응하여 서베를린에서 확정된 조항과 일치하는 안에서 이 협정은 연장된다.  
우편문제에 관계하는 서베를린의 주무관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해당기관 사이의 규정은 언급되지 않는다.
- 5) 1번에서 5번까지의 플랜트는 이런 협정의 분리할 수 없는 구성요소이다.

6) 이 협정은 서명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 1985년 3월 15일 본에서 독일연방공화국 우편국 조례와 독일민주공화국의 우편국 쪽펠박사는 독일어로 된 2개의 원본을 작성하였다-

주) 다음에 언급된 플랜트들이 협정 요소이다.

플랜트1 :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토에서 전파연결주파수

플랜트2 : 전파연결의 계획, 조립 및 표정을 위한 독일우편국의 비용과 준비

플랜트3 : 전파연결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우편국의 공급

플랜트4 : 전파연결의 개통과 작동을 위한 원칙

플랜트5 : 정비조치와 수선조치를 위한 독일연방공화국 우편국의 공급

## 7. 동서독간 방송협력에 관한 합의서(1987. 5. 6)

- 제1조 ① 계약당사자 쌍방은 상호 상대방의 TV프로그램을 매입한다. 상호매입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의 TV프로그램을 포괄하나, 특히 TV드라마, TV영화, 연극, 음악프로, 오락프로, 기록물, 스포츠프로, 청소년프로, 문화교양프로 등이 그 대상이 된다.
- ② 당사자 쌍방은 자신들의 TV프로그램에 관한 판매제의서, 카탈로그 및 기타 적당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대표들을 위해 1년에 1회 또는 2회 프로그램 시사회를 개최한다. 계약당사자 일방의 희망에 따라 특별 시사회도 개최된다. 프로그램 매입조건은 매번 상호합의에 의해서 확정된다.
- ③ 계약상대방에 의해서 장소, 내용,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매입되지 않는 한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자료판매시 프로그램을 교부하는 계약당사자는 프로그램을 수령하는 계약당사자에게 현존하는 저작권상의 의무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밖에는 성립된 프로그램 구매계약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저작권상의 약정이 적용된다.
- ④ 계약당사자 쌍방은 체결된 프로그램 계약의 범위내에서 아울러 해당저작권법상의 약정을 고려하여 매입한 프로그램을

자신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즉 계약당사자 쌍방은 작품의 내용과 의미가 왜곡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을 단축시킬 수 있다. 계약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수령한 프로그램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⑤계약당사자 쌍방은 방영일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해서 상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당사자 쌍방은 양국간의 법률규정과 이에 상응하는 가능성과 권한을 참작하여 상주특파원, 일시방문 특파원, 펜기자, 카메라팀을 지원한다.

제3조 유로비전(Eurovision)과 인터비전(Intervision)간에 기존의 관행과 합의에 의해서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비용부담없이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닌 한, 계약당사자 쌍방은 정치·문화·스포츠 사건의 취재에 있어서 합의된 사례를 지불하고 상호 서비스(직접 위성중계 포함)를 제공받는다.

제4조 계약당사자 쌍방은 공동제작을 도모할 것이다. 합의에 의한 공동제작을 위해서 특별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 계약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의 시사프로나 기타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를 자신의 프로그램에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에는 현존의 관행이 적용된다.

제6조 계약당사자 쌍방은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호 희망에 따라 독일어로된 제3국의 프로그램을 구입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합의에 의해서 확정된다. 원저작자에 대한 저작

권료 지불과 원저작자로부터의 방영권의 매입은 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 계약당사자 쌍방은 서로 상대방에게 중요한 정보나 프로그램에 관한 간행물을 제공한다.

제8조 ①계약당사자 쌍방은 상호 정보여행, 박람회, 전시회, 그밖의 행사에 대표자들을 파견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개개의 경우 별도로 합의한다.

②제작기술상의 경험교환은 별도의 약정에 의한다.

제9조 계약 당사자 쌍방은 TV경연대회나 TV축제행사에 관한 사항을 고지한다. 계약당사자 쌍방은 작품출품 및 공식대표단 파견 등 행사참가 가능여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검토한다.

제10조 계약당사자 쌍방의 대표들은 더이상의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협의와 조정을 위해서 시간적으로 서로 합의하여 수시로 만난다. 이러한 회합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지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11조 양측은 본 합의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분쟁을 법적인 판결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12조 ①본 협약은 3년간 유효하며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본 협약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적어도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문서로 해지하지 안흔 한 3년간씩 연장된다.

③본 협약의 변경이나 보완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문서형식을 필요로 한다.

1987년 5월 6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원본 두통이 작성됨.

독일방송협회(ARD) 소속 주방송공사들을 위하여

빌리발트 힐프(Willibald Hilf)

동독 국무원 TV위원회를 위하여

(하이츠 아다멕(Heinz Adameck))

# **제5편 기 타 분 야**



## 1. 동·서독 기본조약(1972. 12. 21)

### 전 문

조약체결 쌍방은 평화유지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유의하여 유럽의 긴장완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존하는 국경선을 기준으로 한 모든 유럽국가들의 국경불가침 및 그들의 영토보전과 주권존중이 평화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양독은 그들 상호관계에 있어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마땅히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족문제를 포함한 여러가지 기본문제들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현실에 입각하여 양독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협조를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려는 의도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동등한 권리의 토대위에서 정상화된 선린관계를 발전시킨다.

제2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유엔현장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목표와 원칙, 특히 모든 국가의 주권·평등·독립·자주·영토보전의 존중, 인권보호 및 차별대우 금지등을 지향한다.

제3조 유엔현장의 정신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그들의 분쟁을 오로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하며 무력위협과 무력사용을 포기한다. 쌍방은 현재 존재하며 또 앞으로도 존속할 쌍방간의 경계선의 불가침을 강조하고 각기 영토보전을 무제한으로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제4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양국의 어느 일방이 타방을 국제적으로 대표하거나 또는 자국의 명의로 상대방을 대신하여 행위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제5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유럽국가들간의 평화적 관계와 발전을 촉진시키며 유럽의 안전보장 및 협력에 기여한다.

쌍방은 관련 국가의 안전보장을 저해하지 않고 유럽에 병력 및 군비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효과적인 국제통제 아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군비축소를 달성할 목적으로 세계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군비제한과 군비축소의 노력, 특히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분야의 군비축소 노력을 지지한다.

제6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각국의 국가권력이 각자의 영토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양국은 국내 및 대외문제에 있어서 상대방 국가의 독립과 자주성을 존중한다.

제7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양국의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실질적인 인도적 문제들을 타결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다. 양국은 이 조약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학문·기술·통행·법률 부문의 교류, 우편·전화·보건·문화·스포츠·환경보호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시키고 발전시키는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가의정서에 정한다.

제8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상주대표부를 교환한다. 대표부는 각기 상대방의 정부 소재지에 설치하기로 한다. 대표부 설치에 관계되는 실제적인 문제들은 별도로 해결한다.

제9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과거 양국이 각기 체결한 조약 또는 양국에 관계되는 양자간 및 다자간의 조약이 이 조약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합의하였다.

제10조 이 조약은 비준절차를 밟아야 하며, 비준각서를 교환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위의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약체결 쌍방의 전권대표는 이 조약문에 서명한다.

독일연방공화국을 대표하여 에곤 바  
독일민주공화국을 대표하여 미카셀 콜

## 기본조약에 대한 추가 의정서

### I

#### 제3조에 대하여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양국정부가 임명한 자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동 위원회는 양국간의 현존 경계를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개정, 보완하며, 국경선 문제에 관해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동 위원회는 동시에 국경선에 관한 문제 이외에 예전대 수력관리, 에너지 공급 및 재해방지와 같은 현안 문제를 규제하는데 노력한다.

동 위원회는 이 조약이 서명된 후 그들의 작업을 시작한다.

### II

#### 제7조에 대하여

1.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교역은 현존협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개된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경제관계의 계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지금까지의 규제를 조정하고 교역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적인 협정을 체결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경제와 기술분야에서 쌍방의 이익을 위하여 협력을 촉진하고 이에 요구되는 조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한다.

3. 1972년 5월 26일자의 조약과 더불어 시작된 교통분야에서의 협력은 확대, 강화된다.
4.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법률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민법과 형법분야의 법률공조 관계를 가능한 한 간소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규율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한다.
5.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만국우편연맹 및 국제전신조약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편 및 통신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다. 쌍방은 동 협정을 만국우편연맹과 국제통신연맹에 통고한다. 동 협정에는 현존의 합의사항과 쌍방에게 유리한 절차가 포함된다.
6.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보건분야의 협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다. 쌍방은 조약에 의거하여 허용된 범위내에서 의약품과 특수병원 및 진료소의 치료방법의 교류에 대해서도 규율할 것에 합의한다.
7.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문화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킬 의도를 표명한다. 이 목적을 위해 쌍방은 정부간의 협정체결에 관한 협상을 시작한다.
8.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이 조약이 서명된 후 스포츠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협정을 통해 스포츠 관계기관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강조한다.
9. 환경보호 분야에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상

호 간의 손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10.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서적, 잡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제작물의 상호간 구입을 확대할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11.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비상업성 지불 및 청산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쌍방은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인 관점에서 최단기간내에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재산문제에관한조약의정서부록

재산문제에 관한 법적 견해차이로 인하여 이 문제는 조약으로 규정할 수 없었다.

## 2. 독일민주공화국 상주대표부에 대한 완화, 특권 및 면제 부여에 대한 법률(1973. 11. 16)

연방하원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동 법률을 의결하였다.

### 제1조

- (1) 연방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을 전제로 법률규정에 의하여 연방  
상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정부 소재지에 설치된 독일민주공  
화국 상주대표부와 그 대표부 직원 및 당해 직원의 가족들  
과 두명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사용인에게 완화, 특권, 면제  
부여권을 위임받는다. 이러한 조치는 외교공관과 그 직원,  
가족과 개인고용인들의 외교관계에 관한 1961년 4월 18일자  
비엔나협정에 대한 1964년 8월 6일자 법률(연방법률집Ⅱ, p.  
957), 주 기본소득세법, 1972년 12월 1일 공포된 자동차세법  
(연방법률집Ⅰ, p. 2209), 1959년 7월 24일 공포된 보험법을  
통하여 부여받는 권리와 특권의 범위까지 허용된다. 이 항에  
계기한 자중에 법률의 적용지역에 영주하는 자는 그 특권과  
면제가 제한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전 제1항의 법률규정에 있어 독일민주공화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특별사절에게는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  
계에 관한 비엔나협정이 외교사절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  
한 범위까지 특권과 면제가 보장된다.

### 제2조

제1조 제1항에 계기된 자로서 이 법률의 적용지역에 영주하지 않는 자는 다음사항으로부터 면제된다.

1. 경계선 통과시와 이 법률 적용지역 체재시 일반적인 관인 개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이를 통하여 증명해야 한다고 연방법률이 규정한 의무
2. 주의 신고법에 따른 신고의무

### 제3조

이 법률은 1952년 1월 4일자 이주법의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베를린주에도 적용된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법률규정은 이주법 제14조에 따라 베를린주에도 적용된다.

### 제4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연방대통령      연방수상      연방내독관계장관  
하이네만      브란트      프랑케

3.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간 의정서 발표문(1974. 3. 14)

A. 발 표 문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간에 1974년 3월 14일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가 본에서 서명되었다.

의정서는 1974년 4월 5일자 양정부간 공한교환과 본 의정서 8항에 의하여 1974년 5월 2일 발효된다. 의정서와 부속 의정서 각서 및 교환공한은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본 1974년 6월 10일

연방내독관계장관을 대신하여

몰겐스테른 박사

의 정 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1972년 12월 21일 기본조약 제8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상주대표부가 이 의정서 발효와 함께 개설된다.
2. 대표부는 독일민주공화국 상주대표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상주대표부라는 공식명칭을 갖는다. 수석대표는 독일연방

공화국 상주대표부 대표 및 독일민주공화국 상주대표부 대표라는 공식명칭을 갖는다.

- 독일연방공화국 상주대표부 대표는 국가회의 의장에, 독일민주공화국 상주대표부 대표는 연방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다.
  - 상주대표와 그 직원 및 가족, 개인고용원에게는 1961년 4월 18일자 비엔나협정이 적용된다.
  - 상주대표부는 무엇보다도 접수국에서 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주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하며, 정치, 경제, 문화 및 기타 주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하며, 정치, 경제, 문화 및 기타 분야에 있어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정상적 선린관계를 촉진하고 확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독일연방공화국 상주대표부에 관한 문제는 외무성에서 관장한다. 독일민주공화국 상주대표부에 관한 문제는 연방수상실에서 관장한다.
  - 상주대표부 직원의 수는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쌍방 합의하에 결정된다.
  - 이 의정서는 상호간 합의된 시기로부터 발효된다.

본, 1974년 3월 14일

## B. 의 정 서

1. 각 상주대표부 대표의 인적문제는 정부간 문서교환을 통하여 합의된다. 상주대표부의 다른 직원은 서면으로 임명된다. 접수국의 정부는 상주대표부 대표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2. 상주대표부의 대표와 직원 및 그 가족과 고용인은 언제나 출입국권을 가진다는 것이 합의되었다.
3. 쌍방은 상주대표부가 무선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권리를 부여한다. 신청과 운영은 각측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4.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현재까지 뒤셀도르프에 설치되었던 독일민주공화국 대외무역성 사무실을 독일민주공화국 상주대표부의 무역정책과의 부속기관으로 변경 사용한다는데 동의함을 선언한다.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에 이와 관련된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5. 파견국은 상주대표부가 사용할 목적으로 대지를 매입할 때, 파견국 소유이거나 파견국이 임차한 토지를 상주대표부의 대표 및 직원의 거주목적으로 사용할 때 이것이 특정 서비스에 대한 사례에 속하지 않는 한 모든 세금과 기타 공과금(국가세, 토지세 및 지방세)은 면제된다는 사실이 합의되었다.
6. 독일연방공화국의 독일민주공화국 주재 상주대표부는 1971년 9월 3일자 4대국협정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베를린(서)의 이익을 대변한다.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와 서베를린시 당국간의 합의사항은 이에따라 변화되지 않는다.

### C. 교환공한

#### (1) 가우스차관의 서한

발신 : 연방수상실 차관

균터 가우스

본

수신 : 외무성 차관

1974년 4월 5일

쿠르트 니어

베를린

존경하는 니어씨,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신뢰를 받아 1974년 3월 14일 서명된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를 1974년 5월 2일 발효시키자는 제의를 하게 되는 영광을 갖습니다.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균터 가우스

#### (2) 니어차관의 서한

발신 : 독일민주공화국 내각

외무성 차관

베를린

수신 : 독일연방공화국

1974년 4월 5일

수상실 차관

균터 가우스

본

제5편 기 타 분 야

존경하는 가우스씨

본인은 오늘 귀하의 공한을 접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독일민주공화국이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를 1974년 5월 2일 발효시키자는 귀하의 제의에 동의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갖습니다.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크루트 니어

#### 4. 독일민주공화국 상주대표부에 대한 완화· 특권 및 면제 부여에 관한 규정(1974. 4. 24)

1973년 11월 16일자 독일민주공화국의 상주대표부에 대한 완화, 특권 및 면제 부여에 관한 법률 제1조를 근거로 하여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제1조

독일민주공화국 상주대표부와 그 대표는 독일민주공화국 국기와 문장을 대표부 건물과 상주대표부 대표의 주거 및 그의 수송수단에 부착할 권리를 갖는다.

##### 제2조

상주대표부 건물은 불가침지역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의 당국대표자는 상주대표부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 상주대표부 건물, 시설과 이 곳에 위치하는 기물 및 운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 제3조

(1) 독일민주공화국과 상주대표부의 대표는, 특정용역의 제공에 대한 지불의 성격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그 소유물과 상주대표부의 사용목적으로, 그리고 대표 및 기타 상주대표부 직

원이 주거하기 위하여 임차하거나 빌린 건물에 대하여 모든 연방세 및 지방세 혹은 기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전 제1항에 명시된 면제조치는 독일민주공화국 상주대표부 대표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및 기타 부과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대지가 상주대표부의 사용목적으로 독일민주공화국에 위하여 구입될 때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4) 상주대표부를 위하여 허가된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5) 상주대표부가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불시 보험세가 면제된다.

#### 제4조

상주대표부의 문서 및 서류는 어느 때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불가침이다.

#### 제5조

상주대표부는 독일연방 체신성의 동의를 얻어 그 건물안에 자국 정부와의 자유로운 통신을 위한 무선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

#### 제6조

(1) 모든 공적인 목적을 위한 상주대표부의 자유로운 통신이 허용된다. 상주대표부는 자국정부와 소재여하를 불문한 기타의 자국 공적대표부와의 소통을 위해 파우치와 암호 또는 부호로

된 통신문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제55조는 이에따라 변화되지 않는다.

(2) 상주대표부의 공용통신은 불가침이다. 공용통신은 상주대표부의 직무에 관한 모든 통신을 말한다.

(3) 파우치의 행낭은 개봉되거나 지체될 수 없다.

(4) 파우치의 행낭이 되는 포장물은 그 특성을 외부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달아야 하며, 공용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문서나 물품만을 넣을 수 있다.

(5) 행낭은 공인된 항항에 착륙하게 되어 있는 상업용 항공기의 기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당해 기장은 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소지하여야 하나, 당해 기장은 파우치는 아니다. 상주대표부는 항공기 기장으로부터 직접, 그리고 자유롭게 행낭을 수령하기 위하여 대표부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6) 파우치는 자신의 신분 및 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호를 받는다. 파우치는 신체상의 불가침을 향유하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7) 독일민주공화국 혹은 그 상주대표부는 이를 위하여 파우치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 제6항이 적용된다. 그러나 파우치가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행낭을 수치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특권과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7조

상주대표부가 직무수행상 지불하는 수수료와 비용은 모든 조세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8조

- (1) 이 규정이 의미하는 상주대표부 구성원이라 함은 상주대표부 대표와 기타 상주대표부 직원이다.
- (2) 상주대표부의 기타 직원이라 함은 상주대표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상주대표부 직원, 관리 및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행정·기능직원 및 용역에 종사하는 노무직원 등을 말한다.

제9조

- (1) 상주대표부의 대표와 기타 직원들 및 가족들은 불가침이다. 그들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 (2) 용역에 종사하는 노무직원은 그들의 직무중에 행한 행위의 경우에 한하여만 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0조

- (1) 상주대표부의 대표와 기타 직원의 개인주거는 상주대표부 전물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 (2) 상주대표부의 대표와 기타 직원 및 그 가족의 서류와 통신문 그리고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그의 재산도 동일하게 불가침권을 향유한다.

(3)이 조는 용역에 종사하는 노무직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11조

(1) 상주대표부의 대표와 기타 직원 및 그 가족은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 그들은 또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재판 관할권과 행정재판 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를 향유한다.

a) 이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에 있는 개인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소송, 또는 상기자가 대표부의 목적을 위하여 독일민주공화국을 대신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b) 상기자가 독일민주공화국을 대신하지 아니하고 개인으로서 유언집행인, 유산관리인, 상속인 또는 유산수취인으로서 관련된 상속에 관한 소송

c) 상기인이 이 규정의 적용지역에 있어 상주대표부를 위한 업무 이외에 직업적 및 영업적 활동을 하는 것과 관계된 소송이 있을 경우, 그러나 다음의 제4항과 제5항 및 제18조는 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전 제1항에서 게기된 자는 증언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이들에 대한 강제집행 조치는 전 제1항 a부터 c까지의 경우에만, 그리고 이 경우도 상기자의 신체와 주거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만 행하여질 수 있다.

- (4) 대표부의 관리 및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행정·기능직원과 그 가족은 그들의 직무중의 행위에 대하여 민사재판 관할권과 행정재판 관할권의 면제를 향유하지 아니한다.
- (5) 상주대표부의 용역에 종사하는 노무직원은 그들의 직무중에 행한 행위에 관하여 상기한 면제를 향유한다.

### 제12조

- (1) 독일민주공화국은 제11조에 게기한 자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 (2) 포기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한다.
- (3) 제11조에 게기된 자가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었으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소와 직접적 관계에 있는 반소에 관해서는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 (4) 민사 및 행정소송에 있어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하더라도 이는 판결의 집행에 관한 면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위하여는 별도의 포기가 필요하다.

### 제13조

- (1)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상주대표부의 대표와 기타 직원 및 가족은 사회보장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 (2) 이 면제규정은 사회보장보험에 자의로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3) 이 조 제1하에 게기된 자가 사회보장규정으로부터 면제되

지 않은 자를 고용하면 고용인에 적용되는 사회보장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

- (1) 상주대표부의 대표와 기타 직원 및 그 가족은 연방과 주의 모든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a) 보통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 간접세
  - b) 이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내에 있는 사유 부동산에 대한 부과금 및 조세. 단 대표부의 목적을 위하여 독일민주공화국을 대신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c) 제19조 제4항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세
  - d) 이 법률의 적용지역에 원천을 둔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와 부과금 및 이 규정의 적용지역에서 상업상의 사업에 행한 투자에 대한 자본세
  - e) 특별한 용역의 제공에 부과되는 조세 수수료 및 기타 공과금
  - f) 제3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세, 법원수수료, 기록수수료, 담보세 및 인지세, 공증, 저당 및 도장수수료
- (2) 상주대표부의 노무직원은 그들의 취업에 따른 보수에 대하여만 조세 및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 제15조

상주대표부의 대표와 기타 직원 및 가족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의 모든 인적 역무와 공공의무로부터 면제된다.

### 제16조

- (1) 이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내에서 대표부의 공용을 위한 물품에 대한 수입세가 면제된다. 공적 사용물품이라 함은 근무용품 및 상주대표부 전물의 전축 혹은 개축에 소요되는 물품과 전물의 시설물로 고착되어질 물품을 말한다.
- (2) 상주대표부의 대표와 상주대표부 업무집행의 업무를 부여 받은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하여 이사물품과 개인사용품, 그리고 이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소모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세가 면제된다. 상주대표부의 행정·기능직원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처음 부임할 때 이 법률의 적용지역에 들여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세 면제조치가 부여된다. 상주대표부의 노무직원 및 상주대표부 직원의 개인사용인에 대하여는 수입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3) 자동차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공과금 면제조치는 자동차를 이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에 가져온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따라 결정된다. 이 기간은 상호주의 원칙의 전제하에 변경될 수 있다.
- (4) 수입세가 면제되려면 물품이 상주대표부 혹은 면세수혜자의 주소로 전달되고 상주대표부 대표나 그 대리인이 규정된 서

식의 설명서에 서명하고 관인을 찍어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로 수입세 면제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상주대표부의 대표와 상주대표부 직무를 수행할 임무를 부여받은 직원 및 그 가족들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의 입국과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으로의 출국에 있어 그 개인 수화물이 전 제1항 혹은 제2항 전단에 규정된 면제가 해당되지 않거나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검역규정에 의해 통제된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중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검열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검열은 관계인이나 그가 위임한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주대표부의 행정·기능직원, 그의 가족 및 상주대표부의 노무직원과 직원의 개인사용인은 개인수화물 검열면제를 향유하지 못한다.

### 제17조

상주대표부 직원의 개인사용인에 있어서 그들의 근로의 댓가로 받는 보수에는 조세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 상주대표부의 직원의 가정에 고용되어서 종사하는 개인사용인은 독일민주공화국 혹은 제3국에서 적용되는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 이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의 사회보장법에서는 면제된다.

### 제18조

(1) 제9조 내지 제17조에 기술한 특권과 면제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에 영주하거나 상주대표부 외부에서 직업을 갖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상주대표부 소속 직원의 개인사용인의 가족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지 못한다.

### 제19조

(1) 특권과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그가 부임목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지역으로 들어선 순간부터, 또는 그들이 이미 그 곳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임명을 연방수상실에 통보한 순간부터 그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기 시작한다.

(2) 특권과 면제는 근무가 끝난 후 출국시점 혹은 연방수상실이 지정하는 기간에 종결되며, 이 시점에까지 이것은 유효하다. 상주대표부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중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특권과 면제혜택을 받는다.

(3) 상주대표부 직원이 사망할 경우, 그 가족은 연방수상실이 지정한 출국시점까지 계속해서 특권과 면제혜택을 받는다.

(4) 이 규정의 적용지역에 영주하지 않는 상주대표부의 직원이 사망하였을 때 또는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 이 규정의 적용지역에서 취득하고 사망시에 이전이 금지된 재산만은 예외로 하고 동산을 운반하는 것은 허용된다. 사망자가 상주대표부 직원이거나 가족으로서 이 규정의 적용지역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20조

- 이 규정은 1952년 1월 4일자 제3차 인도법 제14조에 따라  
(1973년 11월 1일자 독일민주공화국, 상주대표부의 완화·특권·면  
제 부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하여) 베를린주에도 적용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발효한다.

1974년 4월 24일

연    방    수    상  
브    란    트

연방내독관계장관  
에    곤    프    랑    케

---

## 동·서독교류협력관계법규자료집

---

發行處 統一院 交流協力局 ☎ 720-21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印刷處 진명인쇄공사  
印刷日 1994년 11월 7일  
發行日 1994년 11월 11일

---

통협 94-10-39

